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510-14

www.mois.go.kr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2024. 9.



행정안전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5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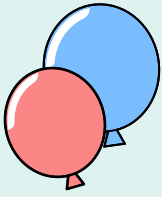
www.mois.go.kr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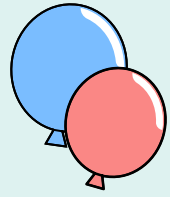
2024. 09.



행정안전부



안전 관리 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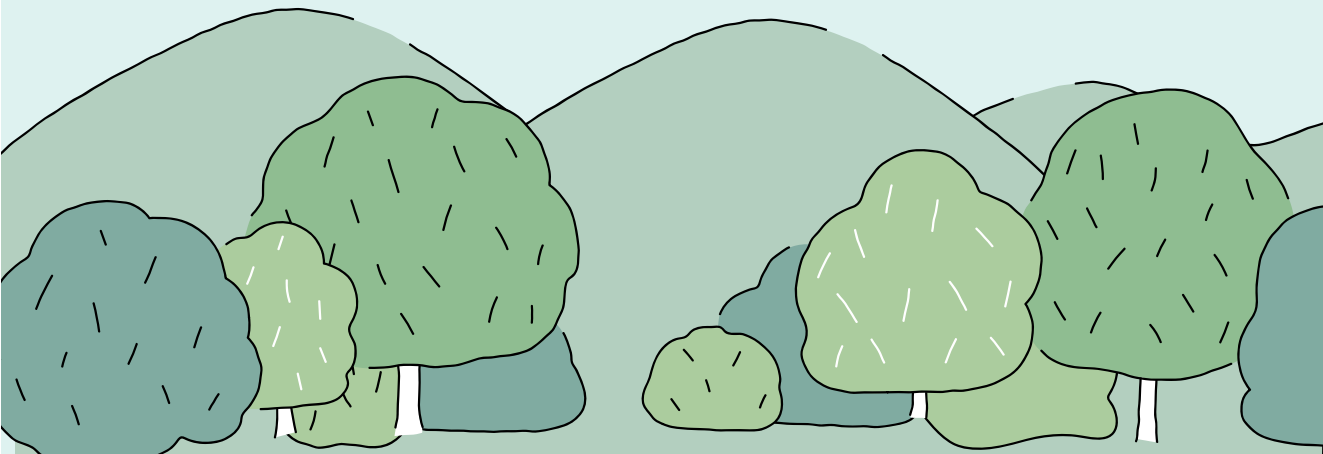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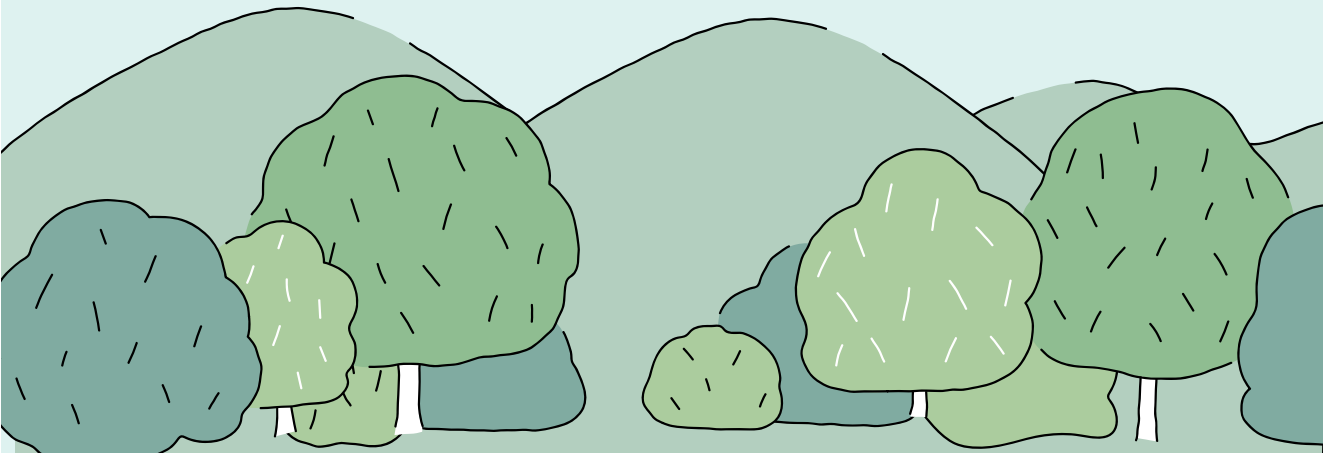
- 1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 1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1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1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이 매뉴얼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2.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적용됩니다.
3. 이 매뉴얼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4. 이 매뉴얼은 다양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관련 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축제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5. 현재 매뉴얼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6. 지역축제 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고 수시로 읽어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7. 이 책의 본문을 변경하거나 복제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CONTENTS

PART 01

서론



- 01 매뉴얼 개발 배경 · 10
- 02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 12
- 03 용어의 정의 · 16
- 04 주최자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체계 · 18
- 05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체계 · 19

PART 02

지역축제 추진 단계별 검토사항



- 01 지역축제 계획 수립·검토 · 22
- 02 지역축제 시작 전(축제장 준비, 현장점검) · 36
- 03 지역축제 진행 중 · 45
- 04 지역축제 종료 시 · 49
- 05 지역축제 중 사고발생 시 대응 · 52
- 06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 61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PART

03

지역축제 위험 유형별 관리 요령



- 01 인파 위험 관리 · 70
- 02 기상 여건에 따른 위험 관리 · 84
- 03 장소적 위험 관리 · 89
- 04 재료적 위험 관리 · 103
- 05 비행장비(드론, 열기구 등) 위험 관리 · 118
- 06 무대시설 위험 관리 · 121
- 07 야간 축제 위험 관리 · 123
- 08 그 밖의 위험 관리 · 126

PART

04

부록



- 01 지역축제장 안전사고 사례 연도별 정리 · 130
- 02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 · 134
- 03 안전관리계획 심의 착안 사항 · 143
- 0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144
- 05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해설 · 150



PART 01

서론



01. 매뉴얼 개발 배경
02.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03. 용어의 정의
04. 주최자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체계
05.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체계

01 매뉴얼 개발 배경

- ☑ 2009년 2월 창녕 화왕산 역새태우기 지역축제 중 방화선을 넘은 불길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사망7명, 부상81명)하였다. 이에 정부는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군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시달하였다.

- ☑ 이에 따라, 지역축제의 단계별·유형별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였으나,
 - 동 매뉴얼 보급 당시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시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 업무 담당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추진할 때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2013.8.6.)하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또한, 안전관리 대상 축제의 범위를 넓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분 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확대하였다.

☑ 그 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사망 159명)하였다. 그런데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주최자 있는 축제에 적용되고, 핼러윈과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 이에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2024.3.27.시행)하고, 경찰·소방 등 축제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근거를 두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본 매뉴얼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모든 지역축제와 성탄절·핼러윈 등 주최자가 없으나 특정시기·장소에 연례적·관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밀집이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적용된다.

- 축제를 개최하는 자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관할 지자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현지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축제 추진 단계별·유형별 안전관리 요령을 참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지역축제와 관련되는 분들에게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도록 작성하였다.

02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

- ☑ 본 매뉴얼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적용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 축제 기간 중 순간(1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산 또는 수면 등 위험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불, 폭발,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인 축제와 그 외에도 관할 지자체의 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 ☑ 본 매뉴얼은 축제장에 설치된 시설·전기·전력·가스·소방 등 관련 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비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 지역축제의 안전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 ☑ 본 매뉴얼은 공공·민간 등이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하여도 축제의 특성,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주최자 없이 진행되는
대규모 축제·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 권고사항

☑ 모든 축제(민간 개최, 주최자 없는 축제 포함) **안전관리계획 수립**

☑ 모든 축제 **안전관리비 확보**(행사 개최 전체비용 대비 **1% 이상**)

- 대상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축제, 고위험 축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축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제 등

*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거나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

☑ 모든 축제 **보험가입**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

* (사망)1억5천만원, (부상)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 관련법령 요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종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영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지역축제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③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④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관할 지자체의 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13조의2(재해예방조치)

- ①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 제11조의9제2항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참조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시행규칙 제42조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3)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제11조(재해예방조치)

-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자체의 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 7일 전까지)

경비업법 (경찰청)

제2조(정의)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영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시·도 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시·도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3에 따라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

시행규칙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 응급의료인력 :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2. 응급이송수단 : 구급차 등 1대

03 용어의 정의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지역위원회)
- 주요기능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나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등
- 심의대상 : 민간·공공이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 축제기간 중 순간(1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인 축제와 그 외에도 관할 지자체의 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 지역안전협의회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 및 안전점검과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제6항
- 구성
 - 위원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 위원 : 관할 경찰·소방 공무원, 전기·가스·통신·시설물 안전관련 전문가, 상인단체
 - 그 밖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 주요기능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심의, 이행에 관한 사항 협의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협의
-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협의
-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의

- 심의대상 : 민간·공공이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 축제기간 중 순간(1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인 축제와 그 외에도 관할 지자체의 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04 주최자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체계

01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작성자 : 축제 개최자(중앙·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 등)
- ☑ 사전 의견수렴 : 관할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02

안전관리계획 제출, 심의 의뢰 (개최일 3주 전)

- ☑ 축제 개최자는 관할 지자체(축제 담당부서)에 안전관리계획 제출
- ☑ 축제 담당부서는 검토 후 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의뢰
 - 「공연법」,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 첨부
 - 관할 시·군·구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관련 시·군·구 합동 심의 혹은 시·도 심의 의뢰 가능

03

사전검토 (개최일 2주 전)

- ☑ 재난관리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상정 전 사전 검토

04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지역안전협의회 심의 상정 (개최일 10일 전)

- ☑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상정
 - 대면심의 원칙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축제 개최자의 설명 후 심의 진행
- ☑ 심의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축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개최될 경우에는 시·군·구 합동으로 하거나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05

심의결과 통보 (개최일 5일 전)

- ☑ 재난관리부서는 관계기관 등에 심의 결과 통보
 - 시·도 지역안전관리위원/지역안전협의회위원, 축제 담당부서, 경찰, 소방, 행사 개최자 등 관계기관

06

지역축제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개최일 1~2일 전)

- ☑ 재난관리부서 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축제장 합동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지역안전협의회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추진
 -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 후 축제 추진

05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체계

01 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최일 3주 전)

- ☑ 작성자 : 축제 개최지 관할 시·군·구의 장
 - 순간 최대 참여 인원 1천명 이상이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예상 인원 규모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 ☑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관할 시·군·구의 장이 시·군·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규모라고 판단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중 운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도지사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한 축제
 - 동일한 축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제

02 사전검토 (개최일 2주 전)

- ☑ 재난관리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상정 전 사전 검토

03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지역안전협의회 심의상정 (개최일 10일 전)

- ☑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상정
 - 대면심의 원칙
 - 안전관리계획 설명 후 심의 진행
- ☑ 심의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축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개최될 경우에는 시·군·구 합동으로 하거나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04 심의결과 통보 (개최일 5일 전)

- ☑ 재난관리부서는 관계기관 등에 심의결과 통보
 - 시·도 지역안전관리위원/지역안전협의회위원,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05 지역축제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개최일 1~2일 전)

- ☑ 재난관리부서 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축제장 합동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지역안전협의회 등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추진
 -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 후 축제 추진



PART 02

지역축제 추진 단계별 검토사항



01. 지역축제 계획 수립·검토
02. 지역축제 시작 전(축제장 준비, 현장점검)
03. 지역축제 진행 중
04. 지역축제 종료 시
05. 지역축제 중 사고발생 시 대응
06.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01 지역축제 계획 수립·검토

1. 공통사항

● 개최장소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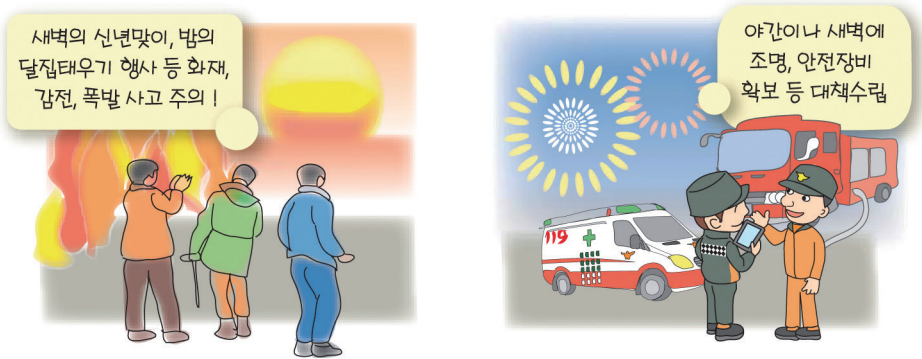
- ☑ 지역축제 진행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행사장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긴급상황 발생시 축제 관람객 등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집중호우, 폭우, 하천범람, 화재 등과 같은 **돌발성 위험지역**과 산간, 계곡, 경사지역, 하천변, 교통혼잡 지역 등 **위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인지 검토한다.
- ☑ 소음·불빛 등 기타 요인 때문에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주택단지, 축사, 병원, 어린이 보육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한다.
- ☑ 실내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긴급 상황발생에 대비해 출입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화재위험이 없는지, 임시시설물의 전도 위험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비상구의 위치 등 피난안내 동영상을 축제 기간 내 방영하는 등 사전교육 실시계획 수립
- ☑ 실외에서 **불꽃놀이**와 같이 폭죽 등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에는 풍향에 따라 잔재물 등이 관중석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소방차 진입 등 접근성**을 검토한다.

◎ 개최시기(시간) 검토

- ☑ 지역축제의 개최 시기는 **기상예보, 과거 기상사례** 등을 참고하여 태풍, 집중호우(장마), 폭염, 대설, 한파 등을 피하고 맑고 화창한 날로 정하는 등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한다.

※ 기상청 기상특보(경보·주의보) 발효 시,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

- ☑ 지역축제의 시간계획은 축제의 특성에 따라 밤, 낮, 새벽에 진행 할 수 있으나, 축제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일출 후 시작하여 일몰 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한다.



- ☑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지역축제는 조명, 안전장비 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신년 해맞이 행사, 달집태우기, 빛의 축제, 불꽃축제 등 밤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축제의 경우에는 화재·감전·폭발사고 등 관람객 등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겨울철에 진행되는 축제의 경우 관람객 등에게 미리 방한복, 무릎담요, 손난로 등을 지참하도록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홍보 실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서식은 본 매뉴얼 PART 04-02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p.134) 참조

- ☑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3항)
- ☑ 지역축제를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축제 개최자, 위탁자, 축제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수행임무 등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한다.
 -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제5항)
- ☑ 지역축제 진행 단계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운영상의 취약점을 미리 검토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 ☑ 지역축제가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경우, 현지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야간근무 반 운영, 조명 계획, 출입구 확보 계획 등 마련
 - 야간에 불꽃놀이, 연말연시 해넘이·해돋이 행사, 달집태우기, 정월대보름, 조명축제 등을 계획할 때 화재와 관중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신년 해돋이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교통대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경찰, 소방, 민간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안전관리 조직도**를 마련하여 축제 안전관리체계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다.
 - 주요 장소별·프로그램별·분야별 책임자(소속, 연락처 포함) 및 역할 명시

- ☑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합동상황실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축제의 규모, 특성, 참가자·관람객, 위치, 진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합동상황실 설치·운영계획 마련
 - 합동상황실에서는 지역축제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총괄 조정하고 축제의 추진 현황, 안전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일일 상황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안전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사전 구축한다.

 - 축제 개최자, 지자체, 소방, 경찰, 시설·전기·전력·가스·통신, 교통공사, 지하철역장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공유

- ☑ 안전관리자들 간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PS-LTE) 단말기, 무전기 등 비상통신수단**을 마련한다.

 -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나 거주 인구 대비 축제 참여자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 **이동식 기지국 등을 설치**하여 축제 참여자들의 통신 두절 사태 방지

- ☑ **종합안내소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물품보관 분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휠체어 등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아보호소 운영과 이에 따른 미아 발생 시 조치요령 마련



2 안전요원 교육 및 배치 계획

- ☑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임무, 기간, 인원, 행동요령 등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사전교육계획 등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요원, 경찰, 소방, 시설·전기·전력·가스·통신 등 민간전문가의 역할 등 해당 분야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계획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요원 구성은 축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 소방, 민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
- ☑ 안전관리 역할을 하지 않는 단순 행사진행요원(예: 입장권 확인)을 배치하였다면, 안전관리요원과 구분하여 표기하고, 행사진행요원을 안전관리요원으로 오인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 ☑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의 운영 방안 및 근무요령을 마련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 마련
 - 안전요원 배치도 마련, 각 구역 할당인원 및 임무, 책임자 명시
 - 상황실과 안전관리요원 간 비상연락망 마련
 - 눈에 띄는 근무복장 및 안전장비(호루라기, 경광봉 등) 마련
- ☑ 안전관리요원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을 준비한다.
 - 비상구의 위치 및 대피로 숙지 등 사전교육 실시계획 수립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 화재 발생 시 조치 요령과 대피 안내방법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방법 등
- ☑ 비상 시 안전요원 집중배치·재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3 인파·교통 대책

- ☑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동선 관리를 위하여 동선 계획과 안전선(safety line)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 ☑ 인파관리 계획 수립 시 지역축제장의 동시 최대 수용인원을 검토하여 수용대책을 마련하고, 축제 진행 중 수용한계를 넘을 때를 대비해 대기 공간 마련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 인파관리 요령은 본 매뉴얼 PART 03-01. 인파 위험 관리(p.70) 참조

☑ 경찰 및 주변 전철역장과 사전협의, 축제장 주변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 권역별 및 시간대별 교통 대책
- 교통상황 유지 및 주정차 지도·단속
- 행사 전·후 일시에 관람객의 집중에 대비한 대책
- 사전에 전철역장과 소통 채널 확보, 축제 일정을 공유하여 인파 관리 협업 추진

4 상황별 대처 계획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단계별·상황별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 초동단계, 응급 구호단계, 비상단계별 조치계획
- 업무분장 및 근무인력 투입계획
- 화재, 대규모 혼잡사고, 취객 등 혼란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기상 악화**에 따른 축제 진행 변경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한다.

- 기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 축제의 경우 기상 악화 상황 별로 축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해야 함

※ 기상 여건에 따른 안전관리 요령은 본 매뉴얼 PART 03-02. 기상 여건에 따른 위험 관리(p.84) 참조

☑ 지역축제가 국제적인 행사일 때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테러와 범죄 예방조치**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 지역축제 개최자는 필요시 행사장에 범죄와 테러 관련 예방 대책을 사전 수립하고, CCTV 설치·운영

☑ 지역축제 기간 내 현장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한다.

- 축제장 내 일반의약품(소화제 등) 및 의료장비(혈압계, 체온계) 비치
- 구급차, 응급조치요원의 사전배치계획 수립
-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인근 병원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역축제 기간 중 사회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감염병에 대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축제 개최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축제의 연기·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축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당국과 사전 협의하고 감염병(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등) 예방에 대한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안전대책 강구

☑ 위생 및 응급환자 **의료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식중독과 이질 등 전염성 질병예방대책
- 방역소독 및 음식점 위생관리와 이동 진료소 편성 운영계획
-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병원과 상시 대기체제 구축 등

5 개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

☑ **무대 시설** 설치 계획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 높이가 6m 이상이거나 수상 및 연약 지반에 설치하는 무대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전 구조검토서, 설치 후 안전확인서**(무대가 검토된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 확보
- 그 밖의 무대 시설 및 트러스를 이용한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도 필요 시 구조검토 및 안전확인 이행

※ 무대 안전관리 요령은 본 매뉴얼 PART 03-06. 무대시설 위험 관리(p.121) 참조

☑ 축제장에서 **경비행기·드론 등 비행장비를 운항**하는 경우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 **비행장비 운항 시 조종 자격이 있는 자가** 관계 기관의 비행 승인을 얻어 운항하도록 하고, 운항구간에 애드벌룬 연 등 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설물 등이 없는지 검토
- **비행장비 운항 구간**에서의 연날리기 행사 등을 금지하고, 또한 관람객이 밀집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장 상공으로는 비행기 운항 금지

☑ 애드벌룬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설치한다.

- 수소가스가 아닌 헬륨가스를 사용하여 충전
- 가스부족, 강풍 등으로 날아가거나 불시착하지 않도록 주의
- 축제 종료 후 즉시 철거

※ 비행장비 안전관리 요령은 본 매뉴얼 PART 03-05. 비행장비 위험 관리(p.118) 참조

☑ **불·불꽃을 사용하는 축제**는 사전에 관할 소방관서 혹은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진행한다.

- 경찰·소방에 지원요청을 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 상황 시 즉시 공유
-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전에 일기 예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격거리 설정

※ 불·불꽃 사용 축제 안전관리 요령은 본 매뉴얼 PART 03-04. **재료적 위험관리(p.103)** 참조

☑ 다양한 **유원시설·놀이기구 등의 운영**을 계획한 경우 개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유원시설·기구 운영 시 안전성검사 및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이행(「관광진흥법」 제5조, 제33조)
- 기구 운영자 외 안전관리자 배치 필요
- 권역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요원 투입계획, 안전통제선(safety line) 설치 계획 수립
- 동일한 권역 내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호 간 연락 및 협조 체를 강화하여 안전대책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



LAW 지역축제가 아닌 공연이나 체육행사 등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된다.

- ◎ 공연 : 공연장 외의 시설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개최하려면,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공연개시 14일 전까지 **공연재해대처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의 장(축제 담당부서)**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체육행사 :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체육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기타 계획

☑ 음식점·불법노점상 단속 등 **식품·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식품 안전검사, 검사결과 조치, 식품위생업소 자율위생 관리 영업신고 확인
- 식중독 발생 시 조치계획, 환자발생 시 조치사항 및 보호자 관리
- 사고 발생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

☑ 축제장 내 음식 판매 부스에서 **바가지 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정찰제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 축제장 내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축제장 면적과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을 준비하고,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화장실 청결 상태를 관리한다.

☑ 지역축제 개최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축제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한다.

- 전기, 가스, 유원시설, 가설건축물, 영업허가, 점용허가 등 개별 축제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확인
- 보험 가입 시 안전관리계획에 시설물, 관람객, 공연자, 축제진행자 등 분야별로 보험가입 여부 및 방법, 보상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

※ 각종 인·허가 사항은 본 매뉴얼 PART 04-04 지역축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p.144) 참조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지역축제 개최자가 민간 단체 등일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반별 구성, 개인별 임무·역할 및 비상연락망 등 수립

◎ 안전관리계획 심의

☑ 지역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관할 지역 **시·군·구 지역축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축제 담당부서는 축제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1차 검토한 후 **재난관리부서에 심의를 의뢰**한다.

☑ 재난관리부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 심의를 상정**한다.

☑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시·군·구의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대면심의 원칙)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심의 의무대상 지역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
 - ①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② **산이나 수면**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③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④ **축제의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로서 **순간 최대 참여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고 **관할 지자체장이**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 기타 그 외의 지역축제 중 성격, 위험도,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 관할 지자체장이 심의 대상 여부 판단
- 다만,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 중에 2개 이상 지역(시·군·구)에서 동시에 개최될 경우에는 축제 개최 시·군·구 합동으로 하거나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역축제 개최자는 위원회/협의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
- **지역축제 관계자(축제 개최자 등)**가 참석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검토, 보완 요청, 대안 제시** 등의 방식으로 진행

☑ 심의 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완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다만, 안전관리에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 의결을 보류하고 보완조치계획 제출 후 재심의 진행 가능
- 시정 및 보완 완료된 사항은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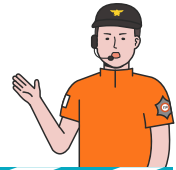


☑ 심의 의결 후 지역축제 개최자, 지역축제 담당 부서, 경찰, 소방 등 **축제 관계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수범사례

○○광역시에서는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 개최. 특히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철저히 추진하는데,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거친 후 안전관리위원회(시장 주재)에서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교차 검토 진행.

미흡사항 발생 시 보완을 요청하고 이행계획서 및 확인서를 요청함으로써 지적 사항을 철저히 조치하도록 함.





◎ 지도·감독 등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 및 축제 개최자에게 시정 요청
 - 시정 요청을 받은 관할 시·군·구 및 축제 개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 축제 개최 시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은 민간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참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의 심의 의무대상이 아닌 축제의 경우, 행사 주최와 협의하여 합동지도·점검 등 별도 안전대책 강구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지역축제 개최자

- ☑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지역축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6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소방, 경찰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 사전 수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3항)
 - 안전관리계획은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제출**(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제출)
- ☑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지자체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축제 행사계획 및 주요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 필요 시 심의 전 사전 설명을 진행하여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요청 가능
- ☑ 축제장에 **무대 및 시설 등은 축제 개최 전 1~2일 전까지 설치**하여 합동 지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지역축제 진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 기간 등을 검토**하고 추진 일정을 계획한다.
- ☑ 기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지역축제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계획한다.
- ☑ 심의 또는 현장 점검 시 **보완 요청사항이 발생한 경우 축제 개최 전까지 보완**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축제 개최자 등 축제 관계자가 안전관리 또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작성사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한다.
- ☑ **축제 담당부서**는 안전관리계획이 접수되면 「공연법」,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난관리부서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의뢰**한다.

☑ **재난관리부서**는 사전 검토 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상정한다.

- 재난관리부서 경찰, 소방, 시설, 전기, 전력, 가스, 통신 등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 안전관리계획서 및 심의 일정을 사전 공지하여 충분히 준비 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재난관리부서**는 축제 담당부서 또는 축제 관계자가 시설물 안전,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재난관리부서**는 행사개최자, 지역축제 담당부서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역축제 **합동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분야별 중점 점검항목, 점검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 지역축제의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지역축제 특성에 맞는 점검항목 마련

☑ 지역축제 개최자가 **민간기관 단체일** 경우에는 **축제 개최자, 축제 담당부서, 재난관리부서 간 협의**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다.

-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라도 지자체는 **특히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극 참여**

☑ 지역축제 개최자와 협의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행사개최자,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하는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 신청 사항**을 적시에 검토하여 축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 신청 사항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절인지, 현지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지역축제 전 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현지 확인 철저

◎ 경찰·소방·기타 유관기관

- ☑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에 참여한다.
- ☑ 경찰은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경찰력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장 **주변도로 교통, 질서유지, 경호·경비**(국제행사 등) 등 계획을 수립한다.
- ☑ 소방은 지자체 및 축제 개최자와 사전협의하여 **구조·구급요원 배치, 소방차 주차장소 지정 등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시설·전기·가스·통신 등 기타 유관기관은 축제장의 소관 분야 **설비의 설치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 ☑ 긴급상황 발생 대비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 합동 지도·점검 대비 소관분야 **중점 점검항목**을 작성한다.
- ☑ 축제 진행과 관련하여 소관 분야의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다.(화약류, 집회신고, 소방 관련 법령, 시설·전기·전력·가스 관련 법령 등)



02 지역축제 시작 전(축제장 준비, 현장점검)

1. 공통사항

◎ 축제장 준비

-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축제장을 준비하며 **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의 심의 시 지적된 보완요청과 의결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 **합동 지도점검 시** 보완 요청과 의결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축제 시작 전까지 **축제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관련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조건이 축제 장소의 지리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맞지 않거나 현장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별도 협의
- 종합/합동 상황실 운영 적정성, 비상연락체계 작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축제 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 갑작스러운 돌풍, 집중호우, 기상악화 등 주변상황 악화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한다.
- 야외 임시 무대 설치 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 안전요원 교육·배치

- 안전관리요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고 사전에 역할분담 및 정위치 근무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요원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안내 동영상 방영 등 사전교육 실시계획 수립
- 지역축제 특성에 맞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조치 요령
- 화재 발생 시 조치 요령과 대피 안내 요령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방법 등



☑️ 입·퇴장 시, 비상상황 발생 시 등 집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 계획에 따라 안전요원을 재배치한다.

☑️ 안전요원은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며, 관람객을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한 **장비**(호루라기, 경광봉 등)를 사용하도록 한다.

● 현장점검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지역축제장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축제 개최자와 협의하여 경찰, 소방, 시설, 전기, 전력, 가스, 통신, 보건·위생 등 해당 분야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축제 담당부서와 인·허가 기관 및 부서도 함께 참석
- 시설물의 안전관리상태, 주최측의 안전관리요원 확보와 교육실태, 교통지도 및 구조·구급요원 확보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 합동 지도·점검 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이 현장 적용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실정에 맞게 조치
- 축제장의 위치(내수면, 해상, 산지) 및 시설(임시시설, 놀이시설)등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심의 의무대상이 아닌 지역축제라도 관할 지자체장이 위험성이 높아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축제 개최자와 협의하여 합동 지도·점검 실시 가능



- ☑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지적된 보완요청 사항**이 현장에서 조치되었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 합동 지도·점검 시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완 요청**한다.
- ☑ 축제장 및 주변 지역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안전선 및 경고 표지 설치 및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 ☑ 기타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관람객 수용인원 적정성
 - 행사장 입구 매표소 등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 여부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 구조·구급 및 비상대피통로 확보 여부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지역축제 개최자

-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모두 이행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각종 인·허가 사항 이행여부 확인, 서류 제출
- ☑ 합동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축제장에 각종 **안전장비 등을 비치**한다.
 - 구조·구급 장비 등 비치 (강, 바다, 산간계곡, 차량 등 축제 진행의 위험 특성을 고려)
- ☑ 지역축제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에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한다.
 - 무대, 조명탑, 카메라탑, 위험물 보관구역 등 주위에는 안전선(safety line) 설치

☑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임무별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사용 방법
-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신고, 관람객 대피 안내 등에 대한 교육
- 긴급상황 발생대비 조치사항 등

☑ 먹거리장터 등 축제 참여 영업주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 식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 먹거리장터 영업자 자체 일일안전점검 실시
- 영업 마무리 시 화기 등 뒷정리

사고사례

○○도 □□군 △△축제의 음식물 판매 부스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20분 만에 진화되고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 발생(11.10.)



☑ 무대 등 임시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동 지도·점검 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 높이가 6m 이상이거나 수상 및 연약 지반에 설치하는 무대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전 구조검토서 제출, 설치 후 안전확인서**(무대가 검토된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 제출
- 그 밖의 무대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검토와 안전확인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

※ 무대 안전관리 요령은 본 매뉴얼 PART 03-06. 무대시설 위험 관리(p.121) 참조

☑ 긴급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및 안내방송 문안을 마련한다.

☑ 지역축제 진행 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지자체, 경찰, 소방, 안전요원과의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 관할 시·군·구는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을 주관한다.

- 특히 축제 주최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 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 심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치 이행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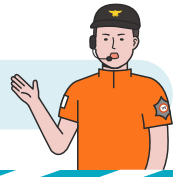
☑ 방문객이 이용하게 될 축제장의 기존 시설·구조분야를 포함하여 축제장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지반침하, 경사지, 옹벽, 환풍구 등 지반 및 주변 기존 시설 위험 여부
- 기타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사고사례

○○도 □□군 △△제전에서 운동장에 있는 가로등에 행사용 천막과 만국기, 애드벌룬 등을 묶어 두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 높이 6m 가량의 가로등이 관중석으로 쓰러지는 사고 발생. 관중석에서 식사 중이던 주민들이 중·경상을 입음 ('04.4.)

- ▶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축제장을 조성할 때, 전도 위험성 등 안정성 확인 필요
- 강풍, 호우 등 기후 여건 악화시를 대비하여 시설물 전도 방지 조치 필요



☑ 축제장의 **임시시설물(가설건축물, 무대, 전광판, 기타 시설물 등)**이 붕괴 및 전도의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 가설건축물 신고서, 공작물 축조 신고서, 구조검토서, 안전확인서 등 확인
- 구조물의 지지대가 전광판 상부 무게에 견딜 수 있는지 검토
- 연약지반의 경우 부동침하가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확인
- 무대나 부스가 바람에 전도될 위험은 없는지 확인

☑ 조명트러스·스피커탑 등의 무대 시설이 인근 고압선과 가까운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수범사례

○○시 □□□□축제에서 합동 점검 시 조명탑이 고압전선에 인접한 높이까지 설치된 것을 발견, 조명탑 제일 위의 한 단을 제거하여 고압전선과 조명탑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였다.

- ▶ 무대 설치 시 주변 구조물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 필요. 특히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봇대 근처에는 무대 등 전기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됨



- ☑ 축제 개최자의 종합/합동상황실 설치여부 및 비상연락체계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다.
- ☑ 대규모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를 마련하고 운영 태세를 구축**하여야 한다.

◎ 경찰

- ☑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에 참여하여 경찰 분야의 주요 사항을 점검**한다.
 - 도로 통제 시기·위치 등 적정성 여부
 - 교통정리, 인파관리 등을 위한 안전요원의 수·배치 위치 등 적정성 여부
-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한다.
- ☑ 주변 접근도로와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혼잡지역에 대한 순찰 및 인파밀집 해소 방안을 강구**한다.
- ☑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찰력 현장 배치 계획을 검토**한다.

◎ 소방

- ☑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에 참여하여 소방안전 분야의 주요 사항을 점검**한다.
 -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확보, 위험물질 및 화기 관리 적정성 여부
 - 화재·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방문객 행동요령 안내, 대피로 확보 등
 - 안전요원 교육 내용 적절성 검토 (비상 시 대피 안내 방법,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등)
 - 축제장 인근 **긴급차량 진입동선 확보 및 근접배치** 가능 여부

수범사례

○○도 □□시 △△축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꽃 단지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 축제장 면적이 110만㎡에 달한다. 넓은 개활지에서 축제를 할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를 설명하기도 힘들고 구급차가 찾아가기도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 이에 주최측은 전체 축제장을 여러 개로 블록화하여 번호를 매긴 도면을 만들어 소방과 공유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4.4.)



-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한다.
- ☑️ 긴급상황 발생대비 초기진화 및 구조·구급 기능 보강을 위해 **인근 소방관서와의 연락체계를 점검**한다.
-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를 준비한다.

◎ 시설, 전기, 가스, 통신 등

- ☑️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에 참여**하여 각 전문 분야의 주요 사항을 점검한다.

- ☑️ **시설안전 분야**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무대 등 구조물 안전성(프레임 접합 상태, 전도 위험성, 강재 부식 등) 여부
- 로프 외관 및 로프 체결 상태 등 시설체결 여부
- 조명기기, 음향시설, 막구조물 등 시설물 안전성 여부 등

- ☑️ **전기안전 분야**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 배선불량이나 전기기기 접지 적정 여부
- 전기 인입구 등 누수, 누전과 보호시설 적정 여부
- 조명탑 등 전기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전기 시설 안전관리 상태
- 행사장 내 전선 노출, 전기위험시설과 관람객 접촉 차단 여부
- 전기설비 접지 등 누전사고 방지시설과 전기설비 안전성 여부
-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표지 설치 여부 등 기타 전기 설비 안전관리 실태



☑ **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 상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이동식 부탄가스연소기의 사용자제(과대 불판 사용금지, 부탄캔 분리 보관 여부 등)
- 지하실 가스사용 장소의 환기 및 통풍관리 상태 적정 여부
- 가스배관 밸브 작동불량, 배관 매설, 고정상태 등

☑ **기타 시설의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 기계설비 배관 파손·누수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적정 여부
- 보일러공, 공조시설과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등

☑ **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다.

- 합동 지도점검 시 중점 점검 항목과 **심의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필요 시 시설, 전기, 가스, 통신 등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축제 안전 불감증 여전... 먹거리 장터, 돌풍에 아수라장!

지난 14일부터 제4회 OO국제음악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OO시는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 입구인 OO랜드 주차장에 먹거리 장터를 개설했다.

OO지역 한방음식점 5곳을 입점시켜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이 지역 한방음식을 선보이고, 먹거리도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19일 오전 9시께 이곳에 돌풍이 불면서 천막이 모두 무너졌다. 천막이 붕괴되면서 내부에 있던 냉장고와 집기, 식재료상자 등도 부서져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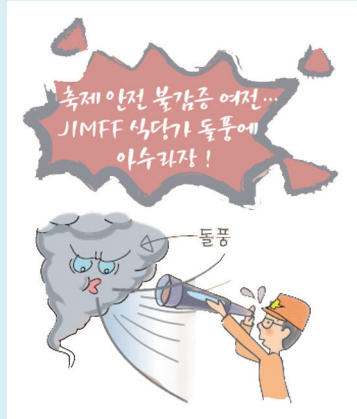
시와 먹거리 장터 민간 위탁사업자가 응급복구에 나서기는 했으나 영화제 행사 5일차인 이날 식당가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먹거리 장터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음식점 운영이 활기를 띠는 시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차치 LPG가스통 폭발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큰 피해를 당한 음식점 업주들에 대한 보상도 막막하다. 업주A씨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주최 측이 약간의 보상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먹거리 장터는 운영 초반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OO면 번영회의 요구로 먹거리 장터 천막 일부를 제공했다가 번영회가 전문 야시장 업자에게 책임대하면서 한방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운영하다 보니 보험가입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복구를 앞당겨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요약).



- OO 투데이(2008.8.19.)/000기자 -

03 지역축제 진행 중

1. 공통사항

☑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축제를 진행한다.

- 전체 진행에 변수 최소화
- 유사 시에도 안전관리계획서에 준비한 대응 방안대로 대처
-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발생 시 혹은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체계도에 따라 신속히 보고·지시, 상황 대응 및 관리

☑ 인파 밀집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인파를 분산시켜 질서를 유지한다.

※ 인파관리 요령은 본 매뉴얼 PART 03-01. 인파 위험 관리(p.70) 참조

☑ 축제 개최 임박 시, 인파관리지원시스템(p.82 참조)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한다.

☑ 축제 진행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주요 밀집 예상 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인파 밀집 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한다.

☑ 지역축제 진행 중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 여러 장소 또는 여러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합동상황실에서 축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 간 상호연락 및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와 행사 진행 관계자의 정위치 근무 여부 등을 실시간 확인한다.

☑ 지역축제 행사장내 **종합 안내소**를 운영한다.

- 물품보관·분실 센터 운영
-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아보호소를 마련하고 미아 발생 시 조치 요령에 따라 부모에게 인계
- 안전관리요원은 취객이 행사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등에게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경우 보호소 등으로 이동시켜 경찰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



☑ 관계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을 이용하여 비상연락 및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 지역축제 도중 **대규모 재난 발생시** 즉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지역축제 개최자

☑ 기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기상 여건 악화 시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 기상 상황에 따른 축제장 관리 요령은 본 매뉴얼 PART 03-02. 기상 여건에 따른 위험 관리(p.84) 참조

☑ 지역축제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관리자는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축제의 형태, 참여인원, 축제장소, 축제형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지역축제 실정에 맞게 배치
- 많은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분산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 필요
- 안전관리요원은 사전 매뉴얼을 참고하여 순찰활동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구급 조치 등

☑ 차량 출입구에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 축제장의 주차장과 주요 진·출입구에는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안전관리 철저
-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의 경우 관람객과 차량동선이 겹쳐지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 이동로에는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

☑ 긴급상황발생 대비 **긴급차량 동선**을 확보한다.

☑ 축제장 내·외에는 사전에 신청한 상인 외 출입을 통제한다.

☑ 종합상황실에서는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상황 관리**를 유지하고, 당일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사고사례

민과 군이 각각 주관해 벌인 제2회 2008 ○○군(軍) 문화축제와 ○○○페스티벌 행사에 구경 온 한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축제 마지막 날 오후 3시 30분경 ○○시 ○○동 소재 모초등학생이 축제장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치어 숨진 것.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 후 50분이 지난 4시 10분경, 과다 출혈로 이미 손쓰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사망 시간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사고가 발생한 병영체험장 앞 도로는 초등학생 참여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다. 사고 직전 안전요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병원 후송도 늦어졌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지역축제 진행 중 기상악화(강풍, 폭우 등)로 돌발변수 발생 시 축제 개최자, 지자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단체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축제 진행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축제 관계자 등에게 전파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 위생 관련 부서**에서는 축제 개최자와 협의하여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자율위생 지도
 - 식중독 발생 시 운영관리계획, 환자발생시 수행사항, 환자와 보호자 관리실태
 - 식품 관련 사고 발생에 따른 처리 등
- 축제 진행 중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요건,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미이행 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물·전기·가스의 관리자를 지역축제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시킨다.

◎ 경찰

✓ 현장 합동상황실/종합상황실 운영에 협조한다.

- 축제장 현장 상황실/경찰연락관 등 운영

✓ 축제장 주변 도로 및 주차장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 범죄 예방을 위해 축제장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 지자체와 협의하여 축제장 주변 인파 관리를 위한 경찰관을 배치하고, 축제장 내 인파밀집 상황 발생 시 질서유지 및 인파해산을 실시한다.

- 인근 전철역과 소통하며 역사 외부 인파관리 협조

✓ 긴급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해 주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 및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역할분담을 이행한다.



◎ 소방

✓ 현장 합동상황실/종합상황실 운영에 협조한다.

- 축제장 현장 상황실/소방연락관 등 운영

✓ 축제기간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에 소방관을 배치하고 긴급자동차를 대기시킨다.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 소방관서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관계기관과 비상연락 및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역할분담을 이행한다.



04 지역축제 종료 시

1. 공통사항

- 지역축제 종료 시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람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 안전관리요원을 출입구 및 주차장에 집중 배치하여 차량 소통 및 보행 안전 관리
- 퇴장 시에는 신속하게 귀가하고자 하는 인파가 출구에 몰려들게 되므로 **순차퇴장**을 진행한다.
 - 축제 진행시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순차 퇴장 방식에 대하여 반복 안내하고, 종료 후 사전 안내대로 출구에서 가까운 장소의 인파부터 순차적으로 퇴장 조치
 - 의자에 앉아있는 관람객보다 서 있는 관람객을 먼저 퇴장시키는 것이 진행에 용이
 - 입장 시보다 퇴장 시 출구를 더 넓게*, 더 많이 만들고, 가능한 한 모든 문을 개방
 - * 게이트의 입장 안내 테이블 등 장애물을 퇴장 시에 제거하는 방안 등
- 축제장 근처에 좁고 경사진 골목이 많은 경우 등 외부 이동로에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퇴장 후 외부 이동로까지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 지역축제가 종료되면 지자체는 축제 개최자, 경찰, 소방 등 축제에 참가한 관계 전문가들과 **평가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우수한 점을 분석하고 다음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지역축제 개최자 및 지방자치단체

- ☑ 축제 관람객 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출입구, 주차장 등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 안전관리요원은 행사장 **출구에 집중 배치**하고, 일시에 관중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 유도**
- 인근 지하철 역과 연락체계 유지

- ☑ 축제장 근처에 **전철역**이 있다면 **사전에 역장과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인파 관리를 진행한다.

- 축제 기간, 개막식 시작·종료 시간 등 **축제 일정**을 공유하여 역장이 안전관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 **경찰**(역 외부 관리)과 **전철역**(역 내 관리) 간 소통하여 역내외 출입인파 관리
- 전철역 인파 **순차적으로 끊어서 출입**, 출구와 계단을 **입구전용과 출구전용으로 구분** 운영, **전철 진입 일시 중지, 교차정차, 무정차 통과, 증차** 등 임시조치 모색 가능
- ※ 축제장 초근접 전철역 출입구를 폐쇄하면 역사에 출입하는 인파가 여러 개의 출입구로 분산되고, 출입 동선이 길어져 보행 중에 출입 인파가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음

- ☑ 지역축제장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시설물 관리인 등에게 인계한다.

- ☑ 유관기관과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 경찰, 소방, 기타 유관기관

-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축제 관람객 등이 **안전하게 퇴장하도록 관리**한다.

- 축제 관람객 등이 **안전하게 퇴장할 때까지 배치 유지**

- ☑ **경찰**은 지역축제장 주변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정리를 실시한다.

- 지하철 입구와 버스정류장 주변 인파 및 교통정리



- ☑ **소방**은 긴급자동차, 소방관 등을 배치하고 대기한다.

- ☑ **시설물 관리자**는 임시 시설물 철거 후 안전 위해물질 제거 상태 등을 확인한다.

- ☑ 유관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05 지역축제 중 사고발생 시 대응

1. 사고현장 상황관리

◎ 인명 우선 구조 실시

-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대응 및 긴급복구 등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중증도 분류(triage)”에 따라 환자 이송의 우선순위(긴급, 응급, 비응급)를 정하여 신속하게 **이송조치 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내

-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즉시 관람객 등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안전한 곳으로 **관람객을 피난·유도**한다.
- ☑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람객이 사고현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 추가 사고방지를 위하여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관계기관 등에 즉시 협조를 요청**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 ☑ 사고발생 장소에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이 도착하여 신속한 사고대응 및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 축제 관계자는 모든 **안내요원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119구조·구급요원들이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 축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축제 진행을 중지**하고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한다.

◎ 2차 사고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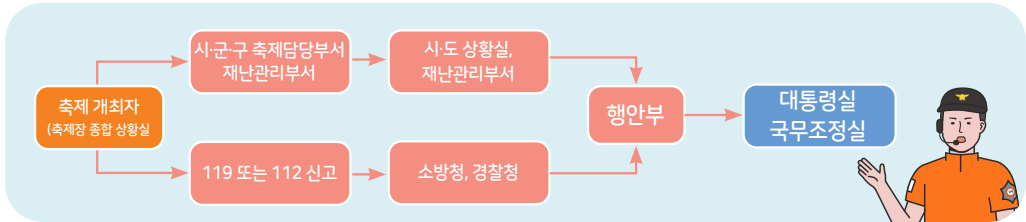
- ☑ 사고발생 즉시 모든 축제를 중지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상자 등에 대한 구조·구급 조치가 끝나면 행사장 주변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없애고 현장정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현장 감식 등 경찰·소방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관람객 등이 접근하지 않도록 협조 한다.

◎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

- ☑ 긴급구조 활동과 현장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 운영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0조, 제52조)
 -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 ☑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
-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급박한 경우 인근 거주자 등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토지·건축물 등 일시 사용 등 응급부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관할구역 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 상황보고 및 전파



- ☑ 축제 개최자는 종합상황실에서 신고 접수 시(사고 발생 인지 시) 119, 112, 시·군·구 축제담당부서/재난관리부서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한다. (사고 내용, 피해 현황 등)
- ☑ 상황공유 접수시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는 시·도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신속히 보고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 ☑ 사고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설치장소, 근무반원 및 근무인원, 반별임무 등 지정보고
-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본부장: 부단체장)를 설치하며,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 현장지휘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실시하나 필요하면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이 직접 지휘
- 사고현장 관할 시·군·구에서는 현장지휘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초동대처 등 신속한 현장 사고 수습·복구 조치
- 현장에 출동한 각 유관기관과의 지휘공조체제 유지
- 현장 지휘본부와 긴급구조 상황실 간의 유·무선통신망 구성
- 민간구조대와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휘통제
-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지원요청과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운영

☑️ 사고현장 통제선을 설치·운영한다.

- 제1통제선은 통제관이 설치하고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 인력과 장비만 출입
- 제2통제선은 경찰관이 설치하고 주민접근 통제, 응급환자 수송로 확보 등 교통통제

☑️ 인적·장비 등 동원명령

- 구조·구급차 등 구조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관용차량 동원 활용
-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 앰블런스, 소방구급차와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 동원 등

2. 사고발생 수습·복구관리

◎ 사고현장 조사 등

- ☑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 재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항구복구를 추진한다.
- ☑ 재난수습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교훈과 문제점,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 피해조사 및 현장 복구

- ☑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을 우선 복구하여야 한다.
- ☑ 화재, 가스폭발 등 2차 피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 ☑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고원인·피해내용을 파악한다.
- ☑ 피해조사 완료 후 항구 복구대책을 추진한다.

◎ 사상자 수습

- ☑ 사상자는 의료기관에 분산 수용하여야 하며, 신원파악, 유족과 부상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응급 구호용품지급, 급식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사상자 수용 병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 사고원인, 책임자 규명 후 당사자 간 원활한 보상대책이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 대형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는 1차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책임으로 추진한다.
- ☑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실무반에 편성·운영한다.
- ☑ 재난발생, 진행, 수습, 상황관리와 지휘통제 등 재난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 ☑ 본부 상황실과 현장 간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적시 적절한 조치로 피해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한다.

◎ 보상 등 마무리

- ☑ 사망자에 대한 장례 문제를 협의한다.
 - 합동분향소 설치, 영안실 확보, 장례비 지급, 장지알선 등 피해자와 유족 간의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공무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상황을 파악한다.
- ☑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보상 협의를 한다.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과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 책임소재 분석 및 배상(보상)책임자 규명
 - 배상(보상)기준의 설정
 - 조기 협상이 되도록 시·도, 시·군·구에서 적극 중재 유도 등
- ☑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한 주민 동요를 방지한다.
- ☑ 유가족 대책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 필요 시 기관장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의 진상과 주민협조사항, 복구대책 등을 적극 홍보
 - 언론의 과대 보도 등 오보사항에 대하여 즉시 정정보도 요청, 주민의 올바른 대처를 돕고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3.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지역축제 개최자

- ☑ 안전관리요원 배치 강화 및 인명구조를 실시한다.
- ☑ 소방·구급차량 등 긴급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확보한다.
- ☑ 유관기관 간 상황을 유지·관리한다.
- ☑ 피해시설과 사상자에 대한 보상을 한다.
- ☑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다만 축제 개최자가 민간단체 등일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 ☑ 사고발생 시 관계기관 담당자가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경찰, 소방 등에 현장관리를 협조 요청한다.
- ☑ 필요하면 응원요청 및 응급조치 등을 한다.
- ☑ 이재민구호 및 방역을 실시한다.
- ☑ 피해조사에 협조한다.
- ☑ 사망자에 대한 장례문제를 협의한다.
- ☑ 대표단과 피해수습을 협의한다.
- ☑ 필요시 언론홍보 및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 ◎ 대형사고 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은 지역축제 개최자가 한다.
 - 다만, 지역축제 개최자가 민간·단체 등 일때는 지역축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 지역축제 개최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 동일 축제가 동일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시, 도중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 ◎ 대규모재난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조기수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관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요청 할 수 있다.

◎ 경찰

- ☑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배치**하고 현장 접근과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을 설치**한다.
- ☑ 관람객에 대한 **대피유도 및 교통정리**를 한다.
- ☑ 극성팬 등에 의한 돌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람객 관리를 한다.
- ☑ 유관기관 간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 ☑ 사고발생 원인 및 책임자 규명 등을 수사한다.

◎ 소방

- ☑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한다.
- ☑ 구급차, 소방인력 등을 배치, 인명구조와 사상자 이송을 이행한다.
- ☑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하여 통제선을 설치한다.
- ☑ 유관기관 간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 ☑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기타

- 관계 행정기관 및 시설물 운영자는 현장에 나와 사고수습 및 복구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유관기관 간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06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본 매뉴얼 PART 02. 지역축제 단계별 검토사항(p.21~60)을 참조하여 주최자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시 달라지는 점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일반 착안사항(공통)

● 개요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란 성탄절·헬러윈 등 주최자가 없으나 **특정 시기·장소에 연례적·관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밀집이 예상**되어 시·군·구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축제를 의미한다.

-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급경사 골목, 병목현상 지역 등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경방안 모색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제1항 단서)

● 사전 현장예찰

☑ 보행로 및 도로의 **인파밀집 우려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 과거 인파밀집 및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인파, 주요 밀집 장소, 예상 교통량, 혼잡 도로 등 도출**

* 예: 과거 전례 조사, 경찰·소방·주민센터 등 협조 요청

-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인파밀집 예상지역을 발굴**하고 **혼잡요인* 예측**

* 예: 주요 상권 거리, 도로 공사 기간, 적치물·지장물로 보행장애, 병목현상 유발 구조, 상습결빙지역 등

- **혼잡요인 완화 및 위험요인 제거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요원배치·도로통제 등 안전관리 방안 구상

☑ 사전 현장예찰을 통해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조치**한다.

-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급경사 골목, 병목현상 지역 등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방안 모색**

- 인파 밀집 구역은 **차량통제**(차없는 거리, 차도를 보행로로 활용 등) 적극 검토

- 경찰·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관할 시·군·구의 장은 **매년 초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연간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연간 개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연간 개최 계획 수립
 - 연간 개최 계획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시기, 장소, 예상 인파 규모, 주요 밀집 예상구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 관할 시·군·구의 장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순간 최대 참여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의 장이 예상 참여인원·규모·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인파·보행관리 방안, 교통관리대책, 주요 밀집구역 관리방안 등 포함
 - 관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의견 사전 수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3항)

- ☑ **다음의 경우 시·도에서**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5항)
 - 관할 시·군·구의 장이 시·군·구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규모라고 판단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중 운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도지사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한 축제
 - 동일한 축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제

- ☑ 재난관리부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축제 시작 2주 전까지** 사전 검토한다.

- ☑ 유사 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 병원 사전 지정
 - 응급환자 초기 조치에 차질 없도록 축제 현장에 의료부스 설치·운영(종료 시까지),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계획 수립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 소방·구급 등 긴급차량 이동로를 명확히 설정
 - 구급차량 환자 이송 시 대체 구급차 투입 및 구급인력 운영 방안 마련

◎ 안전관리계획 심의

- ☑ 재난관리부서는 **축제 시작 1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 **심의 상정**한다.

- 심의는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축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동시에 개최될 경우에는 시·군·구 합동으로 하거나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음

- ☑ 재난관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축제 시작 5일 전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 시·군·구는 심의 결과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하여 축제 개최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사전 현장점검

- ☑ 시·군·구는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불법 적치물 등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 펜스 설치 등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한다.

- ☑ 겨울철 빙판길*·살얼음 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장비 확보 및 제설·제빙 조치를 이행한다.

*노면은 영상 3~4℃에서도 결빙되는 사례가 있음에 유의, 제설작업 지속 실시, 제설함을 수시 보충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은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

- 필요 시 한파쉼터 운영과 방한용품(손난로 등) 지급 검토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주요 점검사항)

- ① (인파통제) 중앙분리대 설치, 실시간 인파 안내, 일방통행, 동선분산 등
- ② (보행안전확보) 병목구간, 골목길 협소도 및 경사도, 보행교차로, 바닥평탄성, 환풍구·맨홀뚜껑 등
- ③ (보행방해요소제거) 불법건축물, 불법주정차, 적치물, 입간판, 지하철역 계단 등
- ④ (교통대책) 주요 도로 통제, 대중교통 증차·무정차, 구급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 ⑤ (대설·한파대비) 한파쉼터확보, 미끄러짐 및 넘어짐 사고 예방, 제설·모래살포 조치 등

※ 해넘이 및 해맞이 등산객 추락·낙상, 해안가 익수, 해안가 너울성 파도 등에 대비한 사전통제, 안전요원 배치 등도 포함하여 점검

◎ 축제 기간 중 상황관리

☑ 축제 중 현장 상황관리는 **부단체장 이상이 책임있게 추진한다.**

- 재난안전통신망(PS-LTE)·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간 **핫라인(Hot-Line)** 가동
- 지속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인파 밀집 징후 감지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공유
- 안전요원, 경찰력과 구조·구급 차량을 배치시켜 충분한 인력과 장비로 비상 상황에 대응
 - ※ 사고 위험에 따라 고정·순찰 등 탄력적 인력배치·운영, 추가 투입대기 인원 확보, 근무복장 및 장비(형광조끼, 경광봉, 호루라기, 무전기 등) 확보 등
- 위험상황 징후 발생 시, 이동식 확성기·사이렌·재난문자 등으로 위험상황을 전파하고 행동요령 안내
 - ※ 예) OO거리 극심한 혼잡발생, 출입금지 및 OO방향 우회바랍니다.
- 관내 보건소장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소 주관으로 현장 의료부스 설치·운영

☑ **비상근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축제 관리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사전에 지자체·경찰·소방 등 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충분한 인력 및 장비 배치
- 인파밀집 위험지역 경찰 배치, 구조·구급 차량 인접 대기

☑ 축제 종료 후에는 참여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현장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 축제 결과를 다음 연도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2.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관할 시·군·구

- ☑ 관할 시·군·구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제1항 단서)
-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에 관한 협의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축제 시작 전 **사전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인파밀집 우려지역 및 위험요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조치를 이행**한다.
- ☑ 축제 기간 동안 **현장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계 기관과 상황공유한다.
- ☑ 관내 보건소장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소 주관으로 현장 의료부스를 설치·운영한다.

◎ 관할 시도

- ☑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한다.
- ☑ 관할 시·군·구의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검토**하고, 필요 시 **시·도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 관할 시·군·구의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를 지도·점검한다.
- ☑ 축제 기간 동안 **현장 안전관리조치**를 하고 시·군·구와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 비상근무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인파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경찰

- ☑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참여한다.
- ☑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찰의 협조 및 역할분담을 이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8항)
 - 교통 및 보행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과 공유
 -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경찰연락관 운영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경찰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고, 관계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한다.

◎ 소방

- ☑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참여한다.
- ☑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방의 협조 및 역할분담을 이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8항)
 -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
 - 소방안전점검
 -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소방연락관 운영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소방관서의 소관 업무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 그 밖의 관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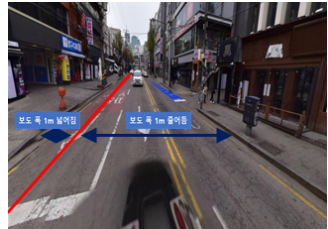
☑ 철도공사 등 교통 관계기관은 필요 시 **대중교통 운행 일정 변경** 등을 검토한다.

- 전철 하차 승객의 축제장 유입을 조절하기 위해 전철 진입 **일시중지** 조치 및 **무정차 통과** 등 임시조치 모색
- 왕복 노선의 전철이 역사 내에 동시에 정차하여 인파가 일시에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교차 정차**
- 축제 종료 후 **전철을 증차**하여 전철을 이용해 귀가하려는 인파 신속히 분산
- 인파밀집 상황을 고려하여 전철역 입구 출입통제, 안전요원 증원 등 검토
- 지자체,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여 역내외 출입인파 관리

수범사례

○○시 △△구에는 매년 핼러윈, 성탄절 등 주최자 없는 축제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다. 이에 ○○시와 △△구는 주최자 없는 축제 기간 동안 경찰·소방과 협업하여 유관기관 현장 합동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설 정비·차도 및 보도 관리를 하는 등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바로 앞에 전철역이 있어 역장과 소통하여 전철역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하는데, 출구를 입구전용, 출구전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거나 출입하는 인파를 끊어서 순차적으로 출입할 수 있게 관리한다.

특히 2023년도에는 연말연시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기간 동안에 인도가 좁아서 보행자들이 밀집되거나 차도로 이탈하게 되는 길을 발견하였다. 이 축제 기간에는 임시 조치로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차도를 막아 인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인파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이후 △△구에서는 이 길의 인도 확장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켰으며, 차량 통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인도 확장 공사를 계획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최자 없는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03

지역축제 위험 유형별 관리 요령



01. 인파 위험 관리
02. 기상 여건에 따른 위험 관리
03. 장소적 위험 관리
04. 재료적 위험 관리
05. 비행장비(드론, 열기구 등) 위험 관리
06. 무대시설 위험 관리
07. 야간 축제 위험 관리
08. 그 밖의 위험 관리

01 인파위험 관리

◎ 위험요인

- ☑ 군중이 예상보다 많이 참여하여 통제가 어려운 경우,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예: 개막식·폐막식 출입구 인파 밀집)일시적으로 인파가 몰려 평시의 인력 배치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 등 축제장에서는 인파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 ☑ 축제장이 좁은 경우, 출입구 수가 적고 좁은 경우, 축제장 주변에 인파 분산을 위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축제장 주변에 골목이 많거나 도로가 좁고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 축제 종료 후 해산하는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경우 등 축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파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축제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축제

- ☑ 모든 지역축제, 특히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
- ☑ 총 참여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축제
 - * 유명인의 공연, 매력적인 제품의 한정판매 행사, 이벤트 진행 등
- ☑ 할러윈·성탄절 등 주최자가 없으나 특정시기·장소에 연례적·관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밀집이 예상되어 시군구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 공통 사항

- ☑ 현재 축제장의 인파밀집 상황을 축제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 위험 상황 징후 발생 시 이동식 확성기, 핸드마이크, 사이렌, 재난문자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행동 요령 안내

수범사례

○○시 □□구의 불꽃축제에서는 혼잡상황현출 LED차량, 혼잡안내 차량 등의 아이디어를 현장에 구현하여 인파관리를 진행하였다. ('23.11.) 최근 경찰의 협조를 받아 DJ폴리스, 키다리 경찰관 등의 아이디어로 인파를 정리하는 축제장이 늘고 있다.



행사장 내 혼잡상황을 현출하여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대형LED화면 차량 곳곳에 배치
▶ 방문객들이 스스로 여유구간으로 이동하도록 유도



축제를 돌며 혼잡 상황을 안내하는 혼잡 안내방송 차량(DJ폴리스)



축제장 안전망루 운영



키다리 경찰관



☑ 지자체·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기관 간 상시 소통채널(Hot-Line) 구축
- 현장 상황관리 시 주요 구역 관리 책임자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소지하고 주최측, 지자체, 경찰, 소방과 실시간 상황공유
- 축제 특성에 맞게 무전기·단독방 등을 활용하여 끊임없는 소통체계 유지
-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합동 대응

☑ 축제장 근처에 **전철역**이 있다면 **사전에 역장과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인파 관리를 진행한다.

- 역장이 안전관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축제기간, 개막식 시작·종료 시간 등 **축제 일정 공유**
- **경찰(역 외부 관리)과 전철역(역 내 관리)** 간 소통하여 역내외 출입인파 관리
- 전철역 인파 **순차적으로 끊어서 출입**, 출구와 계단을 **입구전용과 출구전용으로 구분** 운영, **전철 진입 일시 중지, 교차정차, 무정차 통과, 증차** 등 임시조치 모색 가능
- ※ 축제장 **초근접 전철역 출입구를 폐쇄**하면 역사에 출입하는 **인파가 여러 개의 출입구로 분산**되고, 출입 동선이 길어져 **보행 중에 출입 인파가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음

☑ 축제 개최 임박시, 인파관리지원시스템(p.82 참조)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한다.

◎ 입장인파 관리

☑ **순차입장**, 대기자 **대기 대책 마련**, **입장시간 확대** 등 입장 시 인파 분산 방안을 모색한다.

- 입구에서 입장·퇴장의 인파를 **순차적으로 끊어서 입장**
- 축제장 **한계 수용인원 초과가 예상된다면**, 입장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대기장소 확보**, **대기번호 부여**, 대기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주변 관광지 안내** 등 **입장 대기자들이 출입구에 밀집해 있지 않도록 차선적 대책 마련**
- **입장 가능 시간을 가능한 한 확대 운영**하여 관람객이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입장할 수 있도록 유도

☑ 입구 바로 앞에서는 눈 앞의 문으로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대기줄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안전펜스를 입구에서부터 길게 설치**하여 **입장 대기줄을 길게** 만들고, **대기줄 정리가 입구 멀리서부터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 입장 대기줄 펜스는 **튼튼한 철제 펜스를 사용하고**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촘촘히** 설치

☑ 관람객이 입장 후 빠르게 이동하려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입구 안쪽에도 안내 요원을 배치하여 질서있게 이동하여 착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특히, 선착순 관람석 배정의 경우 입장 후 객석을 향해 뛰지 않도록 관리

- ☑ 대규모 인파가 목적지에 일시에 결집할 위험이 있는 축제(예: 해맞이 축제)라면, **긴 동선을 추가로 준비**하여 인파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분산시킨다.

수범사례



산 정상에서 하는 해맞이 축제는 일출 시각에 산 정상에 인파가 몰릴 것이 예정되어 있다. ○○시 □□구 해맞이 축제에서는 축제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등반 코스를 3개 이상 준비하여 관광객이 정상에 도착하는 시간차를 유도하였고, 그 중에는 멀리 우회하여 등반해야 하는 긴 코스도 준비되어 있었다. 정상부의 인파 밀집 상태를 산 아래의 안전요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정상부 인파위험 감지 시 산 초입에서는 최단거리 등반 경로부터 차단하는 한편, 우회 등반로는 열어두어 정상부에 도착하는 관광객들 간의 시간 차를 유도하고 인파 밀집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4.1.)

- ☑ 필요 시 **축제장 근처 도로를 단계적으로 통제**한다.

- 인파밀집 구역은 **차량통제**(차없는 거리, 차도를 보행로로 활용 등) 적극 검토

수범사례



서울시 종로구에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매년 1월 1일 0시를 전후하여 전국에서 모인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사고와 인파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순차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매년 안전하게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일시/ 구간	· 일시 : 12.31.(일) 00시 ~ 07시 · 구간 : 세종대로R~새문안로 부분통제	· 일시 : 12.31.(일) 07시 ~ 15시 · 구간 : 세종대로R~새문안로, 세종대로R~종로1가R 전면통제	· 일시 : 12.31.(일) 15시 ~ 1.1.(월) 07시 · 구간 : 보신각(종로1가 사거리) 및 세종대로 일대 전면통제
사진			

◎ 보행인파 관리

☑ 일방통행·우측보행 등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축제장에는 게이트, 부스 등을 설치하여 좁은 길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좁은 길을 왕복으로 통과하는 인파가 꼬여서 정체되는 경우 인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
- 필요 시 보행로 가운데에 **중앙 분리대나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원활한 보행을 유도하고, 설치가 여의치 않은 구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역주행을 방지하는 등 보행 안내
- 바닥이나 벽에 이동 방향이나 줄 서는 자리 등 표시
- 보행자가 멈추지 않도록 보행 흐름 지속 유도

☑ 병목 구간은 각별히 주의하여 관리한다.

- 도로가 교차하는 곳, 계단, 출입구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 속도가 저하되고 군중 밀도가 높아지므로 **도로교차 구간, 계단과 출입구** 등이 있는 곳은 가능하다면 **넓게 설계**하고, **안전요원 집중 배치**
- 밀집이 예상되는 좁은 구간은 **차량을 통제**하고, 임시로 **차로를 막아 인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불법 주정차, 적치물, 입간판 등 **보행 방해물 제거**

사고사례



○○시 □□구 폐공장을 활용해 만든 복합 문화공간에서 공연이 1층과 3층에서 동시에 진행됨. 3층에서 유명 DJ의 공연이 임박해지자, 관객이 일시에 3층 공연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몰리면서 인파밀집으로 호흡 곤란자 발생. 소방 및 경찰이 공연 중지를 요청하여 공연 중단.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였음. (*24.7.)

▶ 유명인이 등장하거나 이벤트성이 강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계단 등 병목구간에 언제든지 인파밀집 발생 가능. 사전에 병목구간 예상 지점을 파악하여 관리 대책 수립 필요

수범사례



○○시 △구 □□□백화점은 연말 인증사진 명소로 유명하다. 야간 시간대에 건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LED와 디스플레이 기술로 불꽃놀이 장면 등을 연출하는데, 화려한 불빛이 연말 분위기에 잘 어울려 성탄을 전후한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인다. 이 건물은 여러 갈래 길이 만나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위치하여 매년 ○○시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 행사 부스 앞에서 줄을 선 인파와 보행하는 인파가 뒤섞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줄이 보행로 쪽으로 길게 늘어지지 않게 정리한다.

- 대기줄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들에게 대기줄 수시 정리 지시

☑ 공연장 밖에서 공연을 보려는 인파가 밀집하여 보행 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연장 밖에 인파가 멈춰서지 않도록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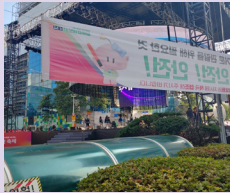
◎ 퇴장인파 관리

- ☑ 퇴장 시에는 신속하게 귀가하고자 하는 인파가 출구에 몰려들게 되므로 **순차퇴장**을 진행한다.
 - 축제 진행시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순차 퇴장 방식에 대하여 반복 안내**하고, 종료 후 사전 안내대로 **출구에서 가까운 장소의 인파부터 순차적으로 퇴장** 조치
 - 의자에 **앉아있는 관람객보다 서 있는 관람객을 먼저 퇴장**시키는 것이 진행에 용이
 - 입장 시보다 **퇴장 시 출구를 더 넓게* 만들고, 더 많이(가능한 한 모든 문을 개방)** 운영
 - * 게이트의 입장 안내 테이블 등 장애물을 퇴장 시에 제거하는 방안 등
- ☑ **프로그램 순서를 인파 분산**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메인 프로그램이 끝나고 인파가 일시에 몰려 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메인 프로그램 **뒤에 보조 프로그램들을 배치**하여 **메인 프로그램이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게 순서 구성**
 - 특히 공연을 포함한 축제의 경우 가장 인기있는 출연자가 가장 마지막에 출연하지 않도록 순서 구성
- ☑ 퇴장 후 **축제장 근처 외부 이동 통로까지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 축제장 근처에 좁고 경사진 골목이 많은 경우 더욱 주의

축제의 가장 큰 성과, 안전사고 0(제로)”

○○시 △△축제에서는 사거리의 교통을 전면 통제하여 중심에 무대를 설치하고 차도를 따라 객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을 보려는 인파가 객석 옆 인도에 정체하여 보행 장애를 유발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i) 지나치게 좁은 인도는 폐쇄하고, ii) 보행자가 인도에 멈춰서 공연을 볼 수 없도록 현수막으로 무대를 가려 보행자의 시야를 최대한 차단하였으며, iii) 경찰을 배치하여 보행 흐름이 지속되도록 유도하였다.

이 밖에도 iv) 무대와 객석의 이격 거리를 넓게 확보하였고, v)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무대까지 긴급 자동차가 출입 가능한 비상 통로를 확보하여 신속한 구조·구급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vi) 공연장 초인접 지하철 출입구를 폐쇄하여 귀가 인파를 분산하였으며, vii) 철도공사와 협업하여 전철역 끊어입장·지하철 증차 등의 안전관리를 진행했다. viii) 전철역 인근의 환풍구에도 출입통제 안전펜스를 설치하였고, ix) 낮 공연 진행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공연 전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물과 보조제도 배부하였다. 축제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의 인파가 방문하였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축제가 종료되었다. (‘24.8.)



가림막(당초)



현수막으로 보행자
시야 차단(현수막 이중화)



환풍구 철제펜스 설치하여 출입통제



무대와 객석 이격거리 확보



객석 중앙에 비상 통로 확보



전철 승강장 끊어입장
(대기 상태)



전철 승강장 끊어입장
(입장 상태)

교통대란, 통신대란, 인파대란... 방문 인파 예측의 중요성

○○도 □□군 △△△△축제는 교통·통신이 마비되고 방문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인파로 인해 문제를 겪었다. 당초 주최측은 전년도까지 매년 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었기 때문에 올해 방문 인원도 1만 명일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최대 2만 명의 방문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날 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는 5만 명이 넘었다. 이는 □□군의 총 인구와 맞먹는 규모이다.

갑자기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축제 영상이 방송과 SNS에 노출되면서 유명해졌다. 그리고 때마침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 게다가 축제 기간에 연휴까지 겹치게 되면서 평년보다 5배 많은 관람객이 몰리게 된 것이다.

이날 **도로망이 마비**되어 많은 관람객은 도로 위에서 오랜 시간 대기만 하다가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채 귀가해야 했다. 또한 갑자기 많아진 사람들로 인해 통신 수요도 급증하면서 **통신망도 마비**되어 인터넷과 휴대폰 연결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복적이는 축제장에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면, 응급상황 시 비상 전화도 어렵고, 심지어 미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안전관리자 간의 상황공유도 어려워지고, 보고·지시 및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하다. □□군은 긴급히 고속도로부터 행사장까지의 진입을 통제하였고, 방문객들에게 행사장 입장제한 문자를 발송하여 인파가 더 이상 몰려들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축제가 모두 종료된 후 □□군수는 긴급 회의를 열고 급기야 사과문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축제의 교훈으로 인해 □□군 △△△△축제는 i) **참여자를 사전 예약제로 모집하여 인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교통대란이나 인파밀집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ii) **도로통제 및 인파관리 계획**과 iii) **수용인원 초과 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iv) **휴대전화 이동중계차량 등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와는 별개로 안전관리자 간 통신두절 사태에 대비하여 v) **주요 지점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구비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05년 △△△가요 콘서트 인파사고, 그 날의 교훈

○○도 □□시는 자전거 축제의 일환으로 시민 운동장에서 △△△가요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콘서트에는 유명 가수들의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운동장 주변에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서 앞다투어 입장하여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콘서트 시작 시간은 18시였는데, 주최측에서는 리허설 진행 등을 이유로 시작 직전까지 문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 사고 위험을 우려한 경찰의 요청으로 인해 17시40분 경 1개의 문(직3문)만 열기로 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관중들은 무질서하게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직3문은 경사15도 정도의 내리막 통로에 철제문이 설치된 구조라 갑자기 밀려온 인파에 문 앞에 있던 노인과 어린이들부터 넘어졌고, 그 뒤로 밀려오던 인파도 차례로 넘어졌다. 리허설 음향 소리에 묻혀 앞의 상황이 뒤로 전달되지 않았고, 넘어져 쌓인 인파가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돼서야 군중들이 멈춰설 수 있었다. 이 사고로 11명의 사망자와 1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의 현장은 대형 인파 사고가 발생할 대부분의 위험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 1) **자리배정 방식이 선착순이 아니라 사전 예약 지정 좌석제였다면,**
- 2) **관람객이 질서있게 대기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줄을 서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다면,**
- 3) **입장 가능 시간을 길게 잡았다면,**
- 4) **대기 중인 인파를 고려하여 입장 게이트를 더 많이 개방했다면,**
- 5) **내리막길이었던 진입로를 사전에 사공하여 평지로 만들었다면,**
- 6) **콘서트 음량을 현장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했다면,**

사고 피해가 이처럼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05.10.)

입구에 1만여 명 밀집

○○도 △△시 □□전시회는 10회가 넘도록 큰 사고 없이 개최하던 행사이다. 그런데 올해는 인파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는 새벽부터 관람객이 입장하여

입장 시간이 골고루 분산되었으나, 그날따라 이른 아침 호우가 지나간 탓에 비가 그치고 행사장에 진입하려는 인파가 한꺼번에(1만여 명) 몰리게 되었다. 게다가 기존 행사때보다 대기 공간을 축소시킨 상황까지 더해져서 출입구 인근에 대규모 혼잡이 발생하게 되었고, 대기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주최측은 초동 조치를 재빨리 하지 못했다(2시간 소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으나, 이 상황은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이에 주최측은 대기시간 분산, 경찰 기동대 투입, 재난문자 선제적 발송 등의 준비를 하였으며, 이튿날 더 많은 인파가 몰렸으나(6.4만 명) 인파밀집 상황 없이 행사를 종료할 수 있었다.

기상변수와 대기공간의 축소가 대기인원 몰림 현상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주최측의 예측 미흡 및 대응·대비책 부재로 인해 인파밀집 사고의 위험까지 초래되었던 사례이다. (2023. 10.)

※ 인파밀집 시작(10:30~) → 대규모 혼잡(11:00~) → 초동조치 및 인파해소 시작(12:00~)

입장 인파 관리의 중요성

○○시 □□구 △△△△ 콘서트에서는 입장 게이트 앞에서 인파 사고 우려 신고가 접수되었다. 입장 게이트 옆 이벤트존에 있던 입장 대기자들이 입장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입장 게이트 줄에 합류하기 위해 일시에 몰려들면서 인파 밀집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콘서트 예약자는 8천 명이었는데, 입장 게이트를 1개만 운영하고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입장할 수 있게 하여 입장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다. 또한 입장줄 안전 펜스를 안전관리 목적보다는 입장표 확인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래서 펜스가 튼튼하거나 촘촘하지 않았고, 밀어내거나 끼어들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파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였다. 더구나 이벤트 존에는 별도로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관람객들이 입장줄 쪽으로 언제든지 밀려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지자체와 주최측에서는 i)입장 게이트를 1개 늘리고, ii)입장 시간을 30분 확대 운영하여 인파 분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iii)출입구 안전관리요원을 30명 증원 배치하고, iv)입장줄 펜스와 이벤트존 펜스를 보강하여 입장줄이 질서있게 정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활지 축제장에서도 인파사고 우려 신고... 보행인파 관리 방법의 중요성

○○도 □□시는 딸기 축제로 유명한 도시이다. 매년 봄이 되면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곳에서 딸기 축제를 즐긴다. 그런데 이 축제장에서 인파사고 우려 신고가 접수되었다. 115만㎡가 넘는 거대한 개활지 축제장에서 도대체 왜 인파밀집 사고 우려 신고가 들어왔을까?

첫째 문제는 인기 부스를 한 곳에 몰아서 설치한 것이었다. 유명 제과점 부스와 인기 딸기품종 판매 부스를 한 구역에 설치한 탓에 각 부스를 이용하려는 방문객들의 줄이 길어지면서 줄이 꼬이고 보행 장애를 유발하였다. 게다가 대기줄 안전펜스나 안전띠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요원들이 길어진 줄을 정리하기 어려워졌고,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관광객 간에 밀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부스를 보행로 한쪽에만 설치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 설치한 것도 문제 유발에 한 몫을 했다. 물론 보행로 양 쪽에 부스를 설치하여 보행로 폭이 좁아지게 했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인파 분산 공간이 폐쇄되었다는 측면이었다. 길 한 쪽에만 부스를 설치하여 한 쪽을 열어두는 형태로 축제장을 구성했다라면 부스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보행로 옆 개활지로 분산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을텐데, 부스로 보행로 양쪽을 막아버리니 길에 들어선 보행자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더구나 양쪽 부스에서부터 각각 대기줄이 늘어선 길은 꽉 막히게 되었다.

□□시는 경찰 기동대와 시 직원을 포함하여 i) 안전요원을 추가·집중 배치하였고 ii) 보행로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여 우측보행·일방통행을 유도하였다. 또한 iii) 부스 앞 대기줄 정리를 위한 안전띠를 설치하고, iv) 안전요원들에게 축제장을 돌며 수시로 대기줄을 정리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리고 다음 축제부터는 v) 보행로 한 쪽에만 부스를 설치하고 vi) 인기 부스들은 분산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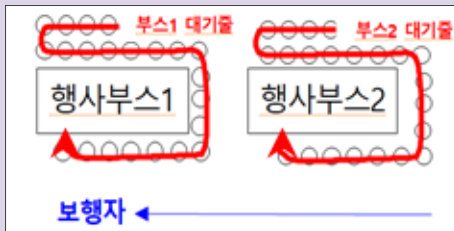
중앙 분리 및 우측보행 조치 前



중앙 분리 및 우측보행 조치 後



대기줄 정리1(부스 앞 공간이 있을 때)



대기줄 정리2(부스 뒤 공간이 있을 때)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개요

◎ 목적

군중 밀집 지역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수준 모니터링, 인파밀집 상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 사용자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 주요 기능

- (모니터링) 유동인구 데이터*와 도로 등 공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여 GIS상황판에 히트맵형태로 표출
 - * 이통사로부터 5분 주기로 50×50m 격자(Cell) 단위로 데이터 수집·분석
- (위험알림) 적정수준 이상(총 5단계 중 3단계 이상)의 밀집도가 감지되면, 상황전파 메시지(지자체) 또는 모바일 메시지(사용자)로 위험수준을 알림
 - 지자체는 CCTV 등을 통해 현장 상황 검토 후 경찰·소방 등에 위험 상황 전파

◎ 시스템 작동 체계



◎ 혼잡 단계 명칭

- "약간 혼잡" 단계부터 알림 메시지(상황전파, 카카오톡) 전송

단계	여유	보통	약간 혼잡	혼잡	매우 혼잡
기준	0.2명/㎡ 이하 (셀당 500명 이하) + 1개월 평균 대비 100%이하	0.2~0.4명/㎡ (500~1,000명) + 100%~150%	0.4~0.6명/㎡ (1,000~1,500명) + 150%~200%	0.6~0.8명/㎡ (1,500~2,000명) + 200%~250%	0.8명/㎡이상 (2,000명 이상) + 250% 이상

사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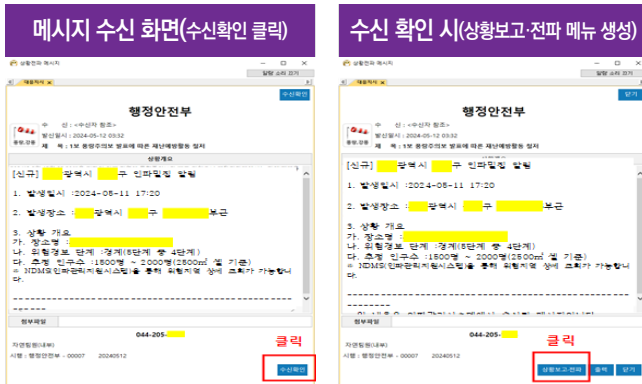
◎ 알림 수신 및 상황 판단·상황 관리

- 시·군·구는 알림을 수신한 경우 현장의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
 - * 시군구 자체 시스템, 행안부 인파관리지원시스템, CCTV 등을 통해 인파밀집상황 확인
- 검토 결과 인파관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소방에 연락 및 현장 출동 등 후속조치
-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https://ndms.go.kr>) 사회재난대응(인파관리지원시스템) 메뉴에 접속하여 상황 보고 절차 진행

◎ 상황 보고 절차

시군구 → 시도 및 중앙상황실(초동대응) → 행정안전부

- NDMS메신저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 상황전파 및 보고 메시지 작성(상황보고·전파 클릭 시, 양식 자동 생성)
 - 수신처 : 시·도, 행안부 · 작성내용 :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상황보고·전파 메시지 작성 예시

상황전파메시지 작성

일반 재난상황보고 응급차시달경계 화재·가스·연기·연기·가스·가스

제목/내용: (필수) (선택) (선택)

수신처: (필수) (선택)

발생일시: 2024-05-16 17:41:07 실시간으로

발생장소:

지역: 서울 00000 지역 상황실 상황보고

내용:

연락처:

첨부파일:

긴급문자발송시 수신 받은 통발유류 긴급 문자 발송 가능함 (지역별/연락처)
 CCTV 등 영상화면 공유, 특이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작성 필요함

02 기상 여건에 따른 위험 관리

◎ 위험요인

- 야외 축제에서 호우·대설·강풍·황사·한파·폭염·풍랑 등 **기상 특보 및 예비 특보**가 발효된 경우
- 돌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축제 추진에 변경·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자연현상이 **축제 참여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대상축제

- 기상여건 변화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축제

- 불꽃축제, 드론 이용 축제, 야외 부스 설치 축제, 여름 축제, 해안가 축제, 해맞이 축제, 달집태우기 등

◎ 관리 요령

☑ 야외 축제의 경우 **기상 여건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담당자는 축제를 계획하기 이전부터 축제가 완료되어 관람객이 퇴장하는 때까지 기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유사 시에 대비
- 돌발적 기후 변화로 긴급하게 축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구축
- 축제 참여자들이 축제에 관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안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안내

☑ **기상 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축제 중단·연기·취소·변경** 등을 검토한다.

- 기상 경보(태풍의 경우 주의보 포함)가 발효된 경우에는 축제 **중단·취소·연기** 등 검토
- 기상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축제 **장소 및 내용의 변경**이나 **시설·장비 보완** 등의 조치 검토
- **예비 특보**도 확인하여 기상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준비

수범사례

○○시 □□구에서는 산 정상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렸고, 제설을 계속하더라도 밤 사이 기온 하강으로 등반로에 빙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해맞이를 위해 야간 산행을 하기에 안전한 환경이 아니었다. □□구 안전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였고, 신속하게 축제 내용을 변경하였다. 제일 먼저 기존에 산 정상이었던 축제 장소를 산 초입의 광장으로 변경하여 방문객들이 등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밤 사이 등반로 제설 작업을 완료하고 모래와 염화칼슘을 충분히 살포하였으며, 등반로에 경찰과 구청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입산하는 방문객들이 낙상, 추락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사고 없이 축제를 종료하였다. (24.1)



☑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으나, 기상 악화가 축제 참여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축제 중단·연기·취소·변경** 등을 검토한다.

- 축제 **취소·연기·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축제 장소를 **실내**로 이동하는 대안도 검토
- 비가 오면 경사로, 계단, 무대 등에 **미끄럼 방지 조치** 보완
- 눈이 오면 **보행로 및 도로 제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지붕에 눈**이 쌓여 무너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털어내야 하며, **고드름이 낙하**하지 않도록 자주 제거
- 바람이 불면 **부스가 날가지** 않도록 바닥 고정장치 및 하단 모래주머니를 보강하고, 무대가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를 보강·확인
- 어떠한 경우에도 무리하게 축제를 진행해서는 안됨

사고사례

○○도 □□군 △△축제에서 예상치 못한 돌풍으로 부스 수신통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날은 기상특보는 없었으나 강풍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풍속 11.2m/s의 돌풍이 부는 순간 먹거리장터에 설치된 대형부스 천막 22개 동이 바람에 날아갔다. 이 사고로 □□군은 예정되었던 개막식 행사를 취소하고 천막을 모두 철거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하였으며, 강풍이 가라앉게 되어 남은 축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24.3.)



▶ 야외 축제 진행 시 담당자는 기상변화 수시로 확인 필요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상악화의 종류(호우, 강풍 등)와 기준을 단계별로 명시하고
상황별 대처 방안 마련 유사 시에 대비하여 부스 및 부대시설 전도방지 조치 강화 필요

수범사례

○○○도 □□시 △△△런닝 대회는 밤새 달려서 완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기. 경기 당일 오전부터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서 빗발이 거세져 경기 코스에 집중 호우가 내림.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위험성을 인식한 □□시와 경찰은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 중단 결정. 달리기를 진행중이던 참가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참가자들은 유사 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나눠 준 인식 팔찌를 추적하여 모두 찾아냄. 참가자 전원 차에 태워 귀가 조치함. 인명피해 없이 상황 종료. (24.6.)



▶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기상 악화가 축제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축제 중단 결정 필요. 야간·산악 프로그램 개최 시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비상 상황 대처를 위하여 추적 가능한 인식표 등을 사전에 배부하는 방안 검토.

☑ **햇빛이 강한 날이거나 무더위 속에 개최되는 축제에서는 방문객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 **폭염 특보** 상황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축제 **개최 및 지속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
- **폭염 특보 상황이 아니라 해도** 축제 당일 체감온도 33℃이상인 경우 폭염 주의보에 준하는 폭염 대책을, 35℃이상인 경우 폭염 경보에 준하는 폭염 대책을 이행
-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축제장 내에 **그늘막, 차양막 등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위치를 명확히 안내
- 쿨링포그, 선풍기, 냉풍기, 에어컨 등 냉방 기기를 가동하여 **시원한 환경** 조성
-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얼음을 혹은 냉생수** 등을 접근이 쉬운 곳에 충분히 비치,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도록 지속 안내
- 미스트 터널 설치, 살수차를 동원한 살수 등 축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온도 저감** 방안 검토
-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마라톤·자전거 등 **체력 소모가 많은 프로그램 자제, 활동 강도 조절** (필요 시 중단 또는 연기)
- 쉬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정기적인 휴식시간 제공**, 오래 서 있는 프로그램 지양
- **야간에** 실시되는 체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안전요원 배치·쉼터 설치 등 안전조치 강화 후 실시, 특히, 열대야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여부(취소, 중단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추진
- 축제장 안전요원은 참가자들의 동향을 주의깊게 살피고, 안색이 좋지 않은 관람객에게 말을 걸어 **건강 상태를 구두로 확인**
- **온열질환 증상**(체온상승, 두통, 어지러움, 매스꺼움, 근육경련, 구역질, 피로감 등)을 겪는 참가자가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필요 시 **건강 체크 구역**을 운영하여 체온측정 및 온열질환 관련 건강 상담 제공
-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와 의료부스**를 배치하고 사전 안내

※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임. **노인,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고·저혈압 환자, 당뇨질환자, 신장질환자, 음주자** 등이 취약 대상

사고사례



○○도 □□시 야간 마라톤 대회는 열대야 상황(당시 30℃)에서 경기를 강행하여 경기 시작 후 40분 만에 참가자 28명이 온열질환으로 탈진. 이후 □□시와 소방이 주최측에 요청하여 대회는 조기 종료됨. (*24.8.)

▶ 야간이라 해도 열대야이거나 기온이 높다면 체력 소모가 많은 체육 프로그램을 자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는 안됨.

☑ **강추위 속 얼음판, 산지** 등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는 방문객이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에 힘쓰고, 결빙 취약 구간은 주의깊게 예찰
- 축제장 곳곳에 한파 쉼터, 난로 등을 설치하고,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난로, 마스크, 담요 등을 비치
- 겨울에는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는 야간에 축제 자제
- 행사장 안전요원은 방문객들의 동향을 주의깊게 살피고, 안색이 좋지 않은 방문객에게 말을 걸어 **건강 상태를 구두로 확인**
-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와 의료부스를 배치하고 충분히 안내

※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음. 특히 저체온증의 경우 몸이 떨리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말이 어눌해지다 의식을 잃게 됨. **노인,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고·저혈압 환자, 당뇨질환자, 심장질환자, 음주자** 등이 취약 대상

☑ **불꽃축제, 달집태우기, 드론·열기구 활용 축제**의 경우에는 특히 **바람**에 주의한다.

- 담당자는 **풍량·풍속·풍향**을 수시로 **체크**하여 프로그램 추진 여부 결정
- 바람이 **풍속 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거나, 돌풍 또는 비정상적인 기상상태로 허가 관청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기상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불꽃놀이를 **중단**
- **풍속이 초당 10m/s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 **중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
- 바람에 불씨나 비행장비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으므로 **이격거리 확대** 검토

☑ **산악, 수면** 등에서 진행되는 축제, **경기 대회** 등을 포함하는 축제의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축제 진행 중에도 호우, 폭염 등의 상황에 따라 축제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축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구급 요원, 구급차 등을 확대 배치**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03 장소적 위험 관리

1. 산

◎ 위험요인

- ☑ 지역축제가 산악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고, 특히 야간의 경우 축제의 경계선 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낙상사고,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 대상축제

- ☑ 달집태우기, 역새태우기, 봄꽃축제, 산나물 축제, 단풍축제, 철쭉제, 눈꽃 축제, 해넘이·해맞이, 산악 자전거·마라톤·암벽등반 등 경기를 포함하는 축제 등

◎ 관리요령

- ☑ 산악지역에서 개최하는 역새태우기, 산악자전거 대회, 암벽등반대회, 산악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하는 축제 개최자는 축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개최시기, 장소, 시간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계획은 민간산악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그 간의 안전사고사례 및 축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작성
 - 산악지역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는 관람객 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행사를 마무리하고, 야간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별도 야간안전대책 수립

☑ 축제 중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돌풍,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지역축제 계획 때 기상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대책 강구
- 산악지역의 정상부근에서는 갑작스런 돌풍, 회오리 바람 등에 의해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공연장, 무대 장비 등)의 전도위험이 크므로 합동지도·점검 시 안전성 확인 필요
- 갑작스런 돌풍, 폭우, 하천수위 급등, 자동우량경보 발령, 낙뢰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축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상 여건이 악화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축제를 중단하고 관람객 귀가 조치



☑ **역새태우기, 달집태우기 등 불을 사용하는 축제**는 돌풍 등에 대비하여 기상상황, 화재발생 시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한다.

- 불을 사용하는 축제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개최
- 축제 계획 시 방화선 구축, 물 뿌리기, 산불진화요원 배치 등 산불방지대책 수립
- 산불 발생 등으로 긴급대피상황 발생시 관람객 등이 일시에 이동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때 관람 인원과 축제장의 지형을 고려하여 안전대피공간과 비상통로 확보
-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때에는 화재의 발생률이 높으므로 행사의 축소 등 특별한 대책 강구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소방에 협조 요청하고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여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 관할 지자체는 응급 상황 시 구조·구급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구조요원 및 구급차량을 현장에 배치 요청하고,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여 유관 기관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조 체계 유지
- 소방은 축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 현장 대기 및 소방관 배치 등 추진

- ☑ 축제가 야간개장까지 진행되는 경우 야간근무자 운영, 야간조명계획, 진·출입구 확보 및 행사종료 후 이동계획 등 **야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 지역축제행사장 주변에 암반지역, 경사지 등의 위험지역이 있는지 사전검토하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위험표지판과 안전선(safety line) 등을 설치하여 **낙상사고 등을 예방**토록 조치한다.
 - 긴급대피 상황발생시 관람객의 동요로 낙상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곳에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도록 계획
 - 주요 출입구에는 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하여 유사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 낙상사고 등은 신체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축제 개최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헬기 및 구조·구급요원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산악지역의 안전사고 발생은 사망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방은 인명구조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헬기투입 등 적극적인 지원체제 유지
- ☑ 산악자전거 타기 등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축제**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한다.



☑ 산악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사고(탈진, 낙상사고, 낙석사고, 낙뢰사고 등)의 예방대책으로 **관람객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한다.

- 낙상사고는 돌풍, 지반약화, 판단 미숙, 음주, 영웅심, 기술부족 등에 의하여 발생하나 사고발생 시 대부분 사망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주의 철저
-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이 연약해져 암반이 붕괴하거나 약해져 낙석사고가 일어나므로 사전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낙석 위험이 있는 곳은 축제관람객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 특히, 봄철 낙석, 여름철 산사태, 겨울철 눈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축제 전 사전점검을 하는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대책 강구

☑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낙뢰는 산 정상부위 또는 높은 지역에서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먹구름이 끼거나 돌풍이 불 경우 축제 개최자는 관람객 등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조치한다.

- 번개 발생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토록 하고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하도록 교육 실시

☑ 축제개최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주변지역에서의 축제 개최를 지양하여야 한다.

☑ 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약품과 구조·구급요원을 현장에 확대 배치하는 등 평지에서의 축제보다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고 발생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축제 관계자에게 사전교육 실시

☑ 지형적 요인으로 산에서는 시야가 좁고 정보수집이 어려우므로 긴급상황 대처요령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를 포함한 행사장 안내도를 제작·배포한다.

☑ 암벽(빙벽) 등반대회 개최 시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유경험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참가자의 범위를 설정한다.

☑ 사전에 시설물을 점검·보완하여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 손잡이, 계단, 데크 등 시설물 파손 여부, 바닥 평탄성 점검
- 형광 안내 표지, 출입통제 안전선, 미끄럼방지 패드 보완

☑ 지역축제 기간 중에는 이동용 가스시설에 의한 가스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순찰활동을 한다.

- LPG 가스시설의 설치불량 및 가스통의 장시간 햇빛 노출로 인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축제가 장기간 진행될 때는 이동식 가스시설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 우기 시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없는지 점검한다.

- 전기설비의 접촉 불량, 단락 등에 의한 불꽃방전 발생 여부와 주변 가연성 물질제거



2. 수면(바다, 강, 호수 등)

◎ 위험요인

- ☑ 바다, 강, 호수 등 주로 물과 주변 자연 경관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축제에는 익사사고, 심장마비,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수상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대상축제

- ☑ 바다축제, 호수축제, 해변축제,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갯벌체험, 바다수영대회, 세계요트대회, 빙어축제, 머드축제, 오징어축제, 최남단 방어축제, 거북선 축제, 해양축제, 유등축제 등

◎ 관리요령

- ☑ 바다, 강, 하천 등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익사사고, 심장마비, 어린이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 그간 지역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선박의 승선정원 초과, 수영전 준비운동 미실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 ☑ 지역축제 개최자는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수상구조대 등과 함께 현장대비체계를 구축하여 긴급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 가능토록 한다.
- ☑ 안전관리계획은 바다, 강, 호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수상안전요원의 적정장소 배치, 행사참여 선박의 승선정원 준수,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수상축제에 참여토록 조치
 - 축제 개최자는 수상안전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대한 수상안전요원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축제 참여자가 준비운동 부족과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갈 때 심장마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높으므로 사전준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바다로 직접 들어가는 축제의 경우 해양경찰관서,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기관과 기상·해양상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한다.

- 바람(강풍, 돌풍), 집중호우, 너울성 파도, 기온, 조석, 조류, 수온 등 기상·해양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해양경찰관서,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전문기관과 협의
- 태풍·풍랑·해일·호우와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제한하고 행사연기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
- 바다축제, 해변축제는 풍랑 등 특보 발령 시 축제의 계속 진행여부 검토
- 해저지형에 따라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지역,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지역, 이안류가 발생하는 지역 등 위험구간에는 부표 및 safety line을 설치하는 등 참가자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
- 바다수영, 갯벌체험과 바다 갈라짐 행사의 경우 썰물·밀물 시간 등 위험시간대를 피하여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이안류 : 역조(逆潮)라고도 불리며 해안으로 밀려들던 파도에 의해 갑자기 먼 바다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을 뜻함

☑ 바다, 하천, 호수 등 수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육지와 달라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도 기상·해양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어 축제 전 상황에 따른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가 참여하는 수상축제는 보호자를 동반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도록 하고, 어린이 다수가 모이는 물놀이 장소에는 수상안전요원을 집중배치

사고사례

○○시 강변 레포츠 축제장에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변에서 놀던 어린이가 익사하는 안전사고 발생('07년)

▶ 보호자의 어린이 보호 강조와 수상안전요원 확대 배치 필요



☑ 지역축제 행사장에 사용하는 유기사설과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사설과 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유기사설과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관리자 배치와 임무 점검 등

☑ 수상축제 행사장에 설치하는 이동용 LPG가스시설의 불완전한 설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 특히 축제가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에는 축제 기간 동안 이동식 가스 시설의 가스 누출 여부 등 현장 확인점검 지속 실시

☑ 전기 기기의 절연상태, 방수상태 등을 점검하고,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는 없는지 점검한다.



◎ 선박을 운항하는 수상축제 관리

☑ 지역축제 행사로 유람선의 임시운항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유람선 운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자와 정신이상자의 승선 및 선박운항금지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안전운항대책을 강구한다.

☑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 또는 관공선 등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교육을 사전 실시하고 선박별 수상안전요원을 승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관서, 해양구조대 등 해양안전 관련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이때 상세 역할 분담 및 조직 구성은 수상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 낚시, 물놀이 등 수상관련 행사 때에는 장소별 수상안전요원과 선박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낚시 체험행사의 경우 일정(안전)구역 내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사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 축제 개최자는 수상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과거의 사고사례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물놀이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구조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명사고 대비 구조대 편성과 수상 감시탑 설치·운영
- 구조·구급장비를 사전 배치하고 성능확인 등 점검 실시



☑ 행사 당일 기상상황을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여 선박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LAW 유선 및 도선사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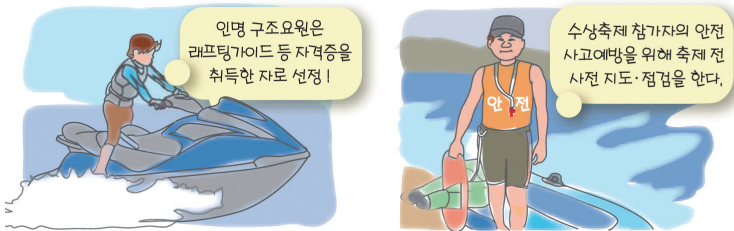
- 안전관리계획 수립(법 제21조)
 -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안전운항 의무(법 제12조 및 제16조)
 -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음주·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24조)
 -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 이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수상축제 관리

☑ 수상축제에 사용되는 모터보트, 요트 및 수상 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장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점검 실시

☑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선정한다.



☑ 수상축제 참가자는 술,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되며, 축제개최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축제 전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 및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에 따른다.)

사고사례

○○도 □□군 국제 범선 축제 중 요트가 반환점을 돌다가 탑승객이 돛대에 머리를 부딪쳐 바다에 추락하는 안전사고 발생('09.5.)

▶ 수상안전수칙(구명조끼 착용) 준수 지시 및 수상안전요원 확대 배치 필요



LAW 수상레저안전법

- 안전운항 의무(법 제 28조, 제29조, 제 37조, 제 43조)
 - 약물복용 등 상태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안전검사, 영업구역 외 영업 등 위반 시(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안전장비 미착용자, 운항 정원을 초과하여 조종하는 경우(과태료 100만원 이하)
- 운항규칙 준수(법 제21조)
 - 기상특보 시 운항 금지 등(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 음주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법 제27조 및 제28조)
 -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 면허취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수상축제 개최자

- ☑ 축제 계획 시 기상·수상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상안전관리요원의 현장배치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 강풍, 돌풍, 집중호우, 너울성 파도, 조석, 조류, 수온 등 기상·해양 예보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 수상축제 관람객 등이 음주 후 바다 입수, 선상퍼레이드 참가, 낚시어선 운항 또는 승선하는 등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 음주 후 입수하는 경우, 심장마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히 금지
- ☑ 수상축제 관람객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상안전 요원, 경찰(해경), 긴급자동차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토록 한다.
 - 낚시 체험장, 물놀이장 등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요트경기, 물놀이 체험장 등에는 구명조끼를 착용 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수상안전 수칙 준수



- ✓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 또는 관공선 등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교육을 사전 실시하고 선박별 수상안전요원을 승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특히 음주 후 운항 및 정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수상축제 중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개최자,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수상구조대 등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 수상축제장 주변 구명환, 구명줄,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 장비의 사전배치 여부 등 안전장비 등에 대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 수상축제 행사장에 설치하는 이동용 LPG가스시설의 불안정한 설치와 가스통의 햇빛 노출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순찰활동을 한다.

- 지역축제가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축제 기간 중에 가스 누출여부 등 현장확인점검 지속 실시

- ✓ 기기의 절연상태, 누출 충전부, 기기의 방수상태 등을 점검한다.

- ✓ 전기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는 없는지 점검한다.



◎ 해양경찰관서

☑ 수상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합동 지도·점검 실시한다.

- 수상안전관리계획이 현지실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경찰관서, 소방관서, 수상 구조대 등과 협의하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수상축제 행사장 내 구명줄을 부착한 구명부환, 구명줄 발사기 등 인명구조장비의 확보 여부와 수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선박에 승선할 인원은 적정한지 등

☑ 수상레저활동 시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등 「수상레저안전법」등에서 정한 관련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점검 실시

☑ 태풍·풍랑·해일·호우와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제한하고 행사연기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바다축제, 해변축제는 풍랑 등 특보 발령 시 축제의 계속 진행여부 검토



서귀포시장 등 5명 사망·실종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 최남단방어축제에 참가한 이○○ 서귀포시장 등 7명을 태운 소형어선이 마라도 부근 해역에서 침몰해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5일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3km 해상에서 이○○ 서귀포시장 등 7명이 탄 모슬포선적 소형 낚시어선 ○○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황○○ 서귀포시 대정읍장, 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임○○ 대정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3명이 숨지고, 서귀포시장과 선장 김씨가 실종됐으나 윤○○ 시장비서와 서귀포시청 직원 강○○씨는 구조됐다.

- 사고 원인 및 문제점 : ○○호 침몰은 일단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에다 해상의 거친 파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침몰 현장에서 구조되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윤○○씨는 “높은 파도에 의해 바닷물이 배로 들어와서 침몰하게 됐다”며 “나는 드럼통을 붙잡아 살아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짧게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거칠게 치는 파도로 어선에 바닷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선장이 배를 좌현으로 트는 순간 기울어지며 침몰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호는 지난 7일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당시 선장을 포함해 정원이 6명이지만 이날 출항에는 정원을 1명 초과한 상태에서 해경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고는 정원을 초과해 배의 무게 중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거센 파도를 피하며 선수를 트는 순간 전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아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요약)

- 연합뉴스(2006. 11. 25. 18:00) -

04 재료적 위험 관리

1. 불·불꽃

◎ 위험요인

- ☑ 도심지, 산간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달집태우기, 연등행사, 불꽃축제, 억새태우기 등 불을 활용한 축제에서는 돌풍과 꽃불재료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축제 계획 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 대상축제

- ☑ 불꽃축제, 달집태우기, 억새태우기, 들불축제, 달맞이행사, 연등 축제 등

사고사례

○○시 봉화대 재현행사 중 연막탄이 폭발하여 2명이 부상하는 사고 발생 ('09.5.)

▶ 연막탄 재료인 화학 사용 부주의



◎ 관리요령

- ☑ 불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돌풍 등), 이동식 가스 시설 및 불꽃축제 재료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폭발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 억새태우기 행사, 달집태우기 등 산지에서 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돌발상황이 생각지 못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방화선 구축, 관람객 등의 대피 공간 및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 축제 개최자는 기상악화 및 긴급대피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피공간, 이동통로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람객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사전교육 실시
- 축제 시작 전 축제장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수풀 및 잡목 제거, 방화선 구축, 뒷불 감시반 운영, 사전 물 뿌리기, 산불진화 장비 비치, 소방안전요원 배치 등 **사전 화재예방 조치**
- 억새태우기, 달집태우기 등 불을 사용하는 축제는 바람에 의한 불씨 전이가 화재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이나 민가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개최**
- 특히 달집태우기의 경우 달집에 폭발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

수범사례

불을 사용하는 축제를 개최하기 전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주변에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안전선을 구축하며, 축제 현장에 산불 진화대를 배치하는 등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함



소방 살수차로 사전 물뿌리기



달집태우기 축제 산불 진화대 현장 배치

사고사례

사례 1

○○광역시 □□□구 정월대보름 축제 중 달집태우기 순서에서 □□□구 직원이 달집에 접근하여 점화하는 순간 달집이 폭발을 일으키는 사고 발생 ('24.2.)



▶ 달집에 폭발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달집 제출자들에게 사전 안내 필요
유사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한 달집 점화 방안 모색 필요

사고사례

사례 2

○○도 □□군 △△철쭉제 개막식에서 불꽃놀이 폭죽이 의도치 않게 산쪽으로 발사되어 산불이 발생하였고,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읍사무소 직원이 낙석에 머리를 맞아 부상하는 사고 발생 (17.5.)



▶ 불꽃놀이 시 산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필요 유사 시를 대비하여 산불진화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불 놓기 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인·허가 관계기관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산지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은 산지에서 불 놓기 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불예방 조치계획과 허가의 위치 및 범위가 적절한지 등을 확인·검토하고 축제 전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 실시

☑ 축제 중 **기상악화**(강풍, 폭우 등)로 돌발변수 발생 시 축제개최자,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현지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축제 지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 기상악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축제의 취소·중단·연기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

☑ 주최자는 달집태우기 등 불 사용 축제 개최 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를 요청하는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합동 지도 점검 진행

- 산불발생, 화재발생,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 대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찰, 소방 및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

- 경찰·소방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고 접수나 출동 시 즉시 공유**

- **사전에 긴급 대피 공간, 대피 동선 등을 확보**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비상 시 행동요령 안내

- 소방차량, 구조·구급 요원 등 현장지원체제 강화

- 소화기 등 초동 대응에 필요한 **소화 장비** 충분히 배치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축제 진행요원과 지휘통신망을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대비 **합동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불꽃축제 관리

☑ 불꽃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전에 **일기예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풍속과 풍향까지 고려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이격거리를 설정한다.

- 담당자는 **풍량·풍속·풍향을 수시로 체크**하여 프로그램 추진 여부 결정
- 바람이 **풍속 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거나, 돌풍 또는 비정상적인 기상상태로 허가 관청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기상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불꽃놀이를 중단
- 풍속이 초당 10m/s 이상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 **중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꽃 발사궤도 상공에는 어떠한 물체도 접근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홍보 등을 진행한다.

-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관람지역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발사 각도를 조절하고, 낙하 지역은 넓고 개방된 곳을 선택



☑ 불꽃축제 진행 중 꽃불 재료(화약류)가 개화되지 않거나 불발된 화약이 연소되지 않고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꽃불의 **낙하 지점은 안전한 장소로 설계**한다.

- 시가지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불꽃의 사용을 자제하고, 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과 자동차 또는 연소성 물질이 낙하지역 내에 있지 않도록 조치

☑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꽃 발사대 주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안전선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험장소에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
- 어린아이들은 축제장 주변에서 뛰다니거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 발사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모나 보호 안경 등의 보호장비 착용**

☑ 불꽃놀이 축제 진행 시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지역축제 개최자 및 관계자는 꽃불재료의 안전관리에 대해 경찰관서 등 관계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꽃불류 제품의 운반·저장 또는 사용에 있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불꽃축제를 하려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의 허가** 필요
- 축제장에 도착한 꽃불류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저장소를 표기하고 경계선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즉시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에 의한 **점검을 실시**
- 꽃불류 발사 장소는 직사광선 및 비와 이슬을 막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꽃불류 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화약류 저장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꽃불류나 불티 등에 의해 점화되지 않도록 조치
- 꽃불류의 사용이 시작되면 사전에 정해진 위험구역 내에 관계인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위험 요인이 없는지 재차 확인한 후에 점화

사고사례

○○광역시 □□구 개막식 불꽃놀이 중 폭죽이 이동식 화장실 및 발전기 주변에 누출된 기름에 인화되어 조형물 및 이동식 화장실이 연소되고 차량 7대가 전소되는 사고 발생 ('07.4.)

▶ 불꽃놀이의 낙하지점 선정 미흡/ 꽃불류 발사 장소에는 이물질의 유입을 막고 감시인 배치



☑ 환자 발생 시 누구든지 주최측에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 연락처가 적힌 현수막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불꽃쇼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갓난아기나 청각이 예민한 동물들은 데리고 오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홍보 실시



불꽃쇼 등에는 소음이 심하므로 영아나 애완동물은 데려오지 않도록.....

화왕산 억새 태우다 불... 안전사고 발생!



정월대보름인 9일 오후 6시 20분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화왕산 정상(해발 757m)에서 억새태우기 행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번진 불길을 피하려다 등산객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

사고는 행사진행요원들이 억새에 불을 붙이는데 갑자기 불어 닥친 역풍을 타고 불길이 방화선을 넘어와 등산객들이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산봉우리에서 50여m 지점에 있었다는 이모(28)씨는 “억새 태우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중이었는데 불길이 갑자기 크게 번지자 뒤쪽에서 사람들이 ‘사람이 떨어졌다’며 소리를 질렀다”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불이 크게 번지면서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산 정상상을 뒤덮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만 들렸으며 완전히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자 창녕군 등 행사진행 본부는 안전사고 소식을 알리면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하산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행사장에 있던 1만5천여 명의 상당수가 날이 어두운 가운데 사고와 불길에 당황하는 등 큰 혼잡을 빚었던 것으로 미뤄 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창녕군 측은 “당시 민원 필수 요원을 제외한 500여 명의 직원들이 산 일원에 배치했다”며 “안전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갑작스런 돌풍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가 났을 때 정상에는 행정 48명, 소방 20명, 경찰관 46명 등 114명이 있었다고 전해 전체 안전요원 배치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사망, 실종자 및 부상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창녕군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요약)

- 연합뉴스(2009. 2. 9) -

2. 눈·얼음

◎ 위험요인

- ☑ 눈, 얼음 등을 활용하여 눈썰매, 얼음 조각상, 얼음 위 썰매 타기, 얼음 낚시 등이 진행되는 축제로 얼음 갈라짐으로 인한 익사사고, 조각상이나 눈더미 붕괴 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 대상축제

- ☑ 눈꽃축제, 빙어축제, 동장군 축제, 얼음 나라 산천어 축제, 동계민속 예술축제, 얼묵어 축제, 겨울바람 축제 등



◎ 관리요령

- ☑ 축제장 출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축제기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방송 등을 한다.
- ☑ 눈썰매장, 얼음낚시터 등의 축제장은 축제 종료 후 해빙기에 행락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출입금지와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 지자체 및 축제 개최자는 경찰·소방·수상구조대·민간안전요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축제기간에는 현장지원체제를 운영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 등 안전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행사기간 중 구조·구급요원을 행사장에 대기시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구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 얼음 축제장 관리

☑ 얼음 위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결빙상태 확인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 얼음 위에서 개최되는 썰매타기, 낚시 등의 지역축제는 **얼음의 결빙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 얼음 위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참가 인원이 많을 경우 개최시기, 장소, 인원 등을 고려하여 더욱 철저한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얼음판의 두께와 강도를 고려하여 타공 크기와 간격을 조정해야 하며, 매일 얼음판의 결빙상태 등 안전성 점검

- 얼음판 안전성 점검 결과 숨구멍이나 손상이 발견된 곳은 위험표지판 또는 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하고, 다른 구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축제를 전면 취소



☑ 얼음 낚시터 축제계획은 얼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타공하고, 타공 지름이 2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수범사례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는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이 1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크고 유명한 얼음낚시 축제이다. 이 축제에서는 얼음판 천공 시 사전에 얼음의 두께와 강도에 따른 천공 간격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축제장을 조성한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도 매일 얼음물 속과 얼음 위에서 얼음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얼음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화천 재난구조대가 현장에 상시 대기하도록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등 축제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얼음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계획하고, 구간별 참가인원을 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이 얼음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개막식 등의 행사는 가급적 얼음판 위에서 진행하지 말고 땅에서 진행
- 동일한 조건이라도 위치와 물의 흐름에 따라 결빙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험구간을 사전 확인하여 Safety line 등 설치
- 축제장 외곽에는 Safety line을 설치하여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낚시 또는 썰매 타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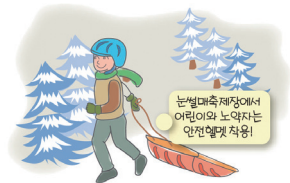
수범사례

○○도 □□군 얼음나라 △△△축제에서는 개막식 진행 시 얼음판 위에 올라가는 인원을 통제하고 대부분의 관람객을 얼음 옆 둔치 구역으로 안내하였다. 일시에 많은 인파가 얼음판 위에 밀집해 있으면 얼음이 파손되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인원만 얼음 위에 올라가고 그 외 관람객은 땅에서 안전하게 개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얼음판 위의 인파밀집 상황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개막식을 성료하였다. (*24. 1.)



☑ 지역축제 계획 시 경찰관서, 소방관서, 수상구조대, 민간안전요원 등과 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행사기간 중에는 구조·구급요원 및 수상구조대 등을 행사장에 대기시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구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특히, 얼음의 갈라짐으로 인한 익사사고 발생 시 접근이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구조·구급이 가능한 장비(예: 호버크래프트, 수륙양용차)등 운용



◎ 눈 축제장 관리

☑ 겨울철 썰매타기는 강·하천을 이용하기보다는 겨울철 휴경지(눈)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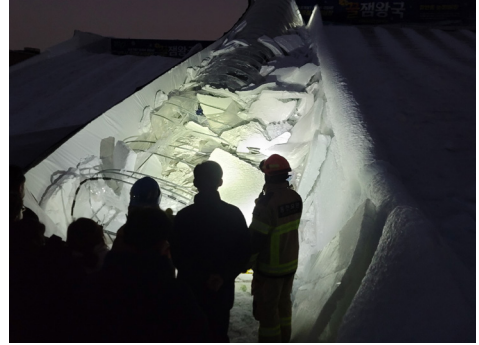
☑ 눈썰매장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썰매장의 경사도와 슬로프의 길이를 적정하게 하고, 슬로프는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

-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펜스 외부로 이탈되지 않도록 그물망 등 설치
- 눈이 흘날려 지붕 위에 쌓이면 붕괴의 위험이 생기므로 주의깊게 관찰하고, 썰매장 전체의 눈을 주기적으로 털어내야 함

사고사례

○○도 □□시 눈썰매장에서 인공눈이 눈썰매장 보행터널(철제 뼈대에 비닐을 씌운 형태) 지붕 위에 쌓였고, 관리자 측은 이를 치우지 않았음. 결빙된 눈더미는 경사진 터널 지붕을 타고 아래쪽으로 쏠려 내려왔고, 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전체 터널 30m 중 10m가 붕괴, 1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 발생('23. 12.)



▶ 관리자는 축제장의 눈이 흘날려 주변 시설물에 쌓이는지 주의깊게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눈을 털어내야 함

☑ 눈썰매장의 주 이용객인 **어린이 안전**에 특히 주의한다.

- 어린이들은 방향 조절 능력이 떨어져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가 휘청거리 옆 사람과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어린이나 노약자는 안전 헬멧을 착용한 후 이용

☑ 출발지점의 안전관리요원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시킨다.

- 안전요원은 출발 전 탑승자에게 탑승요령 등 안전교육을 한 후에 출발 진행

사고사례

○○도 □□시 △△동장군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가 눈썰매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미 내려가서 앞에 정지해 있던 다른 어린이와 충돌하여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 발생('06.1.)



▶ 안전관리자가 눈썰매 탑승자 간에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시켜야 함

3. 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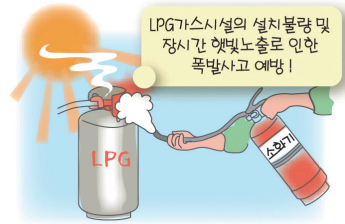
◎ 위험요인

- ☑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가스시설은 음식만들기, 고무풍선제작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되고 있으나, 이동용 가스시설의 사용 부주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제품 노후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 대상축제

- ☑ 음식물 부스를 운영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축제, 겨울철 가스를 사용하는 축제, 가스를 주입하는 풍선을 사용하는 축제 등 가스 사용 축제 등



사고사례

○○도 □□시 축제장 내 야시장에서 LPG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는데, 관람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하여 1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 발생 (07.4.)

▶ 축제 전 안전관리자가 가스 점검 미실시, 가스 안전수칙 미이행



◎ 관리요령

- ☑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가스누출 때문에 폭발·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가스시설과 관련된 제품의 설치·관리·노후·불량 등이 주요 원인이다.
- ☑ 가스폭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축제 개최자,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공급자 등 관련 기관에서는 축제 전 가스 안전수칙 및 안전기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관할 가스안전공사를 참여시켜 가스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해 자문
 - 우기에는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없는지 지도·점검 실시
- ☑ 지역축제장에서 애드벌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헬륨가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축제 완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하고, 애드벌룬이 가스부족, 강풍 등으로 인해 인근 시설물과 접촉되거나 아이들 손에 닿는 장소에 놓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애드벌룬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 후 설치
 - 강풍·돌풍에 의해 설치된 애드벌룬(허가대상·비대상 포함)이 날아가 인명 및 시설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애드벌룬을 단단히 결박하고, 축제 중 결박 상태 수시로 확인
- ☑ 홍보용 대형풍선, 애드벌룬, 임시 가스시설 등 위험성이 높은 가스 사용 시설물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만이 설치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 축제 중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를 요청하고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여 유사 시 **즉시 상황공유**한다.
 - 소방은 관할 지자체가 현장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현장 지원조치 이행



◎ 가스시설 안전관리

- ☑ 가스 사용은 구역별로 별도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가스 공급자는 **한 개 업소**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 축제 기간 동안 **가스공급자가 상주**하여 교체, 시설점검 등 업무 수행
- ☑ 가스사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 공급자를 통한 용기교체, 가스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한다.
- ☑ 안전관리계획서에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한다.
- ☑ 축제 개최자는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행사 전 가스사용자 및 공급자에 대한 **가스안전교육**을 한다.
 - 가스저장실, 가스사용자, 소방관서 및 현장통제 사무실에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와 차단 밸브 위치 표시 등 도면 배포·부착
 - 가스사용 전 가스안전공사의 최종 가스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 행사규모와 기간에 따라 전용부스를 확보하여 공급자 대기과 검사장비 등 보관
 - 지역축제 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행사장소, 규모와 종류에 따라 가스안전 설비에 관한 자문 실시
- ☑ 임시로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곳에는 가스누출이 없는지 **비눗방울 등으로 반드시 점검 후** 사용한다.
- ☑ 가스를 사용하는 부스에는 **부스별로 개별 소화기**를 비치한다.



☑ 축제장 가스안전 분야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한다.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 취득 여부(「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제2항」)
- 누출 시 가스 체류, 담뱃불 등에 의한 폭발 우려 등이 있으므로 **가스용기 실내보관 금지**
- 실내 축제 시 가스 누출 차단기·경보기 등 **가스 안전장치 설치**(야외에서는 권고 사항) 및 정상작동 확인,
가스 누출 관리상태 점검
- 가스통이 햇빛과 눈·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캡 설치**
- 가스통은 체인 등으로 묶어 **전도방지 조치**(체인 설치가 곤란한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받침대 설치)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등 적정여부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 가스보일러의 흡입구 및 배기시설 설치상태
- 축제장 내 **빈 가스통 적치 금지**, 가스통 보관장소에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 가스배관 **호스 3m 초과 금지**, **호스 T자형 연결 사용 금지**(금속 강관 사용할 것)
- 가스 호스·배관·밸브 등 소모품 **부식 및 파손** 점검
- 가스통은 화기 취급 장소와 **2m이상 우회**하여 옥외 보관



수범사례



○○도 □□군 키조개 축제장에서 합동점검을 통해 가스폭발사고를 예방하였다. 축제장 안전점검을 진행하던 한국 가스안전공사 직원은 무대의 불꽃장치 연결 부위에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빠르게 연결 부위를 재결합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를 방지하였다. 또한 먹거리 장터의 LPG시설의 호스 연결부위에서도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하였고, 노점상의 가스 시설을 점검하며 노후 가스시설 개선 활동을 펼쳤다.

● LPG용기교체는 공급자를 통해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때에는 안전하게 분리 후 연결하여야 한다.

- 조정기 분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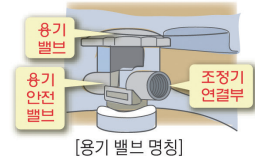
- ① 용기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근다.
- ② 조정기 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분리한다.

▶ 주의사항 : 조정기 분리과정 중 가스가 누출 되는 경우 용기밸브 불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기를 재결합 후 가스공급자를 통해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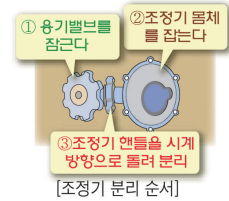
- 조정기 연결방법

- ① 조정기 핸들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결합 한다.
- ② 용기밸브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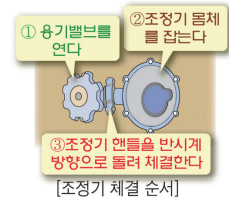
▶ 주의사항 : 용기밸브를 열었을 때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용기밸브를 다시 잠근 후 조정기 결합상태를 재확인 후 용기밸브를 연다. 계속해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용기밸브를 잠근 후 가스공급자를 통해 교체



[용기 밸브 명칭]



[조정기 분리 순서]



[조정기 체결 순서]

05 비행장비(드론, 열기구 등) 위험 관리

◎ 위험요인

- ☑ 축제에서 드론, 열기구 등 상공 운항 장비의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돌풍, 강우, 번개 등), 내/외부 원인으로 인한 **기기 고장**, **운전 미숙** 등으로 장비의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 장비가 추락할 경우 탑승 중인 사람 뿐만 아니라 지상의 사물·사람과 충돌하여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대상축제

- ☑ 드론쇼, 열기구 체험 축제, 경비행기 체험 축제, 애드벌룬 사용 축제 등

◎ 관리요령

- ☑ **장비 사용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장비운영 상황관리 조직도**를 작성하고 장비 총책임자, 조종자, 지상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해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유사 시 신속히 대응
 -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현장에 경찰, 소방 등을 배치**하고 유사 시 즉각 대응
- ☑ **기기 내부 결함이나 작동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 전 기기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조종자의 **교육 이수 및 운항 경력 등을 검토**하여 숙련자가 운항하도록 한다.

☑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도 비행 장비 운행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기상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

- 비행장비 이용 축제는 특히 바람에 의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수시로 풍속과 풍랑 확인** 필요
- 축제 계획 수립 시 장비 운항은 악천후의 가능성이 낮은 날에 기획하되, 운항 전까지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 **사전에 수립한 기준에 따라 운항 취소·중단·연기 검토**
- 관람객에게 **기상 악화에 따른 취소의 가능성**을 사전 공지하고 대체 행사를 마련하여 원활한 축제 진행 준비

사고사례



○○도 관광 열기구 운항 중 돌풍이 발생하여 열기구 조종기능 상실, 불시착하여 탑승객이 튕겨져 나갔고,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탑승객 11명이 부상하는 사고 발생 (*18.4.)

- ▶ 열기구 운항 시에는 기상 여건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유사 시를 대비하여 관람객 전원 낙하산 가방 착용, 바닥에 안전매트 설치 등의 조치 검토 필요

☑ 장비가 **운항 중인 상공에는 어떠한 물체도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언론 홍보 등을 진행한다.

- 축제장 내 **시설물**(예: 고층탑, 고압전선 등)과 **장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운항 동선 설계
- 축제 진행 순서 상 폭죽 발사, 연날리기 등 **공중에 영향을 미치는 부대행사**가 장비의 운항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간섭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축제 계획 수립

사고사례

사례 1

○○광역시 세계도시축전 중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70m상공을 비행하던 경비행기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나래연 연줄에 걸려 추락, 현장에 있던 전사용 2층 버스에 떨어지며 부조종사가 사망, 조종사가 크게 다치는 사고 발생 (*09.9.)

- ▶ 경비행기가 운항 중인 행사장 내 상공에 연 100여 개가 날리고 있어서 사고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음.
비행장비가 운항 중인 상공에는 어떠한 물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함

사례 2

○○도 □□군 어린이날 개막식 행사 중 상공에 있던 촬영용 드론 날개에 개막식 축하 폭죽에서 나온 종이 날개가 빨려들어가며 드론이 추락, 행사장에 있던 관람객의 얼굴을 강타한 사고 발생(*19.5.)

- ▶ 드론이 운항 중인 상공에는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물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함



- ☑️ 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유사 시 사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차선적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상공 운항 시 추락 가능성이 있는 지상 구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접근통제, 기기 오류 시 사람이 없는 장소에 추락하도록 **낙하 설계**, 과속추락 방지용 **낙하산 탑재** 등의 차선적 사고예방 대책 검토
 - 드론 추락 상황을 대비하여 날개를 실리콘·고무 등 **말랑한 소재로 제작**하거나 테두리를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하는 방안 검토
 -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장비에 대한 **제3자 배상보험**에 가입 필요성 검토
- ☑️ 드론 운항시에는 「**항공안전법**」상 **운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드론 운영자의 조종 자격, 승인 여부, 승인 조건 등 확인
 - 관람객이 드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축제장 상공에 동시 운항할 수 있는 드론의 개수에 제한을 두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여 기기 간의 충돌 방지
- ☑️ **에드벌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헬륨가스를 사용하여 충전**해야 하며, 충전 완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에드벌론이 가스부족, 강풍 등으로 인해 인근 시설물에 접촉하거나 일반인이 만질 수 있는 곳에 **불시착하지 않도록 설치**
 - 에드벌론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대상 여부 관할 지자체에 검토 요청
- ☑️ **체험용 열기구**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자유 비행보다 **안전한 체험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지면에 받침대로 열기구를 고정하여 자유 비행 없이 **상승과 하강만 반복하는 계류 운항 방식**
 - 열기구 고장 등 유사 시 탑승객이 개별적으로 뛰어 내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탑승객 전원 낙하산 가방 착용, 바닥에 소방용 공기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대책 모색**

문경 찻사발 축제사고

값싼 수소가스 쓰다 풍선 폭발.. 2명 화상

지난 5일 오후 5시쯤 발생한 풍선 폭발사고는 도자기박물관 인근 하천 위에 떠 있던 풍선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자 관광객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주최측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현장에 있었던 자원봉사자 A씨는 “풍선을 묶어 놓은 끈을 당겨 밑으로 내린 후 가스를 빼기위해 풍선을 누르던 중 폭발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가스 제거작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2명이 얼굴과 가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풍선에 수소가스를 사용한 사실을 업체로부터 확인하고, 설치 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관련법상 헬륨가스를 주입해야 하지만 부양력이 떨어져 수소가스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소가스의 경우 헬륨에 비해 가격이 싼데다 부양력이 좋아 풍선 제작업체 사이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요약).

- 매일신문(2008. 05. 07) -

06 무대시설 위험 관리

◎ 위험요인

- ☑ 야외 축제에서 가설 무대를 설치하여 축제를 개최할 때
- ☑ 악천후, 무대 위 공연자 및 공연 장비에 의한 하중, 설계 및 건축상의 문제 등으로 무대가 붕괴되거나 전도될 경우 인명피해 우려가 있음

◎ 대상축제

- ☑ 야외에서 가설 무대를 설치하여 개최하는 모든 축제

◎ 관리요령

- ☑ 높이가 6m 이상이거나 수상 및 연약 지반에 설치하는 무대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전 구조검토서, 설치 후 안전확인서**(무대가 검토된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를 확보하여 무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구조검토는 건축구조 기술사 또는 토목구조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 등이 진행하고, 안전확인인은 구조기술사 등이 실시
 - 구조검토는 건축구조기준, 가시설 설계기준 등 규정에 따라 실시
 - 그 밖의 무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을 통해 구조검토와 안전확인 이행 여부 결정
 - ※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사전에 계약 체결 시 구조검토 및 안전확인을 조건으로 진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 무대 등 시설물이 **공작물 축조 신고·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 적법하게 설치한다.
- ☑ 부실 시공으로 무대가 붕괴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 시 무대 구조물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 화면, 조명탑, 스피커탑 등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를 한다.

-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무대 뒤편에 보강 구조물을 충분히 설치**하고, 필요 시 **와이어나 웨이트로 고정**하여 무게 중심을 뒤로 보냄
- 잔디밭, 모래밭 등 연약지반에 무대를 설치할 때 수평 유지를 위해 구조물의 **수직재 하단부마다 주각판 설치**
- 스피커탑, 조명탑 등 좁고 높은 탑 형태의 구조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보조 자재를 사방으로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
- 강풍, 돌풍, 호우 발생 등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도방지 조치

☑ 무대 뒤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하며, 조명탑 등에도 안전띠와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한다.

☑ 전도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무대와 인접한 장소에는 몽골텐트 등 무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사고사례

사례 1

○○도 □□시 △△△축제 개최 시 우수 농산물 경매장에서 대형 전광판(10m×1.8m)이 바람에 의해 전도되는 사고로 부상자 14명 발생('09.4.)

사례 2

○○도 □□시 △△△페스티벌 개최 시 야외 무대의 조명탑이 붕괴하는 사고 발생('11.10.)

사례 3

○○도 □□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 콘서트 무대 설치 중 3~4층 높이였던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작업자 8명이 깔려 부상(중상 2명, 경상 6명)당하는 사고 발생. 이 날은 강한 비바람이 부는 날이었으며, 순간 최대풍속 7.8m/s(15:30기준), 강우량 27mm(17:30기준)이었음. 이 사고로 콘서트 개최는 취소됨. ('23.9.)



07 야간 축제 위험 관리

◎ 위험요인

- ☑ 야간에 진행되는 축제는 빛, 불, 소리, 거리행진 등이 많이 진행되고, 축제의 재미를 높이려고 전야제 축제를 진행하던 중 낙마사고, 폭발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축제 계획 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 대상축제

- ☑ 빛 축제, 불꽃축제, 유등축제, 별빛축제, 야간벚꽃 축제, 맥주 축제, 해맞이 등



사고사례

사례 1

○○시의 야간 역사 태우기 축제행사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관람객 사고 발생(2009년, 7명 사망, 81명 부상)

사례 2

○○군의 축제 중 야간 거리행진 중 불꽃축제 소리에 놀란 말이 날뛰다 기수가 낙마하는 사고 발생(2009년, 1명 사망)

사례 3

○○군에서 야간전야제 행사로 봉화대 재현행사 중 폭발사고 발생(2009년, 2명 부상)



◎ 관리요령

- ☑ 야간 축제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발생 시 관람객의 대피가 지연될 수 있고 이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축제 계획 시 **충분한 대피 공간 및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주간 축제시보다 **조명**을 더 많이 확보하여 축제 개최자와 참여자들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
 - 야광 팔찌 배부 등 안전관리요원들이 **참여자들의 위치 및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 야간 마라톤을 포함하는 축제의 경우 사전에 참여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식을 배부하는 등 **유사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 야외나 산악지역에서 불, 빛 등을 이용하는 축제의 경우 돌풍,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축제 계획 시 대피 공간 및 대피로 확보**
 - 축제 개최자는 지자체, 경찰, 소방, 민간전문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실무회의 등을 거쳐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 야간축제의 경우 행사가 마무리되면 동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무단횡단, 교통량 증가 등 혼잡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등 안전관리자는 주변 교통정리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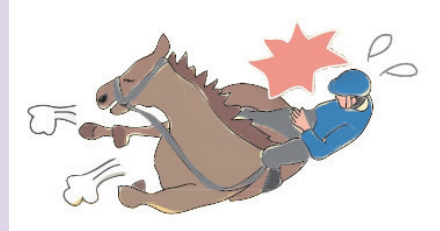
- ☑ 행사장 내 **야시장·노점상**의 난립은 대규모 관람객의 이동 동선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므로 관람객의 주 동선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등 사전지도·단속대책을 마련한다.
 - 지역특산물 판매장, 야시장과 노점상은 설치 장소를 별도 계획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 야간에 이루어지는 거리행진, 불꽃놀이 등의 축제는 화재사고, 폭발사고, 낙마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행사주최자는 별도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 야간 행사를 위하여 지역축제장 내 자가 발전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009 여수 거북선축제 낙마 사고!

여수 거북선축제에서 변을 당한 60대 기수는 말이 인도에 있던 관람객을 덮치려 하자 말의 진행 방향을 힘겹게 바꾸면서 자신을 희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숙연케 하고 있다. 여수 거북선 축제에서 낙마 사고로 숨진



기수 최모씨(61)의 ‘살신성인’ 정신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거북선 축제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씨(○○도 □□시)는 기수 최씨가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놀란 말이 인도 쪽으로 갔으면 거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오히려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져 많이 다쳤을 것이다”며 “그 분이 오른쪽으로 채찍을 잡아 당기지 않고 그냥 말이 달린쪽으로 놔 뒀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최씨가 탄 말이 서너 차례의 폭죽 소리에 놀라 인도로 돌진하려 하자 최씨가 관람객을 피해 말의 방향을 급격히 바꾸면서 다른 말과 부딪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말들은 기수가 최씨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애초 말의 진행 방향대로 달렸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와 함께 “방향을 바꾼 최씨의 말편자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불꽃을 폭죽으로 착각할 만큼 빠른 속도로 30m 가량을 달리다가 최씨가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기수 최씨의 발 빠른 대처로 지난 3일 저녁 7시 45분쯤 여수경찰서 앞에서 거북선 축제를 지켜보던 300여 명의 관람객은 화를 면했다.

- 노컷뉴스(2009. 5. 12) -

08 그 밖의 위험 관리

◎ 지진에 따른 조치

- ✓ 축제 개최 시 소방서에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관 배치 등을 요청하고, 축제 개최자는 축제 기간 중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물 전도방지, 관람객 동선확보, 지진대피소 사전 지정 운영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 ✓ 축제 중 지진이 발생하면 축제를 즉시 중단하고, 관람객을 지진대피소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지진 발생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개최 중인 축제의 경우에도 축제 중단을 즉시 검토
 - 향후 여진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개 여부 신중 결정

◎ 폭발물 설치 등

- ✓ 축제장에 폭발물 등 위험물질을 설치하였다는 협박글이 모니터링 되는 경우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를 중단,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귀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다.
- ✓ 군·경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 축제장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축제를 재개한다.

◎ 경기 등 체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축제

- ✓ 자전거 대회·산악 등반 대회·마라톤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기 등 체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축제**의 경우, 경기 구간에 안전관리요원을 촘촘히 배치한다.
 -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축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구급 요원, 구급차 등을 확대 배치, 예찰 강화
 - 행사장 안전요원은 참가자들의 동향을 주의깊게 살피고, 안색이 좋지 않은 참가자에게 말을 걸어 건강 상태를 구두로 확인

- ☑ 축제 개최 시 **소방서에 현장 구조·구급 인력 및 구급차 배치를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미배치되는 경우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비상연락망 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 기상 여건이 악화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호우·폭염 등 상황 발생 시 축제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 축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상 여건이 악화되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축제를 중단하고 참가자 귀가 조치
- ☑ 실내 체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축제의 경우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시 참가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한다.
- ☑ 축제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행사 구간을 수시로 순찰하며 참가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사례

사례 1

○○도 □□시 호수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거리 수영대회에서 참가자가 급성 심장마비로 익사하는 사고 발생(*05.8.)

▶ 경기 전 참가자 준비운동 시간 마련, 경기장에 수상안전요원 확대 배치 필요

사례2

○○도 □□시 국제 철인3종 경기에서 참가자(60대, 남성)가 부표에 떠 있는 채로 발견, 심장마비로 익사하는 사고 발생(*24.6.)

▶ 경기 전 참가자 준비운동 시간 마련, 경기장에 수상안전요원 확대 배치 필요

사례3

○○도 □□군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된 자전거 대회 중 참가자 1명이 경기 구간 종점 완주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24.6.)

▶ 체육행사 안전요원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주의깊게 체크해야 함
사고 발생 시 주최자,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공유 및 대응 필요





PART 04

부록

01. 지역축제장 안전사고 사례 연도별 정리
02.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
03. 안전관리계획 심의 착안 사항
0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05.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해설



01 지역축제장 안전사고 사례 연도별 정리

(2004~2023년 12월 현재)

축제명	일시	사고 내용	피해현황
○○의병제전	'04.4.22.	- 운동장내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발생 - 행사장 식사준비 중 국솥을 엎질러 사고 발생	부상 4명 부상 4명
○○호수축제	'04.8.8.	-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수영경기 중 참가자가 급성 심장마비로 익사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강수옥축제	'05.7.30.	-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가 물놀이 중 부주의로 익사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05.10.3.	- 자전거축제의 부대행사 중 MBC가요콘서트 공연행사에 관람객이 일시에 출입문으로 몰리면서 주민이 압사사고 발생	사망 11명 부상 162명 재산 138백만
○○동장근축제	'06.1.	- 눈썰매를 타다가 앞에 정지되어 있는 아이와 부딪혀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발생	부상 1명
○○방어축제	'06.11.25.	- 축제기간 중에 정원을 초과한 소형어선을 타고 낚시체험 중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 발생	사망 5명
○○전통달집놀이	'07.3.4.	- 행사장내 순간적인 돌풍(초속25m)으로 텐트 전복 사고 발생	부상 4명
빛고을 ○○빛 엑스포	'07.4.27.	- 행사개막식 불꽃놀이 중 폭죽이 이동식 화장실 및 발전기 주변에 누출된 기름에 인화되어 조형물 및 차량이 연소되는 사고 발생	재산 49백만 (발전기, 간이화장실, 차량 7대 전소)
이순신장군축제	'07.4.30.	- 행사장내 야시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폭발 사고 발생	부상 12명
○○황강 레포츠축제	'07.7.27.	- 어린이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물놀이 중 익사 사고 발생	사망 1명
○○인삼축제	'07.9.10.	- 축제 행사 중 활쏘기 대회에서 경기보조원이 화살에 머리를 맞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군향제	'08.4.1.	- 행사장에서 폭죽소리에 놀란 꽃마차의 말이 날뛰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고 발생	부상 2명
○○찾사발축제	'08.5.5.	- 홍보용 대형풍선에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부상 2명 재산 1.35백만
○○자동차 마니아페스티벌	'08.5.23.	- 축제 퍼레이드 중 묘기를 부리던 오토바이가 도로를 탈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08.9.30.	- 버스가 공연장으로 이동 중 관람객이 차도로 횡단하는 것을 버스가 발견하고 급정거 하다 탑승자 안전사고 발생	부상 1명
○○소방방재 장비엑스포	'08.10.15.	- 화재 대피용 완강기 하강 시연 중 보조 연결고리가 끊어져 추락사고 발생	사망 1명
○○문화축제 지상군페스티벌	'08.10.19.	- 병영체험장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이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축제명	일시	사고 내용	피해현황
○○반시축제	'08.10.24.	- 전통문화 체험장에서 여성이 널뛰기를 하다가 발을 헛디뎈 사고 발생	부상 1명
○○국화축제	'08.11.1.	- 행사장내 중앙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축구 중 사고 발생	부상 1명
○○송어축제	'09.1.23.	- ○○송어축제장 내 "뉴스판매·셀매대여용" 조립식 판넬 건물(약100㎡)에 전기합선 추정 화재사고 발생	재산 25백만
○○화왕산 역새태우기	'09.2.9.	- 역새태우기 행사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미처 피하지 못한 관람객을 덮쳐 안전사고 발생	사망 7명 부상 81명 재산 90백만
○○○축제	'09.4.	- 우수농산물 경매장에서 행사 중 대형 전광판이(10m × 1.8m) 전도되는 사고 발생	부상 14명
○○거북산· 국제범선축제	'09.5.2.	- 범선축제 중 요트가 반환점을 돌다가 돛대에 머리를 부딪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09.5.3.	- 봉화대 재현 행사 중 연막탄 폭발사고 발생 - 통제영 길놀이 행사 중 폭죽소리에 놀란 말이 심하게 날뛰어 기수가 낙마하는 사고 발생	부상 2명 사망 1명
세계도시축제	'09.9.27.	-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70m상공을 비행하던 경비행기가 축제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나래연 줄에 추락하는 사고 발생	사망 1명 부상 1명
○○세계불꽃축제	'13.10.5.	- 10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	부상 14명
○○음악불꽃축제	'13.10.12.	- 폭죽제 일부가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날려 관람객의 눈에 들어간 안전사고 발생	부상 23명
○○○해맞이축제	'13.12.31.	- 해맞이 전야제 중 무대부 앞 폭죽이 터지면서 배관 내 가스 잔량에 의한 화재 발생	부상 2명
마두희축제	'14.10.	- 줄다리기 줄이 끈어짐	부상 1명 (타박상 25명)
○○길페스티벌	'15.9.	-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다 가드레일에 부딪힌 사고	사망 1명
○○제	'17.4.2.	- 풍선터트리기 부스에서 어린이가 던진 다트가 풍선을 맞고 튀어나와 눈에 맞아 각막 손상	부상 1명
○○제	'17.4.4.	- 소하천 데크로드 교량에서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난간파손으로 하천 추락	부상 1명
○○과자축제	'17.5.5.	- 드론퍼포먼스 중 드론 기계결함으로 관람객 쪽으로 낙하하여 안전사고 발생	부상 3명
○○철쭉제	'17.5.26.	- 개막식 축포로 인한 산불발생 및 진화 작업 중 돌이 굴러와 머리 부상	부상 1명
○○바강산축제	'17.7.30.	- 블롭점프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뛰어내려 플라이어 착지 시 충격으로 안전사고 발생	부상 1명

축제명	일시	사고 내용	피해현황
○○수영축제	'18.1.	- 수영대회 참가자 심정지	사망 1명
○○물축제	'18.5.	- 수영대회 참가자 심정지	사망 1명
○○상봉제	'18.9.	- 벤치에 부딪쳐 녹골 골절	부상 1명
○○노란꽃잔치	'18.10.	- 주차장 교통사고 발생	부상 5명
○○축제	'19.4.5	- 삼거리에서 수신호 중이던 모범운전자회원이 좌회전 차량과 충돌	부상 1명
○○군 생명축제	'19.5.16.	- 돌풍에 파라솔과 포토존이 넘어져 부상	부상 4명
○○구축제	'19.9.7.	- 개막식 도중 폭죽 불량으로 무대 후면부로 떨어져 대기중이던 댄스팀이 화상을 입음	부상 8명
○○문화축전	'19.10.11.	- 행사장 이동중 옆사람과 부딪쳐 넘어짐	부상 1명
○○읍성축제	'19.10.12.	- 행사장 내 교통통제 중 진입차량에 부딪힘	부상 1명
○○머드축제	'22.8.10.	- 강풍에 넘어진 파라솔에 맞아 부상	부상 2명
○○캠핑 페스티벌	'22.8.27.	- 행사시설물에 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목재 판넬이 아래로 꺼지면서 낙상하여 부상	부상 1명
○○맥주축제	'22.9.2.	- 공연장으로 들어오던 중 메인무대 뒤쪽에서 인파가 몰려 넘어짐	부상 2명
○○한우축제	'22.9.30.	- 축제(개회식) 불꽃놀이 불씨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비닐하우스 2동 및 1톤트럭 1대 전소	부상 4명 재산 162백만원
○○해미 읍성축제	'22.10.8.	- 뛰다가 읍성내 도랑에 발이 빠져 발목을 다침	부상 1명
○○남강 유등축제	'22.10.10.	- 하천 둔치 볼라드를 뺀 자리에 발이 빠져서 찰과상 및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뼈 탈골 부상	부상 2명
○○공룡엑스포	'22.10.12.	- 행사장내 모래놀이터 그물미끄럼틀에서 놀다가 그물쪽으로 내려 가던 중 실족하여 왼쪽 손목 골절 부상	부상 1명
○○하모니축제	'22.10.14.	- 자전거를 타던 중 인도를 가로지른 옐로우자켓(전선 보호 덮개)에 걸려 넘어짐	부상 1명
○○월곶포구 축제	'22.10.22.	- 먹거리 부스를 들어가려다 바닥에 박혀있던 나사가 걸려 넘어짐	부상 1명
○○전국생활 문화축제	'22.10.28.	- 개막식 공연에 참여한 학생이 무대로 입장하던 중 발을 헛디뎈 무대 아래로 추락	부상 1명
○○보물찾기 깜짝축제	'22.10.29.	- 보물찾기 행사 과정에서 방문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위치에 보물찾기 행운권 종이를 하늘로 난발하였고, 순간적으로 종이를 잡기위해 방문객들이 충돌	부상 1명
○○막국수 닭갈비축제	'23.6.13.	- 축제장 불꽃쇼 과정에서 눈꺼풀 위에 불꽃 탄피가 떨어져 눈 부상(안전선 무시)	부상 1명

※ 연도별 지역축제 안전사고 현황('07~'23)

연도	건수	피해현황(명, 백만원)			
		합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만 원)
합계	53	227	19	208	32,735
2007	5	18	2	16	4,900
2008	9	11	3	8	135
2009	7	108	10	98	11,500
2010	-	-	-	-	-
2011	-	-	-	-	-
2012	-	-	-	-	-
2013	3	39	-	39	-
2014	1	1	-	1	-
2015	2	2	2	-	-
2016	-	-	-	-	-
2017	5	7	-	7	-
2018	4	8	2	6	-
2019	5	15	-	15	-
2020	-	-	-	-	-
2021	-	-	-	-	-
2022	11	17	-	17	16,200
2023	1	1	-	1	-

02 안전관리계획서 표준안

2024 ○○축제 안전관리계획(안)

※ 표준안을 참고하되,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가능

I. 축제 운영 계획

1. 축제 개요

- 축 제 명 :
- 기간/장소 :
- 주최/주관 :
- 예상인원 : 총 00명 (전년도 : 총 00명)

- 순간 최대 인원 : 00명 / 동시 최대 수용인원 : 00명

〈최대 수용인원 산출 예시〉

$$\text{동시 최대 수용인원} = \text{축제장 순수점유면적}^1(\text{m}^2) \times \text{면적 당 최대수용인원}^2(\text{인}/\text{m}^2)$$

1) 축제장에서 화단·연못 등을 제외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의 면적

2) 면적 당 최대수용인원(인/㎡) = 보행 시 타인에게 압박을 주지 않는 정도

*축제장 상황의 위험도(병목구간·계단 여부, 골목길 협소도, 경사도, 바닥 평탄성, 미끄러움 등)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판단하여 결정하되, 1㎡당 4인 이하 권고

- 총 예 산 : 000천원 (안전관리비 : 000천원)

〈안전관리비 내역 예시〉

항목	산출내역	사업비(천원)
진행요원	현장 안전(경호경비) 및 진행요원 인건비	60,000
보험비	축제 영업배상보험 가입비	49,170
운영비 및 예비비	현장 운영비, 소품 및 예비비(안전용품포함)	70,000
총계	총 예산 4,106,839천원 중 안전관리비 179,170천원 (4.36%)	

- 축제보험 : ○○보험회사(가입액: 000천원, 보장범위:)

※ (사망·후유장애) 000천원, (부상) 000천원, (음식물) 000천원

2. 축제 내용

○ 프로그램 일정

※ 날짜별, 시간대별, 장소별 전체 프로그램의 제목과 주요 내용을 표 또는 서술형 등 자유롭게 작성

연번	날짜	시간	장소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1					
2					
:					

〈프로그램 일정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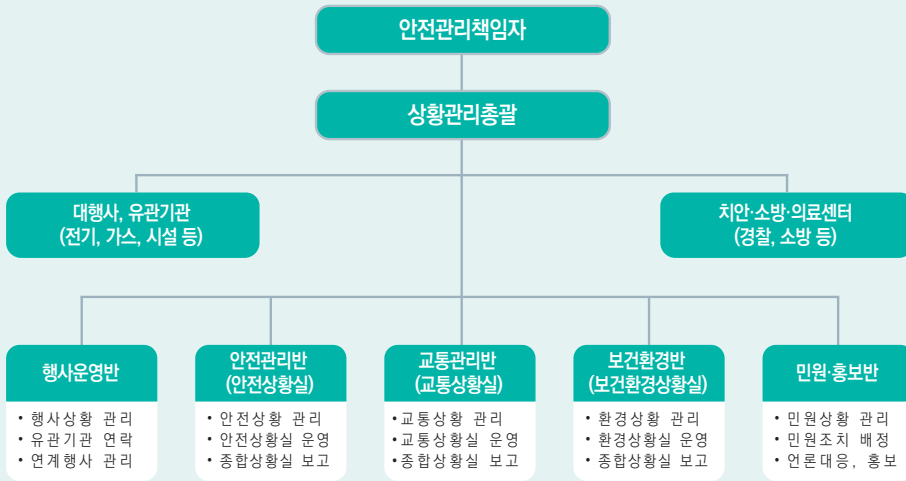
일자	시간	행사명	장소
8. 9.(금) (양촌의 비산)	09:00~14:00	제15회 통영교육지원청장배 전국 거북선 노젓기 대회(학생부)	광도면 죽림만 일대
	16:00~17:30	고유재 봉행	통영 총렬사
	19:00~19:30	삼도수군통제사 행차	통제영 ~ 통영한산대첩광장
	19:30~20:00	삼도수군 군정 재현	통영한산대첩광장
	20:00~21:30	제63회 통영한산대첩축제 개막식 및 특별공연 (아산시립합창단 - 일사즉생 / 개막 축하 불꽃쇼)	통영한산대첩광장
8. 10.(토) (중동의 울림)	09:00~14:00	제15회 통영시장배 전국 거북선 노젓기대회(일반부)	광도면 죽림만 일대
	15:00~17:00	전국 노래자랑 통영면	통영체육관
	17:00~18:00	고양시 교류공연	통영한산대첩광장
	20:00~21:30	통영 현악가왕 트로트 축하공연 (진해성, 박해신 등)	통영한산대첩광장
	21:30~21:50	2024 투나잇 통영 불꽃쇼(주관:한화)	한산대첩광장 앞바다
8. 11.(일) (수군의 합성)	16:00~19:00	제5회 통영청소년 댄스대합(예선)	강구안 해상공연장
	19:30~21:00	해군 군악대 수군수군서트	통영한산대첩광장
	21:00~21:20	플라이보드 워터 미디어쇼	통영 강구안 일대
8. 12.(월) (구국의 바다)	09:00~12:00	승전고를 울려라	삼도수군통제영
	15:00~17:00	두통포 통제영 설치 42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역사홍보관
	17:30~18:30	공돌공돌 청소년유지집 '학의 날개'	통영한산대첩광장
	18:30~20:00	제5회 통영청소년 댄스대합(결선)	통영한산대첩광장
	20:00~21:00	과천시 교류공연	통영한산대첩광장
21:00~21:20	플라이보드 워터 미디어쇼	통영 강구안 일대	
8. 13.(화) (바다의 성, 한반)	10:00~12:00	한산해전 출정식 한산해전 재현	산양읍 삼덕항
	17:30~20:00	블랙이글스 예이스 조선수군 무예 시연 한산해전 재현 승전무 공연 승전축하 불꽃쇼	통영 이순신공원
	20:20~21:20	오늘밤 통한방 EDM파티	통영한산대첩광장
8. 14.(수) (술리의 기쁨)	17:00~22:00	한산대첩승전 축하퍼레이드 통영오광대 / 명랑대합 강강술래 시민거리퍼레이드 시민대동환아당 통영청소년 댄스대합 우승팀 특별공연 승전축하주막	무전대로
8. 9.(금) ~ 8. 14.(수)	09:00~18:00	특별프로그램 이순신의 물의 나라 워터랜드	도남관광단지
	18:00~22:00	특별프로그램 통영 수 · 문 · 장터 MADE IN 통영 12공방 이순신장군 해전 승리 및 병영 체험마당 삼도수군통제영 무과 체험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통영, 고양, 진주)캐릭터 등(의) 전시 승전의 목소리 조선 수군 식량 체험 통영 전통연 아간 조영 전시 한산대첩 주전부리 존 유지시스 버스킹 공연	통영문화아당 일대
사전행사 (대첩의 서막)	5.11.(토)	18:30~19:30	찾아가는 통영한산대첩축제(육지도 편)
	7.13.(토)	19:30~20:30	찾아가는 통영한산대첩축제(사망도 편)
	7.19.(금)	19:00~20:00	찾아가는 통영한산대첩축제(한산도 편)

II. 안전관리 계획

1. 안전관리 조직도

※ 안전관리 조직도 및 종합상황실 운영 계획은 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역할분담 등 내용을 포함하여 축제별 상황에 맞게 작성.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책임자를 체계적으로 구성

〈안전관리조직도 작성 예시〉



관리 구분	책임자 (소속, 직위)	임 무	전화번호
안전관리책임자	유○○(부단체장)	축제 총괄 책임	010-0000-0000
상황관리총괄	박○○(문화예술관광국장)	상황 관리 총괄	010-0000-0000
행사운영반	전○○(관광진흥과장)	공연 및 행사 운영 총괄	010-0000-0000
안전관리반(안전상황실)	박○○(재난관리과장)	축제장 안전관리	010-0000-0000
교통관리반(교통상황실)	김○○(교통정책과장)	차량통제 및 교통상황 관리	010-0000-0000
보건환경관리반(보건환경상황실)	이○○(환경위생과장)	축제장 보건위생·환경관리	010-0000-0000
민원·홍보반	구○○(홍보담당관)	현장 민원관리, 언론대응, 홍보	010-0000-0000
대행사	손○○(○○엔터 대표)	공연 및 행사 준비 총괄	010-0000-0000
치안센터	박○○(생활안전과장)	범죄 등 치안 총괄	010-0000-0000
소방상황실	김○○(대응조사과장)	소방 활동 총괄	010-0000-0000
임시의료소	최○○(보건소장)	환자 응급처치 등 의료활동	010-0000-0000

2.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 안전관리요원 교육

※ 교육 일시, 주관, 장소, 교육내용, 현장사진, 서명부(별첨) 등 작성

□ 안전관리요원 배치

○ 배치도

〈배치도 작성 예시1〉



〈배치도 작성 예시2〉



○ 배치계획

〈배치계획 작성 예시〉

연번	위치	투입인원						책임자 (소속, 전화번호)	임무	재난 안전 통신망 소지
		계	공무원	경찰	소방	모범 운전 자회	응역 업체			
1	종합상황실	15	7	4	4			김OO (010-0000-0000)	행사총괄	o
2	주차장	33	33					김OO (010-0000-0000)	주차장 관리	o
3	버스 승하차장 (주차장 6개소)	18	18					전OO (010-0000-0000)	행사관리, 안전관리	o
4	행사장주변 교통통제	32	10			10	12	박OO (010-0000-0000)	교통관리	o
5	셔틀버스 노선	29	29					박OO (010-0000-0000)	교통관리	o
6	행사장 주변 79호선	4		4				오OO (010-0000-0000)	교통관리	o
7	관람구역 (연못)일원	54	22		21		11	최OO (010-0000-0000)	인파관리 및 안전관리	o
8	행사장 주변 진출입로 안전관리	29	19	10				정OO (010-0000-0000)	인파관리 및 안전관리	o
9	연못(관람구역) 주변 통제	24	15				9	김OO (010-0000-0000)	인파관리 및 안전관리	o
10	푸드트럭	1	1					최OO (010-0000-0000)	안전관리	o
11	체험부스	1	1					신OO (010-0000-0000)	안전관리	o
12	공연장	1	1					윤OO (010-0000-0000)	안전관리	o
계	12개소	241	156	18	25	10	32			

○ 유사 시 안전요원 재배치 및 역할 변동사항

※ 그 밖의 안전요원 복장, 안전장비, 구역별 업무분장 상세 등 추가사항 자유롭게 작성, 날짜별/요일별로 배치가 변경되는 경우 알아볼 수 있도록 반영하여 작성



3. 인파관리 대책

□ 관람객 동선 계획

※ 인파밀집상황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작성. 입장·퇴장 방법, 동선도, 보행유도시설 설치(안전펜스, 안전띠 등) 보행방법(우측통행, 일방통행로 조성 등) 포함

□ 인파밀집상황 관리대책

※ 인파밀집상황 발생 시 인파해산 대책 작성. 입·퇴장시, 행사 시작·종료 시, 이벤트 개최시 등 밀집이 예측되는 상황 및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한 대책 마련

□ 수용인원 초과 시 대책

※ 입장제한, 대기장소 마련, 혼잡상황 안내방법 등 수용인원 초과 시 차선적 대처 방안 작성

4. 교통·통신 대책

□ 교통대책

※ 도로통제, 주차장 마련, 대중교통 운행 변경 등 포함

□ 통신대책

※ 이동식 기지국 배치 등

5. 상황 별 대처계획

※ 축제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상상황을 검토하여 대처계획 수립

□ 비상상황 일반

- 비상 시 보고 및 대응 체계
- 응급의료지원반(인력, 긴급차량 등) 확보 현황 및 배치도
- ※ 필요 시 응급의료기관 협조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계획
- 긴급차량 이동동선
- 관람객 대피 방안(대피동선, 대피요령, 대피안내·상황안내 방법 등)
- 유사 시 안전요원 재배치 및 역할 변동사항

□ 기상여건 악화

※ 호우, 강풍, 폭설, 폭염, 한파 등 기상 상황 발생 기준 및 대응 방안 상세히 작성

□ 화재

□ 테러·범죄·폭발

□ 야간행사 안전대책

□ 정전·전기사고

□ 그 밖의 비상상황



6. 개별적 안전관리 계획

※ 공연이나 체육행사를 포함한 축제 개최 시, 위험한 장소(산, 수면 등)에서 개최 시, 위험한 재료(불꽃, 드론, 얼음, 놀이시설 등) 활용 시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축제 개최 시 별도 안전관리대책 수립

7. 기타 안전관리 계획

- 불법 노점상 단속 방안
- 식품위생 관리
- 재난취약계층 관리
- 공연 등 출연자 안전관리
- 각종 인·허가 필요사항 목록

※ 증빙서류 별첨

8.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관할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및 임무 작성(본부장: 지자체장)

03 안전관리계획 심의 착안 사항

1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 축제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여부
- 대지상태 및 행사장 위치 적정성
- 예상인원 수용 여부
- 행사장 주변 소음, 교통 등 피해 대처 방안 등

2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

- 단체별·부서별 업무 분장,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임무부여의 구체성
- 안전관리 요원의 임무부여,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

3 안전관리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 관람객 일시 운집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 시 대피계획의 적정성
- 비상 응급조치 시스템의 구체성
- 사고발생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체계 등

4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 보험 가입 등 안전확보 대책
- 안전관리 운영 계획 및 근무요령 매뉴얼 수립 여부
- 관람객 동선 및 무대주변 안전 가이드라인 설정 여부 등

5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대처 계획

- 임시가설무대 전기차단, 관람객 난동·폭동 등에 대한 대처계획 수립 여부

※ 감염병, 재난, 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특별히 주의하여 작성, 심의 단계에서 철저히 점검

0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서류 점검 시(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점검내용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기입)
1 안전관리계획 심의 검토	구비서류	보완 필요사항
1. 사전의견청취 : 계획 수립 전 축제 개최자는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련기관 의견을 사전 청취 하였는가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3항	사전의견청취 증빙서류 (공문, 회의자료, 의견서등)	
2. 축제부서 검토 : 심의 의뢰 시 축제담당부서는 「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신고 여부, 「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검토 ※ 공연법 제11조(시행규칙 제6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시행령 제11조의9), 지자체 조례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 / 축제담당부서 검토의견서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	
3. 대면심의 원칙 : 심의 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는 안전관리 계획을 대면심의 원칙을 준수 하였는가	심의의결서	
4. 결과통보 : 심의 후 심의운영부서(재난관리부서)는 관계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였는가 * 축제담당부서, 행사개최자, 지역안전협의회 등	결과통보 증빙서류	
2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상 해당 내용이 수립된 쪽수 기입	보완 필요사항
1.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 조직도, 종합·합동상황실 운영 계획, 역할분담 및 비상연락망 등 수립 검토		
2. 안전요원 : 사전교육 계획(일시, 내용 포함), 배치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안전취약구역 집중배치), 유사 시 재배치 계획, 재난안전통신망(PS-LTE) 배치 상황, 경찰·소방과 공유 확인		
3. 인파대책		
- 축제장 수용가능인원 산정		
- 관람객 동선 계획 (우측보행 일방통행 유도, 동선안내 및 홍보)		
- 순간 인파밀집 관리대책 (출입구, 공연 시작 종료 시 등)		
-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입장제한, 대기 후 순차 입장, 대기장소 마련 등 인파분산 대책, 혼잡상황 안내 등)		
- 유사 관람객* 대피 및 분산 대책 * 축제 참여자가 아니나 축제장 근처에서 축제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점검내용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기입)
4. 교통·통신 대책 : 도로통제, 주차장, 대중교통, 통신장애 대책 등(필요 시)		
5. 비상시 대처계획		
- 비상보고체계		
- 응급의료자원반(소방·구급인력, 긴급차량 등) 확보 현황 및 배치도		
- 긴급차량 이동동선		
- 관람객 대피방안(동선, 요령, 안내방법)		
6. 상황별 대처계획 : 기상여건, 화재, 테러·폭발 범죄, 야간행사, 전기사고 등 유사시 유형별 대응기준 및 대처요령 수립		
7. 개별적 안전관리 계획 : 산·수면 개최 시, 무대·불꽃·드론·얼음 놀이시설 등 주의가 필요한 재료 활용 시, 공연·체육행사를 포함한 축제 개최 시 등 위험도가 높은 축제 개최 시 개별적 안전관리대책 수립		
8.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식품 위생 관리 대책 수립 여부		
9. 재난취약계층* 및 행사 출연자 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검토 *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10. 대규모 피해 대비 지대본 가동 계획 수립		
3 각종 인·허가 취득, 축제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확보 여부 검토	구비서류	보완 필요사항
1. 전기설비 설치 시		
- 사용전검사/사용전점검 여부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제12조(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사용전검사 확인증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사용전점검 확인증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여부 확인 ※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 제44조(시행규칙 제49조, 제71조)	가스완성검사 증명서 / 완성검사 합격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 가스 공급자 1개 업소 선정, 축제 기간 중 상주		
3. 유원시설(놀이기구) 설치 시 안전성 검사 및 허가/신고 취득 ※ 관광진흥법 제5조, 제33조	유원시설업 허가증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증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4. 가설건축물 설치 시 축조신고 확인 ※ 건축법 제20조(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점검내용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기입)
5. 높이 4m이상의 공작물 설치 시 축조신고 확인 ※ 건축법 제83조(시행규칙 제41조)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6. 식품판매부스 운영 시 음식점 영업신고 확인 ※ 식품위생법 제37조(시행규칙 제42조)	식품영업신고증 시행규칙 [별지 제38/39호]	
7. 도로, 하천, 공원 등 각종 점용 허가 취득 확인 ※ 도로법 제61조(시행령 제54조), 하천법 제33조, 공원녹지법 제24조, 제38조(시행령 제20조, 제41조)	각종 점용 허가증	
8. 불꽃축제 등 화약류 사용 허가 취득 확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18조(시행규칙 제29조)	화약류 사용 허가증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9. 축제보험 가입 (사망 1.5억원 이상, 부상 3천만원 이상 가입 권고) ※ 축제보험은 재해상해 등은 보장하나 식중독은 제외됨. 먹거리 부스 운영 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보장방안 검토	보험가입증서	
10. 애드벌룬 설치 시 허가 취득 확인 ※ 옥외광고물법 제3조(시행령 제7조)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시행령[별지 제2호]	
11. 안전관리비 를 전체 행사 비용의 1%이상 확보	안전관리비: 원 (총예산: 원)	

■ 현장 점검 시(지역축제 개최 전)

점검내용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기입)
1 축제장 안전관리 일반	점검사항	보완 필요사항
1. 축제 개최 전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 여부 *인 허가 부서, 경찰(관할 경찰서), 소방(관할 소방서), 전력(한국전력), 전기(전기안전공사), 가스(가스안전공사), 시설(지지체, 국토안전관리원 등)		
2.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연락처 공개 현수막 설치 여부		
3. 안내데스크, 안내방송 설비 적정성		
4.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여부 *무대, 조명탑, 환풍구, 위험물질 보관구역, 보행위험구역 등에 안전선(Safety Line),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접근 통제		
5. 안전관리계획서* 현장에 구현 여부, 현장작동성 확인 *안전요원배치 및 역할수행, 인파대책, 교통대책, 비상시대책 등 - 계획서대로 이행 시 축제 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될 것인지 확인		
6. 심의 조건, 심의 시 보완요청사항 현장 이행확인		
7. 무대와 객석, 객석과 객석 간 안전거리 확보, 구획화		

점검내용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기입)
2 전기·전력 분야	점검사항	보완 필요사항
1. 전기안전장치 관리상태 점검		
- 차단기: 누전차단기 설치 상태 및 용량 적정성		
- 분전함: 분전함 설치 적정성(시건장치, 고정장치, 적치물 제거)		
- 접지: 철제외함(배전함, 분전함 등), 철제 무대시설, 콘센트 등 접지 상태 확인		
2. 전선·배선 관리상태 점검		
- 규격전선 사용 여부, 전선피복 손상 여부, 전선 정리 상태 및 노출 여부(바닥 보호캡 설치)		
- 콘센트 고정 상태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위험물질 근처(가스, 화기, 물) 전기 배치 금지		
3. 전력안전 관리상태 점검		
- 전선과 구조물 간 이격거리 확보(고압전선 근처 무대 등 설치 금지)		
- 비상 전력복구체계 구축(정전대비)		
3 가스 분야	점검사항	보완 필요사항
1. 가스안전장치 및 가스누출 관리상태 점검		
- 가스누출 차단기, 가스경보기 설치(권고)		
- 밸브·퓨즈콕 설치 적정성 확인(배관 끝 퓨즈콕 막음조치, 불필요한 퓨즈콕 제거 등)		
2. 가스용기 관리상태 점검		
- 가스보관장소 가연성 물질 제거 및 환기관리(화기 취급 장소와 2m이상 우회하여 옥외에 보관)		
- 가스 용기 전도방지조치, 보호캡(햇빛, 눈, 비 차단용) 설치		
- 축제장 내 빈 가스용기 적치 금지		
- 저장량 100kg 초과 시 가스보관실 별도 설치		



점검내용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기입)
3. 가스배관 관리상태 점검		
- 호스 3m 초과 금지, T형 연결 사용 금지(금속관 사용 의무)		
- 호스, 배관 부식·파손 점검		
4 시설 분야	점검사항	보완 필요사항
1. 계획서 상 설계도와 현장 일치 여부		
2. 무대시설 안전조치 확인		
- 무대, 화면, 조명탑, 스피커탑 등 구조물 전도 방지조치		
- 비계 연결부 손상·부식·조임·체결 상태 확인		
- 구조물 수평 유지, 흔들림 등 안정성 확인		
3. 무대시설 안전조치 확인		
- 부스·천막 설치 안정성 확인(강풍 전도방지 조치, 고정로프 시인성 확보 등)		
- 행사장 주변 기반시설 안전성 확인 *배수시설 덮개, 난간, 계단, 미끄럼방지, 바닥 평탄화, 환풍구, 옹벽·다리·열음조각·눈 무더기 붕괴위험 등		
5 소방 분야	점검사항	보완 필요사항
1. 소화기구		
- 소화기 설치 장소·이격거리 준수(가스사용 업소당 소화기 최소 1개)		
- 소화기 사용연한(10년), 충전압력 적절성, 약제 응고여부 확인		
- 소화기 관리상태 확인(안전핀·호스·노즐 부착상태, 표면 이물질 등)		
- 기름 사용 부스 K급 소화기 비치		
2. 비상 대비		
- 구급차 현장 대기 여부,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점검내용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기입)
- 비상 조명등, 피난 유도등 작동상태 점검		
- 구명환 배치 적정성(로프연결 여부)		
- AED상태(배터리, 유효기간) 점검		
- 비상구 잠금장치 해제, 적치물 제거, 안내표지 부착		
3. 소리장 바닥재 방염처리		
4. 불 사용 설비와 다른 설비(천막 등) 간 이격거리 유지		

■ 지역축제 진행 중(현장 상황관리)

점검내용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기입)
- 여러 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상황실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 간 상호연락(협조)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와 행사 진행 관계자의 정위치 근무 여부 확인		
- 야외임시무대 공연 행사 시 관람객 안전입장 대책 시행 여부(관람객 사전 순차적입장 실시 등)		
- 안전관리 취약지역 설정 및 취약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집중배치 여부 ※ 많은 인원의 분산배치보다 중요		
- 어린이가 많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의 경우 관람객과 차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 이동로에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 여부		
- 유기사설(기구)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무 점검 적정성		

■ 지역축제 종료 후(현장 상황관리)

점검내용	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기입)
- 안전관리요원이 행사장 출구에 집중 배치되어 일시에 관중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 유도 여부		
- 개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축제에 참가한 관계전문가와 지역축제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조치 여부 ※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결과 보고		

05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해설

■ 서류 점검 시(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현장 점검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의 적정성 검토, 각종 인·허가 관련 구비서류 제출

1 안전관리계획 심의 검토

1. 사전의견 청취 : 축제 개최자는 계획수립 전 **관련기관**(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의견을 사전 청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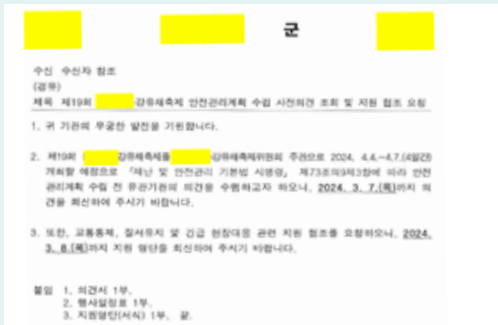
◎ (상세내용) 의견 청취는 **의견제출 요청, 축제 준비 회의 참석 요청** 등의 방법으로 진행

◎ (관련법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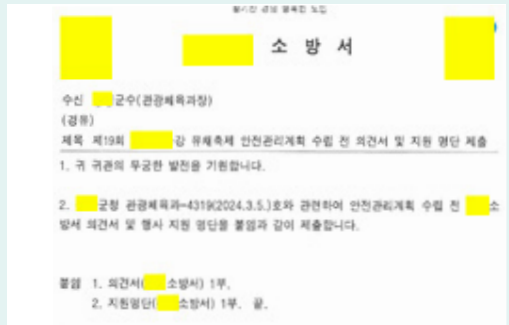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③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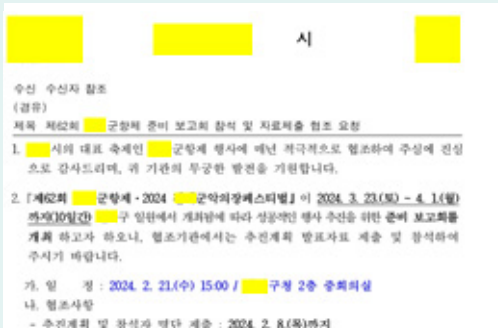
◎ (점검 시 구비서류) **사전의견청취 증빙서류**(공문, 회의자료, 의견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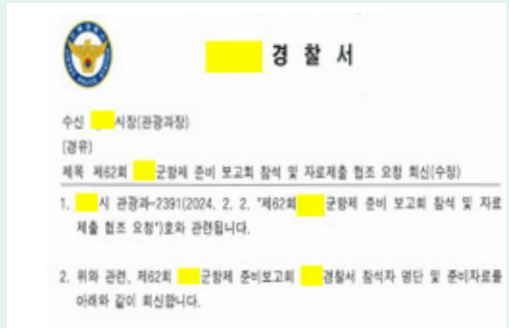
< 의견제출 요청 예시 >



< 의견제출 회신 예시 >



< 축제 준비 보고회 참석 요청 예시 >



< 보고회 참석 및 자료제출 회신 예시 >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3. 11. 1.>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 신고 [] 공연 변경신고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3일
------	-----	----------	----

① 공연장운영자작성사항	③ 대표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④ 공연장	명칭		종류 및 운영 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업 [] 수탁 [] 양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임차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			개관일			
		시설설치 내역 (※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m ² (평)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m ² (평)		
	무대기계·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m ² (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② 공연 시작 사항	⑤ 주최자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⑥ 공연	제명				공연단 규모 (출연 및 제작인원)		
		공연기간			매표 방법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	무대설치면적	m ² (평) / 설치완료일 :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좌석 추가설치수	개	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					

⑦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공연장-[]공연)의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 신고)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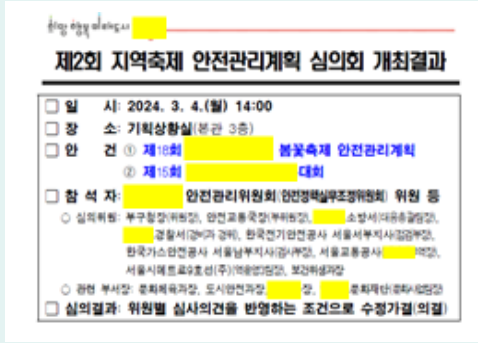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3. 대면심의 원칙: 심의 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협의회는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 (점검 시 구비서류) 위원장 서명, 회의 사진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서



< 심의의결서 제출 예시(대면심의 증빙) >



< 심의의결서 제출 예시(대면심의 증빙) >

2024년 []군 안전관리위원회 의결서					
일시	2024. 3. 19.				
위원	15명(당연직 15명)				
심의안건	○ 2024년 []군 문화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결과	원안 가결				
[]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을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2024. 3. 19. []군 안전관리위원회					
구분	직위	성명	성명	의결	비고
위원장	군수	[]	[]	○	
위원부	군수	[]	[]	○	
위원	경찰서장	[]	[]	○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	[]	[]	○	
위원	소방서장	[]	[]	○	
위원	대대장	[]	[]	-	
위원	태권도3할대사령부	[]	[]	-	
위원	농협중앙회	[]	[]	○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	[]	○	
위원	한국전력	[]	[]	○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	[]	○	
위원	KT	[]	[]	-	
위원	군산문화재단	[]	[]	○	
위원	군산일일동조합	[]	[]	○	
위원	군민안전과장	[]	[]	○	

< 심의의결서 제출 예시(서명부) >

4. 결과통보 : 심의 후 심의운영부서(재난관리부서)는 관계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였는가

*축제담당부서, 행사개최자, 지역안전협의회 위원 등

◎ (점검 시 구비서류) 결과통보 증빙서류

2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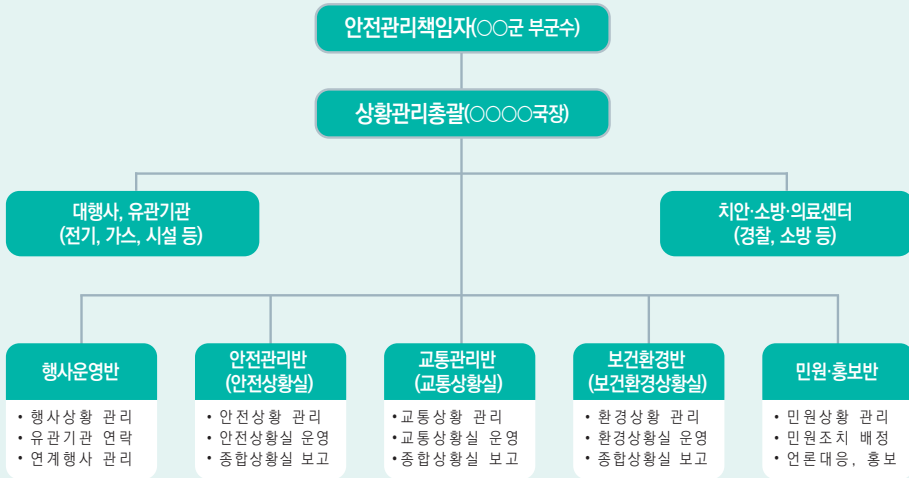
1.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조직도 및 종합합동상황실 운영 계획, 역할분담 및 비상연락망 등 수립 검토

◎ (상세내용) 평시 원활한 축제 안전관리와 유사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마련

- 안전관리 조직도 : 총괄책임자(부단체장 등) 이하 축제 진행파트와 안전관리파트로 나누어 반별 역할 분담

- 각 반별 책임자의 이름, 소속, 직위, 임무, 연락처 명시

◎ (관련법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2항



관리 구분	책임자 (소속, 직위)	임 무	전화번호
안전관리책임자	유○○(부단체장)	축제 총괄 책임	010-0000-0000
상황관리총괄	박○○(문화예술관광국장)	상황 관리 총괄	010-0000-0000
행사운영반	전○○(관광진흥과장)	공연 및 행사 운영 총괄	010-0000-0000
안전관리반(안전상황실)	박○○(재난관리과장)	축제장 안전관리	010-0000-0000
교통관리반(교통상황실)	김○○(교통정책과장)	차량통제 및 교통상황 관리	010-0000-0000
보건환경관리반(보건환경상황실)	이○○(환경위생과장)	축제장 보건위생·환경관리	010-0000-0000
민원·홍보반	구○○(홍보담당관)	현장 민원관리, 언론대응, 홍보	010-0000-0000
대행사	손○○(○○엔터 대표)	공연 및 행사 준비 총괄	010-0000-0000
치안센터	박○○(생활안전과장)	범죄 등 치안 총괄	010-0000-0000
소방상황실	김○○(대응조사과장)	소방 활동 총괄	010-0000-0000
임시의료소	최○○(보건소장)	환자 응급처치 등 의료활동	010-0000-0000

〈 안전관리조직도 작성 예시 〉



구 분	담 당 임 무
상황 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간 중 정보 수집 및 상황관리 • 주요인사 방문 관리 및 보고 •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재난상황 파악, 전달, 처리 및 사전 예방조치 • 각종 여론, 정보 수집, 민원 처리 등 • 행사장 시설 관리 지원 및 축제 지원 근무자 후생 복지 •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 분석, 판단 및 민심 동향, 미담 사례 등 확인
재난 안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행사전 사전 점검
의료·소방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내 의료지원센터 운영 • 응급환자 다수 발생시 의료지원반 확대 운영 • 행사장 소방시설 점검 및 주요 행사별 소방력 배치
교통 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상황실 운영 및 교통종합대책 수립 추진 • 교통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교통통제 구간 지도·단속 •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주차장 및 차량 도색 등)
환경 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 • 주요 공원시설물 관리 • 불법 노점상 계도 및 단속 • 도로 하천-공원 시설물(데크로드, 안전시설물, 가로등 등) 관리
공보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대응 • 상황전파
관광 안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통역 봉사자 운영
자원 봉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으로 행사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원 • 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위생 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업소 가격표시제, 바가지요금 등 관리

〈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작성 예시 〉

2. 안전요원 : 사전교육 여부, 배치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 (상세내용) 배치계획 수립 시 축제장 지도 상 안전요원 배치현황 현출(인원수, 소속, 임무 등)

- 좁은 통로, 출입구 등 안전취약구역에 안전요원 집중배치 검토
- 사전교육 시 안전요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위치에 근무하도록 지시
- 배치계획 및 현황 등 경찰·소방에 공유
- 20인 이상 안전요원 고용 시 직접고용 금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 도급
(「경비업법」제7조의2 제2항)

◎ (관련법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2항, 경비업법 제7조의2

경비업법 제7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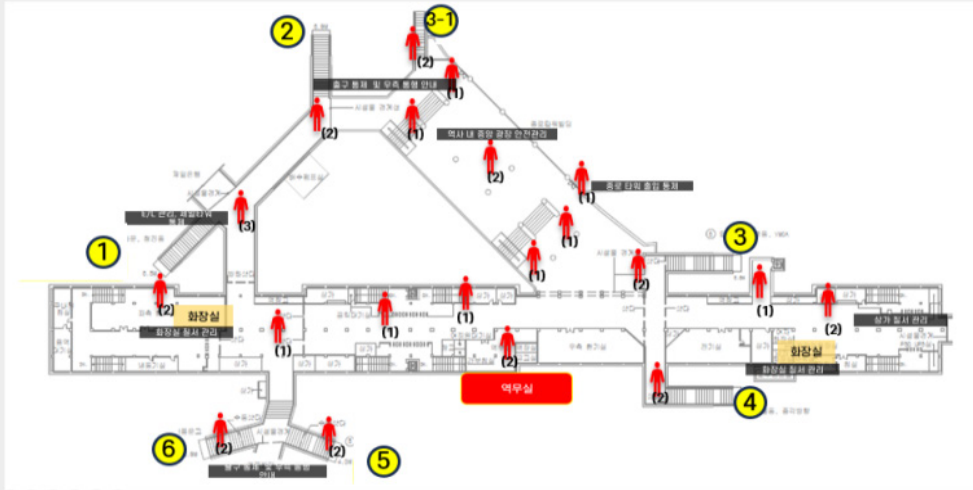
-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 집단민원현장 :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동법 제2조 제5호 바.)

제28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종각역 내부 : 지하 상가 입구, 화장실, 보신각 4번 출입구 등 - 안전관리요원 32명



위 치	인 원	책임자(휴대폰)	안전관리요원 구성	역할
보신각 구역	100	이OO(010-0000-0000)	전문 경호원 및 안전관리요원	인파진입 통제, 우측보행 안내, 위험구역 출입제한 안내, 비상상황관리 등
종로타워 구역	19			
제일은행 구역	34			
영풍문고 구역	36			
종각역 내부	32	이OO(010-0000-0000)		
종로(퍼레이드길)	136	손OO(010-0000-0000)		
세종대로 사거리	98	최OO(010-0000-0000)	OO시 및 OO구 직원	교통정리, 우회로 안내
광화문역 내부	48	박OO(010-0000-0000)		
인근 위험 시설물	71	김OO(010-0000-0000)	교통관리요원	교통정리, 우회로 안내
교통 통제 구간	110			
총	684			

〈 안전요원 배치도 작성 예시 〉



구분	위치	투입인원						책임자 (소속, 전화번호)	분야	임무
		계	공무원	경찰	소방	모범 운전 자회	응역 업체			
1	종합상황실	15	7	4	4			김OO (010-0000-0000)	총괄	행사총괄
2	주차장	53	33	20				김OO (010-0000-0000)	교통	주차장 관리
3	버스 승하차장 (주차장 6개소)	18	18					전OO (010-0000-0000)	교통	행사관리, 안전관리
4	행사장주변 교통통제	32	10			10	12	박OO (010-0000-0000)	교통	교통관리
5	셔틀버스 노선	29	29					박OO (010-0000-0000)	교통	교통관리
6	행사장 주변 인도	4		4				오OO (010-0000-0000)	교통	보행안전관리
7	관람구역 (연못)일원	24	12		11		1	최OO (010-0000-0000)	인파	보행안전관리
8	행사장 주변 진출입로 안전관리	19	9	10				정OO (010-0000-0000)	인파	보행인파관리
9	관람구역 주변 출입로 통제	14	5				9	김OO (010-0000-0000)	인파	보행인파관리
10	푸드트럭	11	8				3	최OO (010-0000-0000)	행사	식품위생 등
10	체험부스	11	8				3	최OO (010-0000-0000)	행사	안전관리
11	공연장	11					11	신OO (010-0000-0000)	행사	관람객안전관리
계	12개소	241	129	48	15	10	39			

〈안전요원 배치 및 임무 작성 예시(1)〉

일시	위 치	투입인원(명)						역 할	비고
		전문 요원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 봉사	진행 요원		
8. 9.(금)	내죽도 공원	6	37	-	2	-		참가자 안전관리 등	
	한산대첩광장(특설무대)	18	45	2	2	10	5	출연진 안전관리, 비상대기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4	3		-	2		Made in 12공방 관리	
	강구안(문화마당)	16	158	2	-	8	5	체험장 안전관리 등	
	후반야/주간 근무자	6	-		-	-			
	소계	50	243	4	4	20	10		331
8. 10.(토)	내죽도 공원	6	50	-	2	-		참가자 안전관리 등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4	-	-	-	10		Made in 12공방 관리	
	한산대첩광장 및 물양장	16	243	8	10	2	10	불꽃쇼 안전관리 등	
	강구안(문화마당)	32	101	2	-	8		체험장 안전관리 등	
	도천동 횃집거리	16	50					안전펜스 통제	
	금성생장	10	45					안전관리 등	
	도남관광단지 일원	10	40					안전관리 등	
	봉평동 연필등대	2	17					안전관리 등	
	후반야/주간 근무자	6	-	-	-	-			
소계	94	546	10	12	20	10		60	
8.11.(일)	한산대첩광장(특설무대)	20	21	2	2	10	5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4	-	-	-	2		Made in 12공방 관리	
	강구안(문화마당)	20	72	2	-	8	5	체험장 안전관리 등	
	후반야/주간 근무자	6	-	-	-	-		행사종료 후 시설 관리 등	
	소계	50	93	4	2	20	10		179
8.12.(월)	한산대첩광장(특설무대)	20	28	2	2	10	5	이용객 안전관리, 동선안내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4	6	-	-	2		Made in 12공방 관리	
	강구안(문화마당)	20	69	2	-	8	5	체험장 안전관리 등	
	후반야/주간 근무자	6	-	-	-	-		행사종료 후 시설 관리 등	
	소계	50	103	4	2	20	10		189
8.13.(화)	한산대첩광장(특설무대)	12	16	2	2	10	5		
	이순신 공원	20	107	10	2	10	5		
	강구안(문화마당)	12	29	-	-			체험장 안전관리 등	
	후반야/주간 근무자	6	-	-	-			행사종료 후 시설 관리 등	
	소계	50	152	12	4	20	10		248
8.14.(수)	무전대로	50	128	10	10	20	10	외곽 차량 진 · 출입 통제 행사장 내 안전관리 등	228
총합계									1,235

< 안전요원 배치 및 임무 작성 예시(2) >

3. 인파대책 : 수용 가능인원 산정 및 초과 시 대책, 동선계획, 순간 인파밀집 관리 대책 등 검토

◎ (상세내용)

- **수용가능인원 산정** : 축제장의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므로 수용가능인원 산정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수용가능인원을 산정
- **관람객 동선 계획** : 관람 동선을 사전에 계획하고 홍보하여 축제 기간 동안 질서 유지, 인파밀집 예상 구간은 **우측보행·일방통행**을 유도하여 동선 정리(중앙분리대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출구가 입구보다 많도록 계획
- **순간 인파밀집 관리대책** : 출입구, 이벤트 부스, 공연 시작·종료 시 등 순간 인파밀집 시 안전요원 재배치, 순차적 입·퇴장, 우회로 마련, 안내방송 등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대책 수립
-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 입장제한, 대기 후 순차입장, 대기장소 마련, 인파분산 대책, 혼잡상황 안내 등에 관한 대책 수립

〈참고1〉 일반적인 축제장의 수용가능인원 산정 예시

$$\text{동시 최대 수용인원} = \text{축제장 순수점유면적}^1(\text{m}^2) \times \text{면적 당 최대수용인원}^2(\text{인}/\text{m}^2)$$

1) 축제장에서 화단·연못 등을 제외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의 면적

2) 면적 당 최대수용인원(인/㎡) = 보행 시 타인에게 압박을 주지 않는 정도

* 축제장 상황의 위험도(병목구간·계단 여부, 골목길 협소도, 경사도, 바닥 평탄성, 미끄러움 등)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판단하여 결정하되, 1㎡당 4인 이하 권고

〈참고2〉 군집밀도(면적 당 인원)에 따른 밀도 상태

구 분	고려 요소
보행로위험요소	- 골목길 협소 정도, 경사 정도, 위험계단, 병목구간 등 - 다중이용 대중교통 보행동선 등
보행위험요소	- 불법건축물, 불법주차, 상품적치, 입간판, 전신주, 바닥 평탄성 불량, 바닥 미끄럼 정도, 시설물 파손 등
교통안전위험요소	- 교통소통 및 주차 관리 인력 유무, 배치 적정성 유무 - 진입로 및 주차장 수용능력, 우회로 유무

〈수용인원 적정성 검토 예시〉

◎ (여의도 불꽃축제) 행사장 내 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검토

- : 행사장 면적* 당 최대 수용인원 = 4인 기준
- * 여의도 183,858㎡/이촌 66,983㎡
- 예상 순간 최대 관람객 : 여의도 750,000명, 이촌 300,000명
- ※ 산출근거 : 2022년 불꽃축제 경찰, 소방 추산
- 최대 수용가능인원 : 여의도 735,432명, 이촌 267,932명

➡ 이촌 수용가능인원 32,068명 초과, 현장 인파 계수 및 입장제한 등 대책마련 필요

구분	행사장 면적	1㎡당 최대 수용인원	최대수용 가능인원
여의도	183,858㎡	4인	735,432명
이촌	66,983㎡	4인	267,932명

◎ (창녕유채축제) 행사장 내 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검토

- : 수용가능 면적* 당 최대수용인원 = 4인 기준
- * 총면적(52,361㎡)- 시설물설치면적(6,981㎡) = 수용가능면적(45,380㎡)
- 예상인원: 100,000명
- 예상 순간 최대 관람객 : 약 4,000명(2024. 4. 5. 19:00 ~ 20:00 개막식)
- 최대 수용가능인원 : 181,520명(1㎡당 4인 기준)

구분	총면적	시설물 설치면적	수용가능 면적 (총면적 - 시설물 면적)	1㎡당 최대 수용인원	최대수용 가능인원
남지체육공원	52,361㎡	6,981㎡	45,380㎡	4인	181,520명

〈수용 가능인원 작성 예시〉

시민 밀집도에 따라 안전통제 게이트를 통한 동선 차단으로 밀집도 완화

1. 시민 진행 방향 중 넓은 진입로를 메인 동선으로 활용(A → D)
2. 주차장 진입 2개 차선을 시민 동선 / 긴급차량 동선으로 분리운영
3. 각 입구 텐트 설치 및 안내 제작용 설치(A~D)
 - 통제텐트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민 우회로 확보 및 혼잡예방
 - 티켓 및 안내 제작용을 통해 17:00 이후 게이트가 폐쇄되어 입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 진행
4. 시민 밀집 지역 안에 조밀함을 이용한 안전관리(E)
 - 원거리에서도 식별 용이 및 시민 밀집 현황 파악 가능
 -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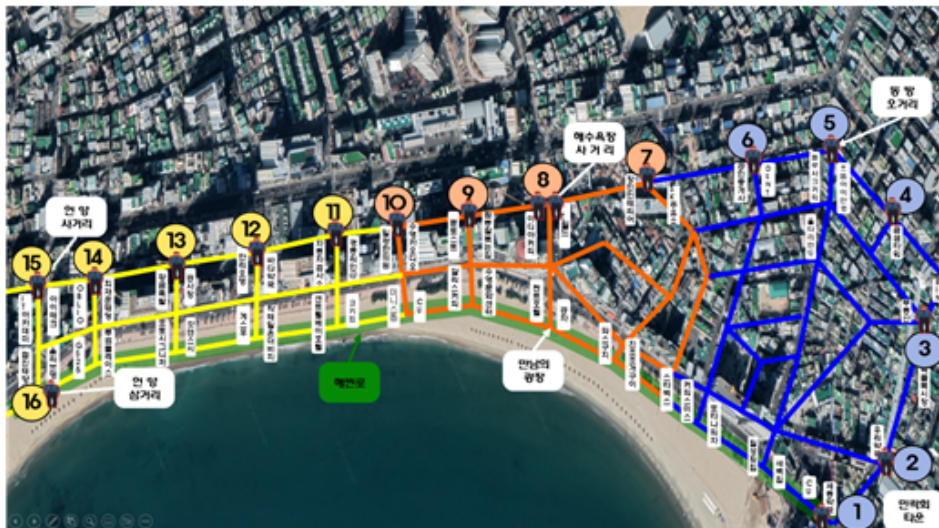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작성 예시(1)〉

□ 수용인원 통제이사 결정 과정

밀집상황 현장확인	회의소집	상황판단·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자 현장확인 - CCTV 모니터링 - 현장상황보고 ▷ 15:00, 16:00, 17:00 18:00 ~ 21:30 : 30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대별 통제단계 결정회의 진행 (필요시 실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황실 근무자 (부산시, 경찰, 소방, 유관기관) 회의 후 종합상황실장 최종 판단

□ 통제단계 판단 기준

단계	주요 조치사항
1단계	(해수욕장, 해변로, 16개동로 동행원환) - 질서유지 및 안내유도 등 기존 계획유지 및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 -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팀장 종합상황실로 비상연락 및 상황전파
2단계	(해수욕장 진입불가, 해변로 및 16개동로 동행불가) - 3번 출입로 중심으로 순차적 진출입로 차단 및 통제 실시 ▷ 종합상황실 통제 결정 시 안전펜스 설치 및 출입로 봉쇄 및 우회출입로 안내 공무원, 경찰, 경호요원 등 각 구역별로 배치된 근무자가 지속적으로 안내 진행 - 16개동로 각 입구에서 지속적인 해수욕장 내 상황 전파
3단계	(해수욕장, 해변로, 16개동로 진입불가) - 16개동로 전체 차단 실시 (안전펜스 이용, 광안리 출입에 대한 원천 봉쇄) - 해운대구, 남구 쪽 외부관람지역에 대한 안내 실시



〈수용한계 초과시 대책 작성 예시(2)〉



〈동선 계획 예시(출구가 입구보다 많음)〉

< 관람객 이동통로 도면 >



〈관람객 퇴장 인파밀집 관리 작성 예시〉

〈행사장 인파 해산 대책 예시〉

- 인파 밀집 시기 : 행사 종료 시 귀가 인파
- 인파 해산 대책 : 단계별 인파 해산 계획 추진
 - 불꽃 발사 中(19:00~20:30) : 집중 관리 구역으로 안전요원 재배치 진행
 - 에프터 파티 공연(20:30~21:30) : 귀가 인파 분산을 위해 B구역 공연 진행
 - 전광판, 방송 및 LED 안내 : 안전한 이동을 위한 방송 및 LED 안내 진행
 - 비계 사다리 및 안전요원 : 주요 밀집구역 비계사다리 설치, 확성기 사용
 - 여의도로 보행로 추가 확보 및 시민 귀가 안내

	시한 밀집도 : 총합단계 (㎡당 6~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시간 - 21:00 ~ 21:30 • 총합 시 구역 상단 입이 실시간 동선 통제 • 불꽃 관람객은 밀집도 100% 이하 시 게이트 개방하여 귀가 조치 • 비상등신 반드시 확보 													
	시한 밀집도 : 주위단계 (㎡당 4~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시간 - 21:30 ~ 22:00 • 상황에 따라 이벤트 광장 진입 동선 폐쇄 • 예상구역 상습정체구역 #1, #2 • 5분 단위 각 구역별 상황 보고 진행 													
	시한 밀집도 : 보통단계 (㎡당 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시간 - 22:00 ~ 23:00 • 동선 밀집 구간 통제 • 5분 단위 각 구역별 상황 보고 진행 													
	시한 밀집도 : 여유단계 (㎡당 0~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시간 - 23:00 ~ • 시인 보행 • 각 주요 구간 별 운영요원 상황 체크 • 5분 단위 각 구역별 상황 보고 진행 													
		<table border="1"> <tr> <td>#1</td> <td>공영-여의도구역 계단</td> <td>귀가 시 관람객이 일시적으로 몰려 정체 예상</td> </tr> <tr> <td>#2</td> <td>계열광장 앞</td> <td>불꽃관람석 -> 이벤트 광장 관람객 귀가 시 메인 동선</td> </tr> <tr> <td>#3</td> <td>여의도배달준</td> <td>불꽃관람석 -> 에프터파티로 이동하는 인원과 귀가하는 인원이 맞물려 병목 발생 시 동선 구분하여 안내</td> </tr> <tr> <td>#4</td> <td>출입게이트</td> <td>샷강역 방면, 63빌딩 앞 -> 여의도 한강공원 진입 동선</td> </tr> </table>	#1	공영-여의도구역 계단	귀가 시 관람객이 일시적으로 몰려 정체 예상	#2	계열광장 앞	불꽃관람석 -> 이벤트 광장 관람객 귀가 시 메인 동선	#3	여의도배달준	불꽃관람석 -> 에프터파티로 이동하는 인원과 귀가하는 인원이 맞물려 병목 발생 시 동선 구분하여 안내	#4	출입게이트	샷강역 방면, 63빌딩 앞 -> 여의도 한강공원 진입 동선
#1	공영-여의도구역 계단	귀가 시 관람객이 일시적으로 몰려 정체 예상												
#2	계열광장 앞	불꽃관람석 -> 이벤트 광장 관람객 귀가 시 메인 동선												
#3	여의도배달준	불꽃관람석 -> 에프터파티로 이동하는 인원과 귀가하는 인원이 맞물려 병목 발생 시 동선 구분하여 안내												
#4	출입게이트	샷강역 방면, 63빌딩 앞 -> 여의도 한강공원 진입 동선												

1. 안전요원 인력 재배치 <p>[운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꽃 행사 진행시(19:00 ~ 20:30) 인파 밀집지역 안전요원 재배치 • 시민 퇴장 동선계획으로 안내 진행 	2. 전광방송 및 LED 안내 <p>[운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종료 이후 인파 분산을 위한 에프터 파티 진행 안내 • 행사 종료 안내 멘트 및 관람객 현이동시 전환이 이동을 요청하는 안내 멘트 진행 • LED 주요 퇴장 동선 안내 	3. 위험구역 비계사다리 설치 및 CCTV 모니터링 <p>[운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사다리(높이 1.5m) 위에서 주요 인파 밀집지역 확성기 및 간외 송출으로 안내 멘트 진행 • 위험구역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진행

〈순간 인파밀집 관리대책 작성 예시〉

4. 교통·통신대책 : 도로통제, 주차장, 대중교통, 통신장애 대책 등

● (상세내용)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도로통제 및 대중교통 증·감차 등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혼잡 방지

- 필요 시 이동식 기지국 배치 등 통신장애 방안 마련

〈교통대책 작성 예시〉

● 도로통제(행사 당일)

- 통제일시 : 2023. 12. 31(일) 15:00 ~ 2024. 1. 1(월) 07:00

- 통제구간 : 보신각~ 세종대로사거리 일대 양방향 전차로 전면통제



- ① 새문안로·종로(새문안교회~종로2가R) ② 청계천로(청계광장~청계2가R)
 ③ 세종대로(KT빌딩~청계광장 교차로) ④ 우정국로(공평사거리~광교사거리)
 ⑤ 무교로(시청뒷길R~무교동사거리)

● 대중교통 운영대책

• (지하철 연장 운행) 12.31.(일) 막차시간 자정(평소 휴일) → 익일 02시까지 연장

- ① 연장대상: 1~9호선(2호선 지선 포함), 우이신설선, 신림선
 ② 연장방법: 10~40분 간격으로 총 175회 추가 운행

• (지하철 무정차 통과)

- ① (종 각 역) 타종 전 방문객 증가 감안, 행사당일 23시~익일 01시 선제적 무정차 통과
 ▶ 무정차 통과 시 홍보매체 활용하여 사전 시민 안내
 ② (광화문역) 세종대로 축하공연 감안, 자정~익일 02시 출입구 통제 및 주변 역 분산 유도
 ▶ 승객 폭주 시 현장 경찰과 협의하여 무정차 통과 실시

• (지하철 역사 관리) 행사장 인근 9개 역사 평시 대비 70명 증원 배치(30명 → 100명)

- ① (대상역사) 종각①, 시청①②, 종로3가①③⑤, 을지로입구②, 광화문⑤, 안국③
 ② (지원내용) 승강장·대합실·게이트 등 역사 내 밀집지역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버 스) 통제구간 임시 우회 및 보신각 경유 노선 심야 연장

* 세종대로 통제는 세종대로R 이후 구간까지 반영

- ① (통제구간 경유 94개 노선) 통제시간에 맞춰 우회 조치
 ▶ 시 종합상황실과 비상연락체계 유지하여 통제 해제 시 정상 운행 전환
 ② (보신각 경유 38개 노선) 마지막 운행차량이 도심지역 정류소에 익일 02시 통과
 ▶ 심야 올빼미버스 14개 노선도 정상 운행(23시~익일 06시)

5. 비상시대처 계획: 비상시 보고체계, 응급의료지원 확보, 긴급차량 이동동선, 관람객 대피방안 마련 등

◎ (상세내용) 사고 대응을 위한 구조·구급 인력과 차량의 비상 통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함.

- 비상 통로는 축제 기간 동안 철저히 통제하여 유사시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이송 전용으로만 사용



〈비상시 대처계획 작성 예시〉



〈6, 9, 12, 14번길 구조·구급용 전용 통로로 상시 폐쇄〉



〈소화·구조·구급용 비상통로 확보 예시〉

해운대 해변로 안전관리 요원 및 비상 대피로(비상상황 발생 시)

1) 출입구별 스태프 4 경호 1 팀이 분리되어 출입이 가능한 공간을 개방하여 대피 안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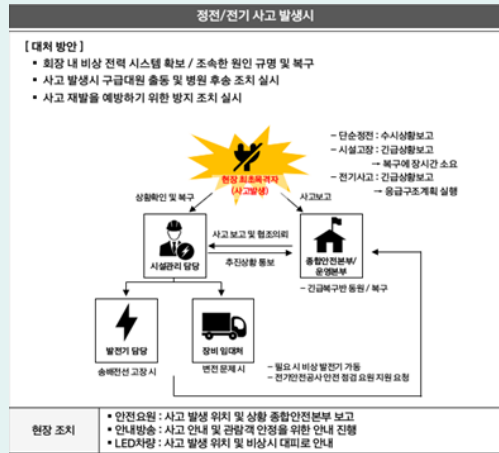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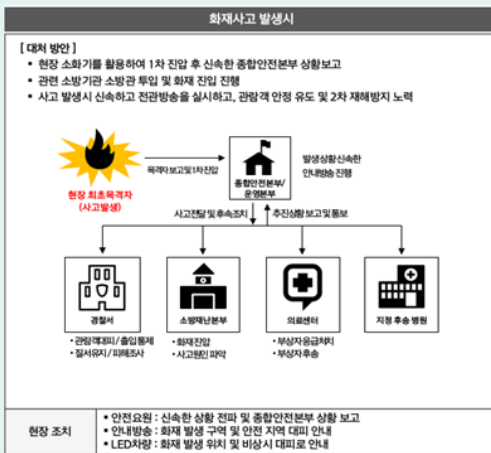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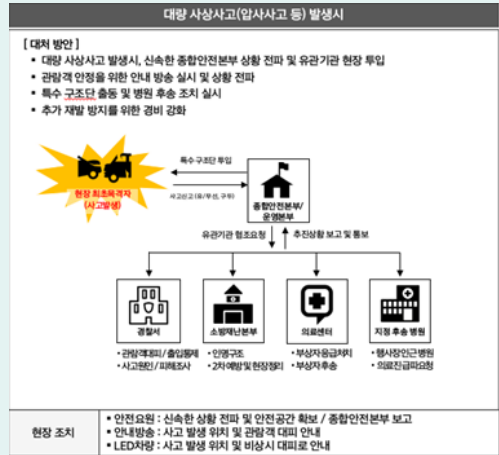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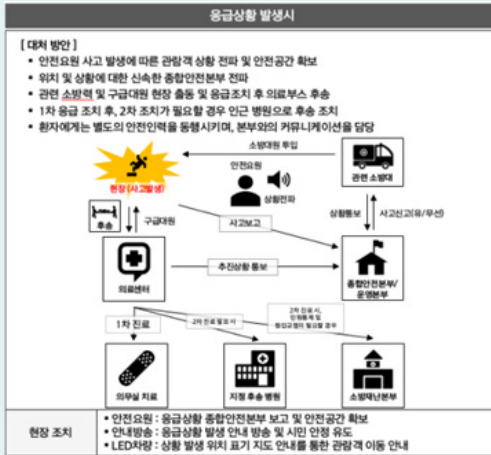


〈관람객 비상대피로 마련 예시〉

6. 상황별 대처계획 및 대처요령 수립 검토

◎ (상세내용) 모든 축제는 사고 상황에 대비한 대책 및 행동 요령을 사전에 계획해야 함.

- 기상악화, 자연재난, 화재, 폭발, 테러, 기타 안전사고 상황에 대한 대책 및 대처요령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에 상황판단 기준과 단계별 대처요령 및 의사결정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축제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예측하여 철저한 대처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상 악화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축제(예: 달집태우기, 불꽃축제, 해맞이, 야외공연 등) 개최 시에는 **돌발적인 기상 변화에 따른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함.



(<사고 유형 별 대처방안 수립 예시 (불꽃축제의 경우 - 압사, 화재, 전기사고 중심으로 작성함)>

〈일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 작성 예시〉

- 사건 발생 및 처리 절차
현장근무자→종합상황실→의료지원반·재난안전반 상황전파, 안내방송
- 응급구조/치료 및 교통통제 등 역할분담
 - 종합상황실 : 상황전파 및 안내방송, 대피유도
 - 보건소 : 의료지원반 운영, 응급차 배치
 - 경찰서 :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등 안전체계 점검
 - 소방서 : 소방 구급반 운영, 소방차, 비상시 구급차 배치
 - 안전요원 등 :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 및 관람객 대피 유도
- 단계별 추진방안

구 분		대응방안
행사전	안전관리 요원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요원은 눈에 잘 띄는 표지나 복장을 착용하여 관람객과 쉽게 구별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신뢰를 가지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쉽게 안전관리요원을 찾을 수 있다. • 관람객이 모이기 전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취약요소에 배치하여 초기에 질서를 확보한다. • 입장은 가능한 천천히 하며 관람객이 절대 뛰지 못하도록 한다.
	관람객 입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간 전에 관람객이 몰릴 경우에는 행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안내 시간보다 조금 앞당겨서 입장시킬 수 있다. • 일정 출입구에 집중적으로 출입하여 혼잡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 출입을 유도한다. • 출입문에 직각으로 군중이 집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심한 추위 나 더위가 예상될 때는 관람객들이 줄 서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탈진 대비) • 필요에 따라 입구에 검색대를 설치하여 행사장 내 위험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 검색은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안전관리요원이 담당한다
	안전시설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경로에 장애물이 없는가, 소방설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가, 비상용 방송시스템은 행사장 전체에 잘 들리는가
행事中	안전관리 요원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을 행사장에 변경 배치한다. • 행사 중 무대 앞에서 서서 관람하는 관중들은 안전라인으로 경계를 확실히 구분해주고 안전관리요원도 적절하게 배치하여 이탈하거나 흥분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현상을 막는다
	행사장 이동통로 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이 이동 통로를 막는 것을 금지한다. • 관람객이 이동식 좌석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한다. • 관람객이 객석 통로에 서거나 앉지 않도록 한다.
	출연자 대기실및 이동동선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들이 출연자 대기실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별도의 출연자 이동로를 확보한다. • 출연자가 별도의 이동로를 통하여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출연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후	안전관리 요원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람객 퇴장을 안내한다. • 관람객의 동선 및 주차장의 차량을 정리한다.
	출연자 이동통로 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요원은 출연자가 안전하게 퇴장할 때까지 이동통로를 확보한다. • 안전관리요원은 출연자를 위하여 주차장 입구의 동선을 미리 확보하고, 신속하게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한다.
	관중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후 관람객들이 퇴장할 때 입장 시 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관람객이 몰리기 때문에 출입구를 점검하여 관람객의 원활한 퇴장을 유도한다. •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용할 출입 동선을 미리 지정하여 안전한 퇴장을 유도한다. • 행사가 끝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 한 다음, 안전관리 요원들은 남아있는 관람객의 퇴장을 유도한다.

〈관람객 안전사고 대책 작성 예시〉

-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	추진방향
1단계 (경상)	행사장 내 진료소/약국 1차 진료 및 응급처치
	관람객 시설, 동선 편중대비 안내요원 사전 확보
	위험장소 발견시 조기개선 등 사전 환경정비 요구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행사장 가입보험사에 연락
2단계 (중상)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및 후송병원에 연락 환자 응급 처치 및 이송 요청
	사고유발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 요청(관련 팀)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행사장 가입보험사 및 담당자 연락

- 각종 안전사고 대응 방안

구분	대응방안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설치, 검사,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 신규 전기설비(수전설비의 용량이 75Kw 미만인 일반용 저압설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 실시 후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모든 스위치는 조작 대상과 기능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 전기시설 담당자는 배선 및 단자함의 부하한계를 숙지하여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 특수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전기장치(예 : 번개, 폭포 등)는 스파크와 화염이 가연성 물질에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배전반 결선 등 위험작업을 할 경우 2인 이상 작업자가 함께 수행한다
안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휴대용 전기 공구나 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연무 효과 장치와 같이 누전차단기를 장비에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배전반을 따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 이동식 발전기는 한국산업표준(KS)을 준수해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장착해야 한다.
감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시설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적절한 절연 조치를 해야 한다.(예 : 조명봉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전구 교체) • 차단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모든 콘센트는 연결된 상태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전도체(지면, 콘크리트, 물에 젖은 목재 등), 금속 물체(자, 테이프, 링과 벨트), 사람의 신체 등은 전기 작업을 할 때 가능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노출된 금속과 접촉하는 작업은 접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예 : 지휘대, 무대, 발판, 그리드, 세트 장치 등). 모든 AC 회로는 접지해야 한다. • 모든 회로 및 전기 장비의 접지 경로는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 금속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구동 장비 및 전기 장비는 접지해야 한다. • 전기기기에 연결되는 모든 배선은 항상 외함을 접지할 수 있도록 접지선이 포함된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전기기기의 외함은 항상 접지시킨다. • 모든 조명기기와 전원 연장케이블의 콘센트와 플러그는 반드시 접지형을 사용하고 접지극을 접지선으로 연결한다.

<각종 사고 상황 시 관람객 안내 방안 작성 예시>

구분		대응 방안
안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이 쉽게 눈에 띄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치와 크기를 결정한다. • 비상구, 대피경로, 소화기 위치, 응급처치시설, 입구, 주차장, 소방차진입로 등을 표시한다. • 위치안내 및 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비상시 관람객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장상황을 알리는 상황판을 비치하여 공연 예상 소요시간 및 협조사항을 알려주고 관중의 질서유지를 유도한다.
안내 방송	행사 시작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시작 전에 관람객에게 안전 관련 안내방송을 하도록 한다. 출구 위치 및 안전관리요원 위치, 비상시 대피요령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내방송 및 전광판 자막을 이용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내한다. • 대피 행동요령, 사고 상황, 이동경로, 대피처 도착 후 행동요령과 같이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방송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 상황이 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안내방송을 계속 내보내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행사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의 출구와 대피로를 안내하여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한다. • 소지품의 확인과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행사장 이동통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이 이동 통로를 막는 것을 금지한다. • 관람객이 의자를 이동시키지 않도록 한다. • 관람객이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기상악화 대책 작성 예시〉

단계		우 천	강 풍	돌발상황 시
Step 1 Blue	상황	시간당 5mm 미만	순간 최대풍속 5% 미만	돌발상황 無
	대응		계획된 일정 정상운영	
Step 2 Yellow	상황	시간당 5mm~7mm	5%~8%	출연진 부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일정 정상 진행 • 출연진 및 야외활동인원 우의 지급 • 각종 전선 방수대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일정 정상 진행 • 낙하 예상 시설 결박 • 와이어 구조물 지상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후 행사장외부로 이송 • 관람객 동요방지를 위한 진행요원 투입 • 응급처량으로 근거리 병원이송
Step 3 Orange	상황	시간당 7mm~10mm	8%~11%	제작물 파손 (시설, 장비, 대소 도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일정 정상 진행 • 출연진 및 야외활동인원 우의 지급 • 각종 전선 방수 대책 시행 • 전기시설 차단기 O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일정 정상 진행 • 낙하 예상 시설 결박 • 와이어 구조물 지상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보수 조치 • 불가시 대체자원 확인 및 조치 • 위원회와 협의하여 취소
Step 4 Red	상황	시간당 10mm 이상	공연3시간전 시간당 11% 이상	시스템 작동 불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일정 조정 • 야외 전기사용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고정 시설물 추가 고정 작업 시행 • 출연진 대소도구 사용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 원인파악 후 보고 • 우발계획에 의거 진행 • 수동으로 전환 운용

<화재 발생 시 대책 작성 예시>



구분		대응 방안
행사 전		<p>□ 시설 별 안전점검 실시 및 보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서 신고, 소방대 출동 의뢰, 관람객 피난 및 대피 유도 소화기 등을 활용한 소화활동 및 연소 방지
		<p>□ 운영본부 및 각 전시시설, 편의시설 등에 소화기 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관 및 영업시설 : 시설 운영자 직접 비치 ※ 소화기 관리 : 각 시설 별 사용 또는 관리 주체
		<p>□ 시설 별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별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계자에 대한 안전 교육 유사 시 조치를 위한 기본 행동 요령 숙달
		<p>□ 시설 별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별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계자에 대한 안전 교육 유사 시 조치를 위한 기본 행동 요령 숙달
화재 발생시	기본절차	<p>□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침착하게 다음 기본절차에 따라 행동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신고및전파 : 119에 화재발생을 신고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다음, 상황을 전파한다. 대피유도 : 관람객이 일시에 출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초기소화 :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관람객이 없는 경우	<p>□ 행사장에서 화재를 인지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차 진입로에 차량이나 장애물이 없는지 점검한다. 119에 신고하고 공연장 내 화재경보를 울린다. 현장 책임자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라 행사장을 빠져나가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 화재가 소규모(0.2㎡ 이하)라면,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 작업을 실시한다. 화재를 신고할 때 화재의 종류(유류화재, 전기화재, 가스화재 등)와 정도를 알리면 소방대가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방대장의 허락 없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p>□ 내부자가 진화할 수 없는 규모의 화재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한다. 화재 장소를 빠져나간다. 행사관계자와 스태프 등을 철수시킨다.
	관람객이 있는 경우	<p>□ 행사장 내 상황을 전파하고 119에 신고한다.</p> <p>□ 현장 책임자(무대감독 또는 운영팀장)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라 대피한다.</p> <p>□ 소방관이 화재경보가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한 경우, 현장 책임자는 관람객에게 이를 알리고 관람객들을 복귀시킨다.</p> <p>□ 행사 중 행사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람객들을 즉시 대피시킨다.</p>

〈의료관리 계획 작성 예시〉

- 의료 비상상황 일반

구분	안전 매뉴얼
<p>관람객 건강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중 관람객의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은 관람객을 객석 바깥으로 옮긴 다음,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가능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한다. • 관람객이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119에 연락하여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하고 행사를 잠시 중단한다. • 운영팀장은 상황을 판단하여 총감독과 상의한 후 공연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 운영팀장은 관람객이나 함께 온 사람을 통해 관람객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알린다. • 구급차가 쉽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 안내자를 배치한다.
<p>부상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응급조치에 앞서 구급차를 먼저 부른다. 구급상자는 경미한 베임, 타박상 등 간단한 상처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한 것이다.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응급조치를 취한다. •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화재와 같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부상자를 옮기지 않는다. 부상자를 옮기면서 부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이나 척추에 부상이있는 경우 되도록 부상자를 원상태로 두고 따뜻하게 해준다. • 응급조치를 끝낸 후 상부에 보고한다. •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감염에 유의한다. • 무대 작업자와 안전관리요원 등에게 구급상자의 위치를 숙지시킨다. • 구급상자는 두통, 타박상, 베임, 뱀 등과 같이 경미한 부상에 대한 처치를 위한 것이다.
<p>화학물질 노출처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너(paint thinner), 염색제 등의 화학물질을 피부에 쏟았을 경우, 해당부위를 15분 정도물로 씻으면서 오염된 옷이나 장신구(반지 등)를 제거한다. •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15분 정도 물로 씻되 다른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코쪽에서 얼굴 바깥 쪽으로 씻는다. 눈을 씻으면서 콘택트 렌즈를 제거한다. (눈을 씻기 전에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지 않는다.) • 유독 가스를 흡입하였을 경우, 해당 장소를 벗어나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출입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 해당 장소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 식중독 발생 시 대응 방안

구분	판단기준	대응방안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지수 55미만(관심) •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 • 음식물 취급주의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지수 55~70(주의) •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팀 검출 보도 • 일부 각 분야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 •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각 분야)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지수 71~85(경고) •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 • 일부 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이상 발생 • 10개 각 분야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 • 급식중단, 대책반 운영(각 분야)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지수 86 이상(위험) • 집단급식소에서 100명 이상 식중독 발생 • 단위 집단의 30% 이상 설사환자 발생 • 30개 각 분야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 • 급식중단, 대책반 비상근무(각 분야)

- 전염병 등 발생(방역) 대책

구분	대응방안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내 관람객과 운영요원의 질병발생 시 신속 정확한 진료와 투약, 후송체계를 통하여 건강을 보호 • 해충구제 및 방역실시로 질병발생 사전 차단
신고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및 후송병원 연락 → 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 행사장 종합상황실 통보 / 상황경중에 따라 추가 조치 • 감염병 감염 우려자 발생 시 → 격리 및 이송 귀가 → 행사장 종합상황실 통보 / 상황 경중에 따라 추가 조치
대처요령	<p>〈사전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주변식당 등 전염병관리요원이 순회점검 • 1일 1회 이상 주변소독 및 음수대 관리 • 방역, 소독장비 사전준비 및 점검으로 신속대응체제 확립 <p>〈전염병 등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발생 시 회장 내 진료소 및 119 구급대 응급조치 • 중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조치 • 방송실 안내방송을 통한 상황 및 대피안내 • 역학조사반 편성 및 운영요구

〈폭발사고 대책 작성 예시〉

- 사고유형
 - 행사장내 특화음식관 등 LP가스시설 폭발사고
 - 폭발 위험성 있는 화기·전열기구 등 폭발사고
 - 테러에 의한 폭발물 폭발사고
-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	추진방향
제1단계 (행사 전)	가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련기관 사전안전점검(전기, 가스 등) 요청
	경비 등 행사요원 위험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지시
제2단계 (비상상황)	행사요원 종합상황실 보고, 소방안전센터, 한국가스공사 등 연락 및 출동요청
	폭발사고 발생 및 긴급대피 안내방송 실시 : 종합상황실
	2차 혼잡사고 발생 대비 질서있는 대피유도 : 책임자 및 행사 진행요원
	폭발사고 현장 접근 통제 : 안전요원 및 경비 등 행사 진행요원
	환자 발생시 진료센터 및 119 구급대 응급처치 및 후송요청
관람서비스 시설 파손 시 : 관련 팀 및 시설업체 보수 요청	

- 폭발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구분	대응방안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사고 돌발 상황에 대비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설치, 검사, 유지·보수를 수행 •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 •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신고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발견자) → 종합상황실 보고 → 소방안전지휘본부/119안전센터 연락 및 비상출동 → 보고(사무국장 → 위원장)/상황경중에 따라 추가조치
대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련기관 사전안전점검 요청 • 경비 등 행사요원 위험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요원 종합상황실 보고, 소방안전지휘본부 등 연락 및 출동요청 • 폭발사고 발생 및 긴급대피 안내방송 실시 : 종합상황실 • 2차 혼잡사고 발생대비 질서 있는 대피유도 : 책임자 및 행사요원 • 폭발사고 현장 접근 통제 : 안전요원 및 경비 등 행사 진행요원 • 환자 발생 시 진료센터 및 119 구급대 응급처치 및 후송요청 • 관람서비스 시설 파손 시 : 관련 팀 및 시설업체 보수 요청

7. 개별적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상세내용) 산·수면 개최 축제, 무대·불꽃·드론·얼음·놀이시설 등 주의가 필요한 재료 활용 축제, 공연·체육행사를 포함한 축제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축제 개최 시 개별적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

8. 불법노점상 단속 및 식품 위생 관리 대책 수립 여부

구분	조치사항
불법노점상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장에 불법 노점상 단속 공지• 효과적인 단속 추진을 위해 행사장 주변 불법 노점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 및 사전단속 실시• 행사장 내 불법 노점상(차량 포함) 단속, 과태료 부과, 견인 조치
식품 위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 부서와 합동으로 행사장 내 먹거리 매대 및 식당 일일 위생 상태 점검(식자재 원산지 표기, 유통기한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검토 후 재발 방지 확약 및 미이행시 영업제한 조치

〈불법노점상 단속 및 식품 위생 관리 대책 수립 예시〉

9. 재난취약계층 및 행사 출연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구분	안전관리 대책
노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위험 요소가 있는 구역 인력 배치 및 수시 방송 안내 • 역동적인 프로그램 이용 시 위험 구간 밖으로 이동 안내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이용 장애인 경사면 진입로 출입 시 게이트에서 자원봉사 지원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마련 • 장애인 행사장 유입 시 종합상황실 수시 점검 • 공연 관람 시 진입로 가까운 지정 공간으로 안내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발생 시 다누리 콜센터(1577-1366) 통역 인력 지원 요청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위험 요소가 있는 구역 인력 배치 및 수시 방송 안내 • 위험 요소가 높은 장소 행사 운영 인력 배치 (화기 이용 어린이프로그램은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및 자원봉사자 배치)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예시〉

〈행사 출연자 안전관리대책 작성 예시〉

- 출연자 안전관리담당: 이OO 사무처장(010-0000-0000)
- 안전책임자: 김OO 사무국장(010-0000-0000)
- 출연자 보호 및 동선관리 계획
 - ① 관객에게 차량이 노출되지 않는 전용 주차장 마련(사전 차량 모델 및 차량번호 교통통제 전담요원에게 고지)
 - ② 출연자 별도 통행로 및 대기실 확보
 - ③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관리요원 2인 1조로 전담하여 출연자 대피 유도



3 각종 인·허가 취득, 축제보험 가입, 안전관리비 확보 여부 검토

1. 전기설비 설치 시: 사용전검사/ 사용전점검 여부 확인

● (상세내용) 전기 용량에 따라 사용전검사 혹은 사용전점검을 신청한다.

- **사용전검사 신청**(용량 75kw이상 자가용 전기설비) : 축제장 전기설비 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 신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4호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출

➡ 전기안전공사는 검사 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5호 사용전검사 확인증]** 발급

- **사용전점검 신청**(용량 75kw미만 일반용 전기설비) : 축제장 전기설비 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점검** 신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 사용전점검 신청서]** 제출

➡ 전기안전공사는 점검 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8호 사용전점검 확인증]** 발급

- **이동식 발전기** : 용량 10kw이상 시 **사용전검사**, 10kw미만 시 **사용전점검** 신청

● (관련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제12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

-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규칙 제9조

- ④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사용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11조

-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도 [별지 제7호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사용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점검 시 구비서류) 사용전검사 확인증/ 사용전점검 확인증

사용전검사 확인증

신청번호: 제 [] 호 고객번호: []

신용정보: [] 연락처: []

신청인: [] 주소: []

주 소: [] 사용설비 (사주번호): 20020 (20020)

검사일자: []

검사일: 2024-03-26

검사자: [] 소속: [] 성명: [] 직책: []

검사결과: [] 다음검사: []

검사내용: []

사용기간: []

사용설비 및 사용방법: []

주요: []

2024년 03월 2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검사인명인: [] 직위: []

※ 이 확인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확인증 출력일자: 2024-04-03

〈 사용전검사 확인증 예시 〉

사용전점검 확인증

신청번호: 제 [] 호 확인증번호: []

신용정보: [] 연락처: []

신청인: [] 주소: []

주 소: [] 주소: []

검사일자: [] 용량: []

검사일: 2024년 04월 06일

검사자: [] 소속: [] 성명: []

검사결과: []

검사내용: []

사용기간: []

사용설비 및 사용방법: []

주요: []

2024년 04월 0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검사인명인: [] 직위: []

※ 이 확인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확인증 출력일자: 2024-04-03

〈 사용전점검 확인증 예시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4. 22.>

사용전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공사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사희망연월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p>수수료</p> <p>「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p>
------	--	--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4. 19.>

사용전점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 개요

점검희망 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사용전점검 확인증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점검결과	점검 전기설비		
	점검 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판정	적합	

기 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점검 신청인 귀하

2.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증명서 취득 확인

◎ (상세내용)

- **가스완성검사 신청** : 가스시설 완공 후 가스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완성검사 신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1조 **[별지 제44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제출

➡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에 합격 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1조 **[별지 제46호 완성검사 증명서]** 혹은 완성검사 합격확인서 발급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자는 **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35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제출

- * 1개의 사업자가 250kg이상의 가스용기나 500kg이상의 소형탱크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등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의 시설구분 6, 7참조)

- 가스 공급자는 **1개 업소만 선정**, 축제 기간 중 **상주**

◎ (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 제44조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가스완성검사)

-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지역축제에서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참조)

-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등 음식물 판매 부스 운영 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서 자동차의 연료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등

시행규칙 제71조

- ②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⑪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6호 완성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http://cyber.kg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가스시설 시공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검사 희망 연월일:

액화석유 가스 특정사용 시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세부 내용	영업장 면적	[] 100㎡ 미만	[] 100㎡ 이상
	업 태:		
	건축물 연면적	[] m ²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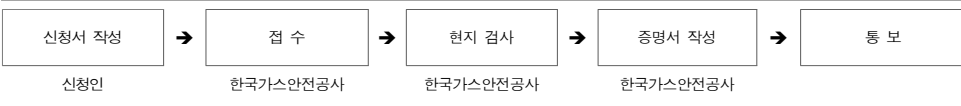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 1부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임
안전관리책임자 [] 해임 신고서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제할용품)]

3. 유원시설(놀이기구) 설치 시 안전성 검사 및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확인

◎ (상세내용) 안전성검사 완료 후 유원시설업 허가/신고를 진행한다.

1단계 안전성검사: 유원시설 별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되, 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신청한다.

※시행규칙 제40조 [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및 비대상 유기사설 기준 참조

- **안전성검사**: 관할 지자체에 설치완료 30일전까지* 시설 별 안전성검사 신청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체부 고시)」
제4조 [별지 제1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신청서] 제출

* 이동식·임시 유기사설의 경우 설치완료 20일 전까지 신청(동 고시 제6조 참조)

- 안전성검사 대상 유원시설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교육 의무

-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 관할 지자체에 설치완료 10일 전까지 시설 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신청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체부 고시)」
제5조 및 제6조 [별지 제3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신청서] 제출

2단계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은 허가를 신청하고, 기타 유원시설업은 신고를 이행*한다.

* 종합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기구)이 6종류 이상인 업
일반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기구)이 1종류 이상인 업
기타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기구)이 없는 업

-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종합·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11호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제출

➡ 관할 지자체 장은 허가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13호 유원시설업 허가증] 발급

- **유원시설업 신고**(기타 유원시설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신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7호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서] 제출

➡ 관할 지자체 장은 신고를 받으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8호 유원시설업 신고증] 발급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 제33조

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성검사)

-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원시설(시행규칙 제40조 [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및 비대상 유기시설 기준 참조)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원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참조)

동법 제5조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신고)

- ②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2] 기준 참조)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시행규칙 제11조 [별표1의2] 기준 참조)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점검 시 구비서류) 유원시설업 허가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증



〈유기기구(꼬마기차) 운영 시 기차 운전자와 별도로 외부 안전요원 배치〉

〈안전성검사 예시〉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예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예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0. 16.>

[] 허가신청서 유원시설업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중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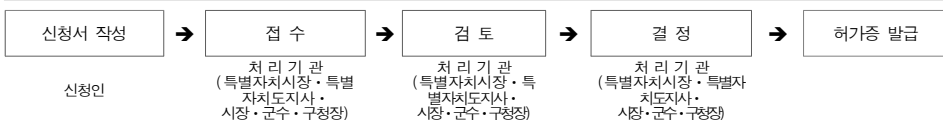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h2 style="text-align: center;">유원시설업 []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h2>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1. 영업소 명칭
2.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대표자 성명
5. 대표자의 생년월일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 (종수)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 (종수)
8. 허가조건
9. 영업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display: inline-block; padding: 10px 20px;"> 직인 </div> </div>

210mm×297mm[백상지(150g/㎡)]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0. 1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 업 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 기 시 설 또는 유 기 기 구 종 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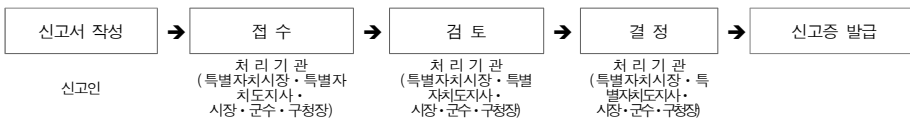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상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유원시설업 신고증
1. 영 업 소 명 칭	
2. 소 재 지	
3. 영 업 의 종 류	
4. 대 표 자	
5.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6.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수 (종 수)	
7. 영 업 기 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p>「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p>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4. 몽골텐트,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 시 축조신고 확인

◎ (상세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축제장에 컨테이너, 몽골텐트(예: 음식물 부스, 판매 부스)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관할 지자체 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착공해야 함

* 지역축제의 주요 가설건축물 예시(영 제15조 제5항 참조)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야외전시시설, 촬영시설, 흡연실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8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 관할 지자체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 교부.

◎ (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제20조

③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점검 시 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재단법인 축제관광재단

주소지: [redacted] (법인)
 대표자: [redacted] (법인대표자)
 제 목: 축제장 내 [redacted]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 재단명: [redacted] (법인) ~ 2024. 4. 26.(금) ~ 25. 6.(월)까지 11일간 개최됨에 따라 엑스포공원에 편의 시설의 등 농산물 판매장 부스 등을 보정하고자 함.

2.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신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 해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

대상지	주소	면적	구조	종류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설도: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장,
 2. 위치도 1도,
 3. 신고대위 1부, 끝.

축제관광재단 이사장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예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신고번호: [redacted]
 건축주: [redacted]
 대상지: [redacted]
 기법: 영도-1

신청일자: 2024. 4. 26. (금) 15:00

항목	구분	종류	신축면적(㎡)	면적비율(%)	기상중수
종류	1	가설건축물(판매장)	100.1	308.1	1
	2	가설건축물(판매장)	110	114	1
	3	가설건축물(판매장)	60.1	50.3	1

종사자: [redacted]

2024. 4. 26. (금) 15:00

관할지자체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예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11. 29.>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신고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전체 개요	건축면적 m ²			연면적 합계 m ²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지상층수
존치기간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중) 70g/m²]

5. 무대, 조명탑 등 공작물 축조 시 안전관리

◎ (상세내용) 공작물의 크기 및 설치 장소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관리조치를 이행한다.

- **공작물 축조신고** : 축제장에 **높이 4m를 넘는 조명탑, 스피커탑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면 관할 지자체 장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참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30호 공작물 축조신고서] 제출

➡ 관할 지자체는 신고를 수리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31호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

- **구조검토서 및 안전확인서** : 축제장에 ①**높이 6m 이상**이거나 ②**수상·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설치 전 구조검토서, 설치 후 안전확인서**를 확보하여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구조검토는 건축구조 기술사 또는 토목구조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 등이 진행, 안전확인인은 구조기술사 등이 진행
- 구조검토는 건축구조기준, 가시설 설계기준 등 규정에 따라 실시
- 그 밖의 무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을 통해 구조검토와 안전확인 이행 여부 결정
-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조검토 및 안전확인 이행을 조건으로 진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그 외 초대형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영 제98조, 제101조의2)를 참조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구조안전성 검토 이행 여부 검토

◎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축법 제83조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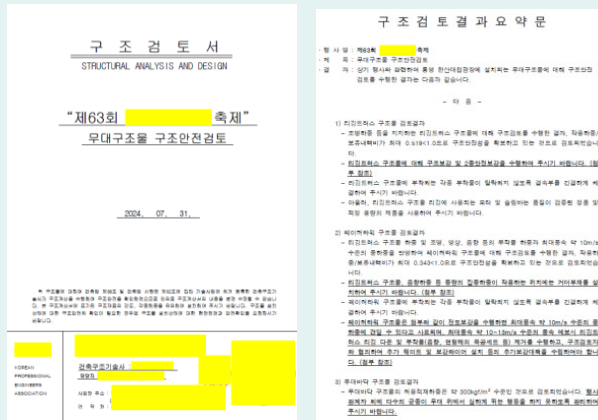
* 영 제118조 제1항 제3호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영 제98조, 제101조의2 제1항 지역축제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참조

◎ (점검 시 구비서류)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 구조검토서, 안전확인서**



〈 구조검토서 예시 〉



〈 무대 조감도 작성 예시(크기 명시) 〉

공작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축조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6. 식품판매부스 운영 시 **음식점 영업신고** 확인

◎ (상세내용)

- **영업신고**: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는 등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 개시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37호 식품영업 신고서]** 제출

➡ 관할 지자체는 검토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38호/제39호 영업신고증]** 발급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37조

- ④ 식품 제조·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영 제25조 제1항 제2호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 ◎ (참고사례) OO축제 시 먹거리 부스 중 영업신고를 취득하지 않은 업소는 현장 조리를 금지시키고 완전 포장된 제품만 판매하도록 조치

◎ (점검 시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관류)
제목 「제1회 [] 세부점검 결과통보」 임시영업신고 수리 알림

1. 축제의개황추진단-6963(2024. 4. 4.)호 및 통-6942(2024. 4. 4.)호와 관련, 「제1회 [] 세부점검 결과통보」 임시영업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나.

2. 축제의개황추진단에서는 영업신고서[별첨1]를 영업장 내 보관 및 게시하도록 안내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별첨2]을 상세히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 영업신고 수리 내역

업종	일시 연하기번호	업소명(상호)	대표자	소재지	영업기간
계		2개소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	2024-34	[]	[]	[]	'24. 4. 6. - 4. 14. (9일간)
식품판매업 (일반음식점)	2024-35	[]	[]	[]	'24. 4. 5. - 4. 14. (10일간)

* 단,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연 사용재 있어서는 가스 불비서 *복합적유가스 차질시발 방지 감지유일시 를 반드시 경고 문명하여야 함

붙임 1. 임시영업신고서 2부.
2. 영의대공소시화 1부. 끝

< 영업신고 수리 공문 예시 >

제 2024-30호

한 시 적 영 업 신 고 증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영 업 소 명 칭 : []
 소 재 지 : []

영 업 리 종 류 : 식품판매업(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
 조 건 : 제19회 [] 음식물쓰레기 배출 한시적 식품판매업
 (2024. 4. 4. ~ 2024. 4. 7.)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별표14) 제8호 가령5호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군 식품위생업소 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의 제7조에 의거 식품판매업 영업을 한시적으로 승인합니다.

2024년 4월 1일

[] 군



< 영업신고증 예시 >

제 호

영 업 신 고 증

- 대 표 자 : (생년월일 : -xxxxxxx)
- 영 업 소 명 칭 :
- 소 재 지 :
- 영 업 장 면 적 : 건물 내부 장소 [m²] 건물 외부 장소 [m²]
- 영 업 의 종 류 : (영 업 의 형 태 :)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체 호

영 업 신 고 증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XXXXXXXX)
- 영업소명칭 :
- 소 재 지 :
- 영업장 면적 :
- 영업의 종류 :
- 식품의 유형 :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7. 도로, 하천, 공원 등 각종 점용 허가 취득 확인

◎ (상세내용) 도로나 공간 등을 점유하여 축제를 개최할 경우 도로, 하천, 공원 등 각 개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취득하여 축제장을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함.

- **도로점용허가** :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 신청.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24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 신청을 받은 관청은 검토 후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27호 도로점용 허가증]**)

- **하천점용허가** : 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 신청.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29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 신청을 받은 관청은 검토 후 하천점용 허가증 발급(「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30호 하천점용 허가증]**)

- **공원/녹지점용허가** : 관할 지자체에 점용허가 신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0조 **[별지 제1호 공원/녹지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 신청을 받은 관청은 검토 후 공원/녹지점용 허가증 발급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11. 17.>

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개월 일간) 년 월 일까지
허가조건			
<p>「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도로관리청 직인</p>			
<p><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로부터 2개월 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210mm×297mm[백상지 120g/m²]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1. 12. 28.>

[]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점용(행위)위치	(면적 : m ²)	
	점용(행위)목적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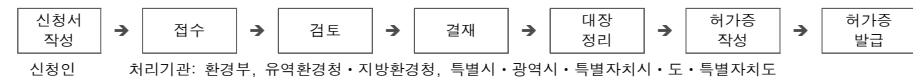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 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28.>

하천점용허가증			
제 호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점용장소			
점용면적			
최초허가일			
점용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월 일간)	
허가조건			
<p>「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p>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auto;">직인</div>			
<p>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210mm×297mm[백상지(80g/㎡)]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시공원(녹지)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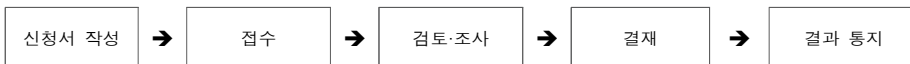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 불꽃축제 등 화약류 사용 허가 취득 확인

◎ (상세내용)

-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 축제장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불꽃축제를 진행할 경우 관할 경찰서로부터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를 받아야 함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4호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제출
 ➡ 관할 경찰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57조 **[별지 제40호 화약류 사용허가증]** 교부

◎ (관련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제18조

총포화약법 제18조

-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 제15조 제6호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목록 참조(규모가 매우 작은 불꽃놀이에 해당)

◎ (점검 시 구비서류) 화약류 사용허가증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업체명			
	소재지			
	사용목적			
	종류 및 수량			
	사용장소	사용시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조소명			
	사용자 서명 (책임자)		(작업자)	
	위해예방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꽃불류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 가.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화약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2.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3. 꽃불류 외의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려는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증 사본	수수료 ○ 화약·폭약 100톤 이상 : 1만원 ○ 화약·폭약 50톤 ~ 100톤 : 8천원 ○ 화약·폭약 10톤 ~ 50톤 : 5천원 ○ 화약·폭약 1톤 ~ 10톤 : 3천원 ○ 화약·폭약 1톤 미만 : 2천원 ○ 꽃불류 : 1천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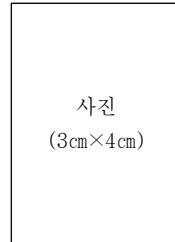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09.9.30>

제 호

화약류 사용 허가증

- 성 명: _____
- 주 소: _____
- 종류 및 수량: _____
- 사 용 목 적: _____
- 사 용 일 시: _____
- 사 용 장 소: _____
- 사 용 기 간: . . .부터 . . .까지
- 조 건: _____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찰 서 장

직인

1.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화 _____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9. 축제보험 가입 확인

④ (상세내용) 축제 개최자는 축제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축제/행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장 금액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사망1.5억, 부상3천만)이상으로 하는 것을 권고.

- 특히 대부분의 축제/행사 보험에서 재해·상해 등은 보장하나 식중독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먹거리 부스 운영 시 별도로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보상방안 강구

④ (점검 시 구비서류) 보험가입증서

일반보험 증권
행사추진자배상책임보험

담보	회계	보상한도액				총계금액
		1 1일당	1 1-2일당	총회상한도액	1 1-2일당	
행사추진자배상책임, 사망	WCH	200,000,000	500,000,000	300,000,000	200,000,000	200,000,000
행사추진자배상책임, 부상	WCH		500,000,000	300,000,000		200,000,000

※ 국공직 선역직 종직, 공공직인 또는 사립을 제외합니다.
 화재물상담보: 화재나 방화 또는 화재의 인접발생, 화재, 폭발, 폭주자동차를 포함합니다(소방안전시설 설치되지 않습니다).
 수질, 물놀이, 워터파크, 강물놀이, 낚시, 수상스포츠, 야생동물, 연꽃놀이 및 기타 수상 활동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폭우(천둥우박) 또는 기타 자연의 물의 직접활동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풍요놀이, 축화, 축놀이, 풍요놀이 등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화재(화재, 폭발물, 방화), 화재(화재) 또는 불이(가죽, 방탄, 방탄제일방탄, 스프링클러) 직접활동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자연(지진, 쓰나미, 태풍) 또는 기타 유사한 자연적 활동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자동차) 충돌 포함(자동차) 우회도로 또는 사고(자동차)를 포함합니다(자동차)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풍요놀이 및 풍요놀이 담보하는 사고는 본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서 뒷면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십시오.

분납번호	분납일자	분납금	분납보험료	분납회차	납입총액	납입금	납입보험료
1	2024-04-05	100%	WCH	5,566,000			

1. **공통인수사항** (건사) []
 200.00%

2. **추가상세**
 계약종류: 추가 상세 사항

< 축제/행사보험 증서 예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1) 보험증권 보장부

[제약기간사정]

종류번호	보험기간	제약기간	제약일자
보험종목	2024-04-04 ~ 2024-04-07	제약기간	2024-04-04
공통계약자	주인(사업자명)	공통계약자	주인
계약일자	주인(사업자명)	공통계약일자	주인
보험종목	주인(사업자명)	공통계약종목	주인

보험료: 20,000 원 | 납입보험료: 20,000 원 | 계약금: 20,000 원 | 총회상한도액: 1,000,000,000 원

[보험계약사정]

번호	보험대상	특약할 금액	보험료 산출기준	회차(금액)
1	담보대상(주인(사업자명))	특약할 금액(담보) 담보금액	담보대상(주인(사업자명))	한해납기

특약할보험	구분	1 1일당	1 1-2일당	총회상	회차(금액)	보험료
생산물배상책임보험(1)	담보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200,000	20,000

[제도의상 특약]
 1. 담보대상(주인(사업자명)) 특약할 금액
 2. 담보대상(주인(사업자명)) 특약할 금액

<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증서 예시 >

10. 애드벌론 설치 시 허가 취득 확인

- ◎ (상세내용) 축제장 내에서 애드벌론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 [별지 제1호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제출

➡ 관할 지자체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 [별지 제2호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 ◎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법 제3조
- ◎ (점검 시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4.>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신고 20일
------	-----	--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미신청 []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물등 관리 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시공업소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허가조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현장 점검 시

1 축제장 안전관리 일반

1. 축제 개최 전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 여부

* 인·허가 부서, 경찰(관할 경찰서), 소방(관할 소방서), 전력(한국전력), 전기(전기안전공사), 가스(가스안전공사), 시설(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등)

◎(상세내용)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축제마다 필요한 전문가(경찰·소방·전력·전기·가스·시설 등)로 구성된 점검반을 조직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분야별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관련법령)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제5항

2.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연락처 공개(현수막 설치) 여부

◎(상세내용) 축제장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명 및 연락처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여 유사 시 누구나 신속하게 연락하여 비상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축제장 내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연락처 현수막 게시 예시 〉

3. 안내데스크, 안내방송 설비 적정성

◎ (상세내용) 유사 시(인파밀집, 사고 발생, 미아 발생 등) 안내를 위한 안내데스크 및 방송시설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

- 특히산지 등 사고 위험이 높고 통제가 어려운 고위험 축제장에서는 안내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함

◎ (관련사례)



〈 혼잡 안내방송 차량 〉



〈 이동식 대중경보장치 (360도 무지향성 스피커) 〉

4.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 여부

◎ (상세내용)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위험구역(무대 뒤, 조명탑 근처, 가스 등 위험물질 보관구역, 보행위험구역, 낭떠러지 등)에 안전선·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해야 함.

-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요원도 배치

◎ (참고사진)



〈조명탑 안전웬스 및 안전선 설치〉



〈환풍구 접근제한 라바콘 설치〉



〈발전기 접근금지 웬스 설치〉



〈미끄러운 경사지 출입통제 안전선 설치〉

5.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내용을 현장에 구현하였는지 확인

- (상세내용) 축제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안전요원 배치, 인파대책, 동선계획, 교통통제, 비상통로 확보 계획, 노점상 단속 계획 등 계획에 따라 현장을 구성해야 함

● (참고사진)



〈 보행로 중앙분리 펜스 설치계획 이행 〉



〈 화면에 혼잡도를 현출하여 현장 관람객이 밀집도가 낮은 도로로 이동하도록 유도 〉

7. 무대와 객석, 객석과 객석 간 안전거리 확보, 객석 구획화

- (상세내용) 객석을 구획화(블록화)하여 관람객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구획 간 인파 밀집 사고의 위험성이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



〈 객석 구획화로 관람객 동선 및 안전 확보 〉



〈 무대 및 객석 간 안전거리 확보 〉

2 전기·전력 분야

1. 전기안전장치 관리상태 점검

◎ (상세내용) 전기안전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

- 차단기: 누전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설치 상태 및 용량 적정성
- 분전함: 분전함 설치 적정성(시건장치, 고정장치, 적치물 제거 등)
- 접지: 철제외함(배전함, 분점함 등) 및 철제 무대시설, 콘센트 등 접지 상태 확인

◎ (주요 지적사항)

지적 사항



〈누전 차단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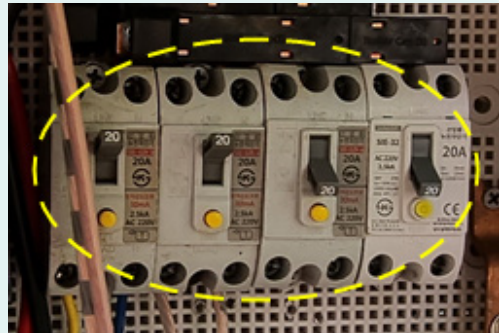
조치 사항



〈누전 차단기 설치〉



〈누전 차단기 용량 초과(3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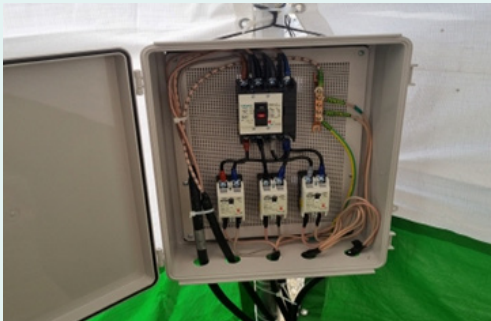


〈콘센트 용량에 맞는 누전 차단기 설치(20A권장)〉

지적 사항



〈분전함 시건장치 부재〉



〈철제외함 미접지〉



〈무대 철제 비계 미접지〉

조치 사항



〈분전함 시건장치 설치〉



〈철제외함 접지〉



〈무대 철제 비계 접지 시공〉

2. 전선·배선 관리상태 점검

◎ (상세내용) 전기 전선과 배선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함.

- 전선: 규격전선 사용, 전선피복 손상 확인, 전선정리 상태 및 노출 여부(바닥 보호캡 설치)
- 콘센트: 콘센트 고정 상태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 이격거리: 위험물질 근처(가스, 화기, 물) 전기 배치 여부 등 확인

◎ (주요 지적사항)

지적 사항



〈 규격전선 미사용, 허용전류를 초과 〉

조치 사항



〈 전기기구 정격전류에 맞게 규격전선으로 교체 〉



〈 노후전선 피복손상 〉



〈 절연강화(테이핑 처리) 〉

지적 사항



〈노후전선 피복 벗겨짐〉

조치 사항



〈노후전선 교체〉



〈도로 등 바닥에 전선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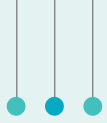
〈바닥 전선 정리, 전선 보호캡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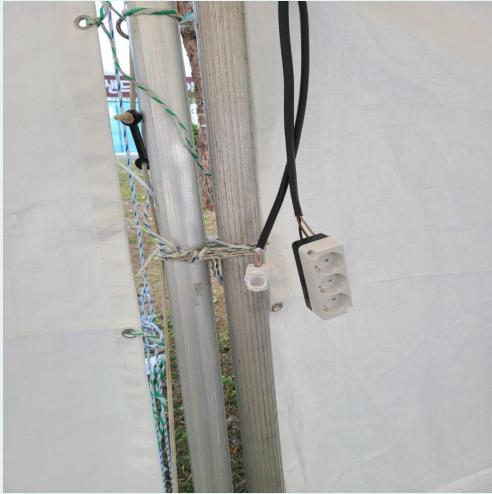
〈콘센트 물에 노출 위험〉



〈방수 콘센트/별도 외함 설치 등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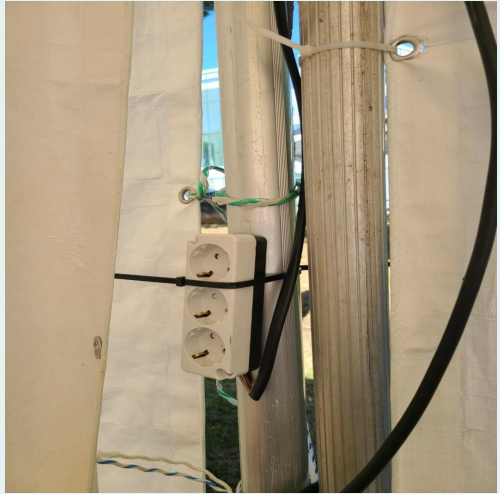


지적 사항



〈 콘센트 미고정 〉

조치 사항



〈 콘센트 고정 〉



〈 전기접속기와 가스이음매 근접 설치 〉



〈 전기접속기 이동하여 이격거리 유지 〉

3. 전력안전 관리상태 점검

◎ (상세내용)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받아 고압 전선 및 송전선로와 구조물·위험물 간 이격거리 확보, 비상 전력복구체계 구축 등 확인

- 무대, 화면, 조명탑, 스피커탑 등 구조물 전도 방지조치 확인
- 고압 전선 및 송전선로 근처에 무대 설치 금지
- 비상 전력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정전 등 유사 시 혼란 예방

◎ (관련사례)

- 무대 스피커탑 설치 시 상단의 고압 전선과 이격거리가 준수되지 않아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었음 → 스피커탑을 1단 제거하고 고압 전선에 보호관 설치
- 달집태우기 행사 시 달집 인근에 송전선로 존재 → 달집을 옮겨 송전선로에서 20m이상 간격 유지

지적 사항



〈스피커탑과 고압전선 이격거리 미준수〉

조치 사항



〈전선 보호관 설치〉

3 가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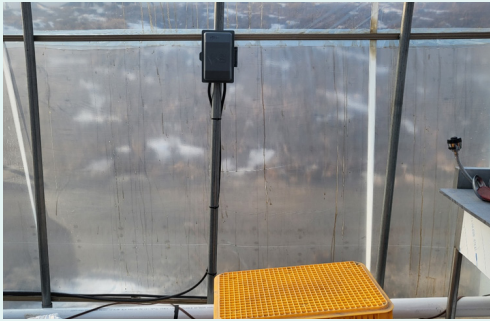
1. 가스안전장치 및 가스누출 관리상태 점검

◎ (상세내용) 가스안전장치의 설치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함.

- 가스 차단기, 누출 경보기 설치 및 작동상태 점검
- 밸브·퓨즈콕 설치 적정성 확인(퓨즈콕 막음조치 적정성, 불필요한 퓨즈콕 제거 등)

◎ (주요 지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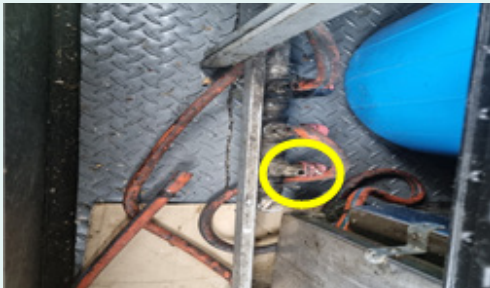
지적 사항



〈가스 차단기 및 누출 경보기 미설치〉



〈가스배관말단 막음조치 불량〉



〈배관 막음조치 불량〉

조치 사항



〈가스 차단기 및 누출 경보기 설치〉



〈캡으로 막음조치 완료〉



〈막음조치 완료〉

2. 가스용기 관리상태 점검

◎ (상세내용) 가스용기의 사용 및 보관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함.

- 가스 보관장소 가연성 물질 제거 및 환기관리(화기 취급 장소와 2m이상 우회하여 옥외에 보관)
- 가스 용기 전도방지장치 및 보호캡 설치
- 축제장 내 빈 가스용기 적치 금지 등 확인
- 저장량 100kg초과 시 용기보관실 설치

◎ (주요 지적사항)

지적 사항



〈가스 보관장소 안내표지 없이 방치〉

조치 사항



〈안전렌스 설치, 출입금지 표시 부착〉



〈가스용기 미고정 및 차방방지캡 미설치〉



〈가스용기 기둥에 고정, 보호캡 설치, 가스용기 보관함 설치〉

3. 가스배관 관리상태 점검

◎ (상세내용) 가스 배관의 관리 및 연결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함.

- 호스 3m 초과 금지, T형 연결 사용 금지(금속관 사용 의무)
- 호스, 배관 부식·파손 점검

◎ (주요 지적사항)

지적 사항



〈 호스 3m초과 및 T형 연결 〉

조치 사항



〈 호스 3m 이내로 교체, T형 연결 해제, 금속강관으로 교체 〉

4 시설 분야

1. 계획서 상 설계도와 현장 일치 여부

◎ **(상세내용)** 계획서상 설계도와 실제 현장 시설물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전문가에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여 안정성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함.

- 특히 눈에 띄지 않는 무대 하부 수평재 및 교차 가새를 누락시켜 설계도보다 적게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 필요

2. 무대시설 안전조치 확인

◎ **(상세내용)** 축제장 내 무대 등 가설 구조물의 불안정성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확인해야 함.

- 무대, 화면, 조명탑, 스피커탑 등 구조물 **전도 방지조치** 확인
- 비계 연결부 **손상·부식·조임·체결** 상태 확인
- 구조물 **수평** 유지, **흔들림** 등 안정성 확인

◎ (주요 지적사항)

지적사항



〈 광고탑 전도방지조치 미흡 〉

조치사항



〈 전도방지용 와이어 설치 〉

지적 사항



〈가설무대 작업발판 안전장치 미체결〉



〈난간 고정나사 빠짐〉



〈회면 가새 미설치 구간 보강 필요〉



〈무대 하부 수평이 맞지 않음〉

조치 사항



〈작업발판 안전장치 체결〉



〈나사조임, 고정장치 보강〉



〈가새 보강 완료〉



〈하부 주각판 설치로 수평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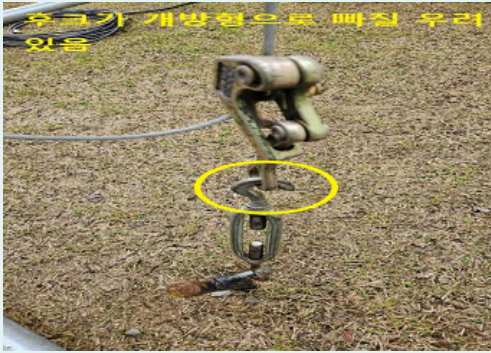
지적 사항



〈 메인무대 데크 바닥 들뜸 〉



〈 들뜸부위 고정조치 완료 〉



〈 무대 와이어 턴버클 후크 안전성 부족 〉



〈 폐쇄형 후크로 부품 교체 〉

3. 부대시설 안전조치 확인

◎ (상세내용) 야외 축제장은 대규모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대시설의 안정성 확인 중요

- 부스, 천막 설치 안정성 확인(강풍 전도방지 조치, 고정로프 시인성 확보 등)
- 행사장 주변 기반시설 안전성 확인(배수시설 덮개, 계단 및 난간, 미끄럼 방지 조치, 지면바닥 평탄화, 옹벽·다리·얼음조각·눈 무더기 붕괴위험 점검 등)

◎ (참고사진)



〈 케이블 타이 체결로 부스 간 고정 〉



〈 모래주머니로 캐노피 고정 〉



〈 부스 하단 고정로프를 보온재로 마감하여 시인성 확보 〉



〈 보행로 나무 머리충돌방지패드 설치 〉



〈 맨홀 뚜껑 옆 땅꺼짐 보수 조치 〉



〈 빙판길 미끄럼방지 야자매트 설치 〉

5 소방 분야

1. 소화기구

◎ (상세내용) 소화기의 설치 장소 및 관리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

- 소화기 설치 장소·이격거리 준수(부스 2-3개 당 소화기 최소 1개)
- 소화기 사용연한(10년), 충전압력 적절성, 약제 응고여부 확인
- 소화기 관리상태 확인(안전핀·호스·노즐 부착상태, 표면 이물질 제거 등)
- 기름 사용 부스 K급 소화기 비치

◎ (참고사진)



〈소화기 비치〉



〈소화기 비치〉



〈소화기 압력불량 및 내구연한,
안전핀·호스·노즐 표면 관리상태 확인〉



〈기름 사용 부스 K급 소화기 비치〉

2. 비상 대비

◎ (상세내용) 구급차 대기 여부 확인 및 비상 조명등, 피난 유도등, 비상구, 안내표지 등이 비상 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

- 구급차 현장 대기 여부
- 비상 조명등, 피난 유도등 작동상태 점검
- 구명환 배치 적정성(로프 연결 여부)
- AED 상태(배터리, 유효기간) 점검
- 비상구 잠금장치 해제, 적치물 제거, 안내표지 부착 등 확인

◎ (참고사진)



〈달집태우기 산불진화대 배치〉



〈구명환 결박 해제, 로프교체(지름 1cm, 길이 30m 이상)〉



〈AED 배터리 부족→충전 및 교체필요〉



〈AED 패드 유효기간 초과 → 교체필요〉

3. 조리장 바닥재 등 장식물 방염처리

- (상세내용) 조리장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바닥재 등 장식물은 가연성 재료 사용을 자제하고 방염처리하도록 함

- (참고사진)



〈조리 부스 방염매트 설치 완료〉



〈비비큐 화로에 화재진압용 모래바닥 조성〉

4. 불 사용 설비와 다른 설비 간 이격거리 유지

◎(상세내용) 화기와 부스 천막 등의 설비 간 이격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위치조정·방염판 설치 등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함

◎(참고사진)



〈 화기와 부스 천막 가까움 → 텐트에 불연재 부착 〉



〈 화기와 천막 간 테이블 설치하여 이격거리 확보 〉



〈 음식부스 내부 열기 배출을 위해 대형 선풍기 비치 〉



〈 가스난로 연통이 천장과 가까웠음 → 연통 높이를 낮춰 이격거리 확보 〉



〈 부스 내 야외용 가스난방기 설치 부적절 → 추후 제거 〉



〈 기름통과 화기 근접으로 화재 위험 → 화기 근처 기름통 제거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비매품)

발행일 _ 2024년 9월

발행인 _ 행정안전부 장관

발행처 _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

Tel : (044) 205-4248, 4266

Fax : (044) 205-8902

발간등록번호 _ 11-1741000-000510-14

※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